

통 상 법 률

목 차

2024년 제1호 (통권 제162호)

◆ 논 단

1. 책임보험계약에서 제3자의 직접청구권의 준거법에 관한 연구
-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5다42599 판결을 중심으로 박 형 렬 / 3
2. 우주의 상업화와 우주자원채굴에 관한 우주법 김 한 택 / 28
3. 글로벌지속가능철강협정(GSSA)과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의
국제통상법적 영향과 대응: 글로벌 철강 시장과 탄소배출 규제를
중심으로 조문영·정서용 / 57

◆ 해외동향

1. 제66차 UN 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제4실무작업반 논의 동향 최 형 규 / 98

책임보험계약에서 제3자의 직접청구권의 준거법에 관한 연구

-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5다42599 판결을 중심으로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사 박 형 렬

*논문접수 : 2023. 12. 22. *심사개시 : 2024. 1. 24. *게재확정 : 2024. 2. 10.

〈 목 차 〉

I. 대상판결의 사실관계와 판결요지	2. 영국법 준거조항의 유효성
1. 사실관계	3. 책임보험계약에서 제3자 직접청구권의 준거법
2. 소송의 경과	4. 제3자 보호 방안
3. 제3자 직접청구권의 준거법에 관한 대상판결의 요지	5. 결론
II. 대상판결에 대한 비판적 고찰	참고문헌
1. 서설	

I. 대상판결의 사실관계와 판결요지

1. 사실관계

가. 주위적 원고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석유화학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사우디아라비아 주베일에서 정유공장 건설을 추진하였는데, A 주식회사가 위 정유공장 내 보일러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담당하였다.

나. B해운 주식회사(제1심 공동 피고였다)는 2007. 5. 23. 콘 로즈 호(M. V. Corn Rose, 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에 관하여 선주인 콘 로즈 리미티드와 사이에 정기용선계약을 체결한 대한민국 법인으로, 2007. 6. 21. A 주식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설비 및 자재들 89패키지(543,013kg, 2,961.20CBM, 이하 ‘이 사건 화물’이라 한다)를 태국 램차방항에서 사우디아라비아 주베일항까지 운송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운송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에 따라 B해운 주식회사는 송하인 A 주식회사, 수하인 주위적 원고, 선적항 태국 램차방항, 양방향 알 주베일항으로 된 선하증권(이하 ‘이 사건 선하증권’이라 한다)을 발행하였다.

다. B해운 주식회사는 2007. 5. 30. A 주식회사에서 이 사건 화물의 해상운송에 관하여 위임을 받은 C 주식회사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선박에 대한 용선계약을 체결하였다.

4. 화물수량 : 가열기 등
7. 예정일자 : 2007. 6. 16.~23.
14. 일부 화물은 겹쳐서 적재될 수 있고, 갑판 선적이 허용된 용선계약임

라. 피고(D해상보험 주식회사)는 2007. 6. 21. B해운 주식회사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해상적하책임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한편, 위 보험계약의 보험증권에는 ‘본 보험증권에 따라 발생하는 책임에 관한 모든 문제는 영국의 법과 관습이 적용된다(All questions of liability arising under this policy are to be governed by the laws and customs of England)’는 내용의 영국법 준거조항이 포함되어 있었다.

피보험자: B해운 주식회사

운송선박 : 이 사건 선박

적용약관 및 주요 보험조건 :

Shipowner's Liability Clause(On Deck)

보험금액 : USD 1,200,000

부보 위험 및 보상내용 : 선창 내 적재 조건으로 선하증권이 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갑판상에 적재됨으로써 화물에 손상이 발생하고 그로 인해 피보험자인 선주가 화물소유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이행한 경우, 보험자는 선주가 지불한 손해배상금액에서 적하의 송장 금액에 10%를 가산한 금액에 대한 보험 금액의 비율로 선주에게 보상한다.

마. 이 사건 화물은 이 사건 선박의 갑판에 적재된 채 운송되었고, 이 사건 선박은 2007. 7. 20. 사우디아라비아 주베일항에 도착하였는데, 이러한 운송 과정에서 이 사건 선박이 황천(荒天)¹⁾을 만나 일부 화물이 바다에 떨어져 멸실되거나 손상되는 등의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바. 주위적 원고는 E 보험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현장에 운송되어 투입될 설비 등에 대하여 적하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E 보험회사는 자신이 인수한 위험의 90%에 관하여 예비적 원고들(AIG Europe

1) 비바람이 심한 날씨를 의미한다.

Limited, ACE European Group Limited, Ascot Underwriting Limited, Chubb Insurance Company of Europe SE 등 보험업을 영위하는 7개의 영국 소재 법인과 사이에 재보험기간을 2007. 2. 12.부터 2009. 12. 31.까지, 인수비율을 8.888%~17.77% 사이에서 각 정하여 재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사. 주위적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 A 주식회사에서 2007. 9. 22. 13페이지의 화물을 다시 인도받고, 2007. 10. 5.경 14페이지의 화물을 다시 인도받았는데, 당시 발행된 선하증권은 모두 갑판에 화물을 적재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발행되었다.

아. 예비적 원고들은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B해운 주식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사고에 따른 손해의 배상과 제소기간 연장 등에 관하여 협의하였다.

자. 원고들은 이 사건 사고로 주위적 원고가 화물 손상에 따른 손해를 입었다면서 화물 운송을 담당한 B해운 주식회사 그 보험자인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예비적 원고들은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보험자 대위권 행사할 수 있음을 근거로 하였다).

2. 소송의 경과

가. 제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2. 24.

선고 2009가합119080 판결)은 B해운 주식회사에 대해서는 B해운 주식회사가 변론 기일에 출석하지 않음에 따라 자백간주에 따른 주위적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하였고(B해운 주식회사에 대해서는 위 판결이 그대로 분리·확정되었다), 피고에 대해서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당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서는 이 사건 화물이 갑판에 적재되어 운송되던 중 발생한 이 사건 사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담보하고 있는 보험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었는데, 구체적으로는 이 사건 선하증권이 이 사건 화물을 갑판이 아닌 선창 내에 적재하는 것을 조건으로 발행된 것인지가 문제되었다. 위 법원은 이 사건 선하증권이 이 사건 화물을 갑판에 적재할 수 있다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발행된 것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피고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나.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5. 6. 9. 선고 2012나29269 판결)에서는 제1심에서 문제되었던 쟁점 이외에 준거법, 제소기간 도과 여부, B해운 주식회사가 이 사건 선하증권상의 운송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영국의 제3자 권리법상 피해자 직접청구권의 행사요건 등이 문제되었다. 우선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에 포함된 영국법 준거조항의 유효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보

험자인 피고의 책임에 관한 문제에는 당사자가 정한 바에 따라 영국의 법률, 즉 1906년 영국해상보험법(Marine Insurance Act 1906)과 관습이 적용된다고 보았고, 제3자인 주위적 원고의 직접청구권에 대해서는 위와 같은 B해운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준거법 합의가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보험계약에 따른 준거법’, 즉 영국법이 준거법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²⁾ 본안에 관해서는 제1심과 달리 이 사건 선하증권이 선창 내 적재하는 것을 조건으로 발행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사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부보험위에 포함되었다고 보아 피고의 보험금지급의무가 발생하였다고 보면서도, 피보험자인 B해운 주식회사가 현재 폐업하여 ‘사실상’ 파산 상태에 있을 뿐이어서 이 사건에 적용되는 영국의 제3자 권리법 제1조에서 정한 파산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진행 중이라는 직접청구권의 행사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주위적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

이지 않았고, 피대위권리가 인정되지 않음에 따라 주위적 원고의 직접청구권을 대위하여 그 지급을 구하는 예비적 원고들의 청구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결국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다. 대법원은 제3자의 직접청구권의 행사에 관한 법률관계에 대해 책임보험계약에 적용되는 국가의 법, 즉 이 사건에서 영국법이 적용된다고 보았고, 나아가 영국의 제3자 권리법상 직접청구권의 행사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다. 다만 제3자의 직접청구권에 근거한 청구 이외에 선택적으로 이루어진 채권자대위에 의한 보험금청구에 대한 원심의 판단이 누락되었음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였다.

라. 환송 이후 서울고등법원에서 화해권고결정이 2018. 8. 11. 확정되었다.

2) 항소심은 그 근거로 ① 피해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직접청구를 하는 것은 보험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에 그 직접적인 근거를 두고 있는 점, ② 직접청구권이 인정될 경우 그 내용(보상의 범위, 지급시기 등) 역시 보험계약에 따라 정해질 수밖에 없는 점, ③ 피보험자의 보험금지급청구권의 인정 여부는 보험계약의 준거법에 의하고,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은 다른 준거법에 따른다면 하나의 계약관계에서 파생되는 밀접한 법률효과에 있어 준거법을 분리시키게 되어 보험계약 당사자의 의사에도 반할 뿐만 아니라 법 해석에 있어 모순 및 충돌의 가능성이 있는 점, ④ 우리 국제사법은 ‘연결점’이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준거법을 정하고 그러한 연결점을 정하는 여러 기준을 제시하되 그와 별도로 당사자 사이에서 국제사법이 정한 준거법과 다른 준거법을 정하는 것의 효력을 인정하면서, 당사자의 의사 합치가 준거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는데,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에 있어서 보험자와 피보험자 사이에 합의된 준거법과 다른 법을 적용하는 것은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이 보험자의 의무 범위와 직결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위와 같은 국제사법의 규정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 점을 제시하였다.

3. 제3자 직접청구권의 준거법에 관한 대상판결의 요지

제3자가 외국의 법률이 준거법인 책임보험계약의 피보험자에 대하여 대한민국 법률에 의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갖게 되어 우리나라에서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을 행사할 경우의 준거법을 정하는 기준에 관하여 국제사법에는 직접적인 규정이 없다.

책임보험계약에서 보험자와 제3자 사이의 직접청구권에 관한 법률관계는 그 법적 성질이 법률에 의하여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제3자인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관계에 해당한다(대법원 1994. 5. 27. 선고 94다6819 판결 등 참조).

국제사법 제34조는 채권양도 및 채무인수의 법률관계를 동일하게 취급하여, 채권의 양도가능성, 채무자 및 제3자에 대한 채권양도의 효력은 양도되는 채권의 준거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제1항), 채무인수에 대하여도 이를 준용하고 있다(제2항). 또한 국제사법 제35조는 법률에 의한 채권의 이전에 관하여, 그 이전의 원인이 된 구 채권자와 신채권자 사이의 법률관계의 준거법에 의하지만, 만약 이러한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채권양도 및 채무인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전되는

채권의 준거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채무인수 및 법률에 의한 채권의 이전에 관하여 이전되는 채무채권의 준거법에 의하도록 한 국제사법 제34조 및 제35조의 기준은 법률에 의한 채무의 인수의 경우에도 참작함이 타당하다.

그런데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하게 되는 원인은,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는 것과는 별개로, 그 기초가 되는 보험자와 피보험자 사이의 법률관계인 책임보험계약에 관하여 제3자의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을 인정하는 법 규정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제3자 직접청구권이 인정되는 경우에 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구체적인 책임의 범위와 내용은 책임보험계약에 따라 정해질 수밖에 없고, 책임보험계약에 따라 보험자와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권리의무도 변경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외국적 요소가 있는 책임보험계약에서 제3자 직접청구권의 행사에 관한 법률관계에 대하여는 그 기초가 되는 책임보험계약에 적용되는 국가의 법이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이므로, 그 국가의 법이 준거법으로 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3므4133 판결 참조).

II. 대상판결에 대한 비판적 고찰

1. 서설

대상판결은 책임보험계약에서 제3자의 직접청구권의 준거법이 문제된 사안에 대한 것이다. 우리나라 상법 제724조 제2항 전문은 “제3자는 피보험자가 책임을 질 사고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험자에게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책임보험에서 제3자(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는데, 우리 상법은 제3자의 직접청구권 행사 요건에 제한을 두지 않고 폭넓게 인정하고 있는 반면, 뒤에서 보듯이 영국에서는 직접청구권을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직접청구권의 인정 여부나 범위는 어느 나라의 준거법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외국적 요소가 있는 책임보험계약의 당사자들에게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현행 국제사법에는 책임보험계약에서 제3자의 직접청구권과 관련하여 명확한 준거법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어떤 기준에 따라 준거법을 결정해야 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하에서는 책임보험계약에서 제3자의 직접청구권의 준거법을 정하는 기준에 대해 주로 살펴보고, 그 밖의 쟁점에 대해서는 관련된 범위 내

에서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한다.

2. 영국법 준거조항의 유효성

대상판결에서 B해운 주식회사와 보험자인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증권에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영국법 준거조항, 즉 ‘본 보험증권에 따라 발생하는 책임에 관한 모든 문제는 영국의 법과 관습이 적용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다. 국제사법 제45조는 계약에 관하여 당사자 자치를 규정하여 당사자가 계약의 성립과 효력의 준거법을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당사자들이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은 준거법 조항을 포함한 경우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도 해상보험에 있어서 위와 같은 영국법 준거조항에 대해 ‘오랜 기간 동안에 걸쳐 해상보험업계의 중심이 되어 온 영국의 법률과 관습에 따라 당사자 사이의 거래관계를 명확하게 하려는 것으로서 우리나라의 공익규정 또는 공서양속에 반하는 것이라거나 보험계약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유효하다’고 판시하여 그 유효성을 인정하는 것이 확립된 태도였다.³⁾

한편, 영국법 준거조항을 표기하는 유형

3) 대법원 1991. 5. 14. 선고 90다카25314 판결, 대법원 1996. 3. 8. 선고 95다28779 판결,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2다59528, 59535 판결 등 참조.

은 다음과 같은 3가지로 분류된다.⁴⁾ 즉 ① “이 보험계약에서 발생하는 모든 책임문제는 영국의 법률과 관습에 따라 규율된다 (All questions of liability under this policy are to be governed by the law and custom of England)”, ② “이 보험증권의 규정 또는 첨부된 어떠한 반대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보험은 일체의 보상청구에 대한 책임 및 결제에 대해서만 영국의 법률과 관습을 따를 것을 상호 이해하고 합의한다 (Notwithstanding anything contained herein or attached hereto to the contrary, this insurance is understood and agreed to be subject to English law and practice only as to liability for and settlement of any and all claims)”, ③ “이 보험은 영국의 법률과 관습에 따른다(This insurance is subject to English law and practice)”와 같은 형태인데, 대법원은 위 3가지 유형의 준거약관을 모두 유효한 것으로 보고 있다.⁵⁾

위와 같은 영국법 준거조항의 유효성을 인정하는 대법원의 태도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험자와 피보험자가 동등한 교섭력을 가지고 보험계약이 체결된다고 보기 어렵

고, 우리 경제현실에 비추어 보험자보다 피보험자를 두텁게 보호할 필요성이 여전히 인정된다는 점을 이유로 전형적인 보험자의 나라인 영국법 준거조항 약정을 유효하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비판하는 견해⁶⁾와 그로 인해 책임보험계약에서 피해자 보호가 상대적으로 미흡해질 가능성이 있음을 지적하는 견해⁷⁾가 있다.

3. 책임보험계약에서 제3자 직접청구권의 준거법

가. 책임보험계약에서 제3자 직접청구권의 의의

책임보험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고로 제3자에게 배상할 책임을 지게 된 경우 보험자가 그 손해를 보상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손해보험계약을 말한다(상법 제719조 참조). 이는 피보험자에게 직접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는 것이 아니고 피보험자의 책임으로 돌아갈 사고로 인하여 제3자에게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생긴 손해, 즉 피보험자의 재산에 대한 간접손해를 보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이

4) 박세민, 보험법(제6판), 박영사 (2021), 604면.

5) 대법원 1998. 7. 14. 선고 96다39707 판결(② 유형 관련), 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다55533 판결(① 유형 관련), 대법원 2019. 12. 27. 선고 2017다208232, 208249 판결(③ 유형 관련) 등 참조.

6) 서영화, “해상의 책임보험과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소위 Pay First Clause와 관련하여”, 한국해법학회지 제28권 제1호, 한국해법학회 (2006), 49-50면.

7) 박세민, 앞의 책, 706면.

다.⁸⁾ 피보험자와 보험자 사이에는 보험계약관계가 존재하고, 피보험자와 피해자인 제3자 사이에는 불법행위 등에 따른 배상책임 관계가 존재하게 되는 반면, 원칙적으로 보험자와 제3자 사이에는 아무런 권리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데 피보험자가 보험자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을 그 목적과 달리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자의로 유용하면서 별다른 책임재산도 없는 경우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금청구권을 양도하는 등으로 피해자 보호에 소홀히 하는 경우 피해자 보호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므로,⁹⁾ 피해자 보호를 위해 1991년 상법 제 724조 제2항에서 제3자의 직접청구권을 도입하였다. 그 인정 근거에 대해서는 위와 같이 명문으로 규정되기 전에는 책임보험본질설, 법정효과설(법규설), 계약당사자의 의사표시효과설 등 학설이 대립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직접청구권이 상법에 명문으로 규정된 이후에는 그 인정 근거를 따질 필요 없이 법이 정책적으로 특별히 인정하고 있는 권리라고 해석하면 충분하

다고 보이고, 우리나라 학설¹⁰⁾이나 판례¹¹⁾도 같은 견해를 취하고 있다.

한편, 영국에서는 제3자(피해자)가 피보험자(가해자)와 보험자 사이의 보험계약에 대해 당사자 관계(Privity of Contract)가 없다는 이유로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을 부정하여 왔다.¹²⁾ 그런데 피보험자가 파산하는 경우 보험금이 피해자에게 지급되지 않고 파산재단에 귀속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여 많은 비판을 받았고, 그에 따라 1930년 제3자 권리법[Third Parties (Rights against Insurers) Act 1930]이 제정되었다. 위법에 따르면 제3자가 직접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피보험자가 개인일 경우 파산하였거나 채권자들과 화의가 이루어져야 하고, 피보험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도산절차가 시작된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점에서 우리나라보다 요건이 강화되어 있다. 제3자의 직접청구권 행사로 피보험자의 보험자에 대한 권리가 제3자에게 이전하여 귀속되게 된다.¹³⁾ 그런

8) 박세민, 앞의 책, 664-665면; 한기정, 보험법(제3판), 박영사 (2021), 630면.

9) 한기정, 앞의 책, 694면

10) 박세민, 앞의 책, 660-661면; 한기정, 앞의 책, 695-696면.

11) 대법판결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하게 되는 원인은,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는 것과는 별개로, 그 기초가 되는 보험자와 피보험자 사이의 법률관계인 책임보험계약에 관하여 제3자의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을 인정하는 법 규정이 존재하기 때문이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

12) 서영화, “해상의 책임보험과 제3자의 직접청구권”, 부산지방변호사회지 제14호 (1997), 79면.

13) 1 Rights of third parties against insurers on bankruptcy &c. of the insured.

데 1930년 제3자 권리법이 이와 같이 직접 청구권의 행사요건을 제한적으로 인정함에 따라 신속한 피해자 구제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자, 피보험자 도산의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2010년 제3자 권리법[Third Parties (Rights against Insurers) Act 2010]이 도입되었다.¹⁴⁾

나. 직접청구권의 성질 결정

제3자의 직접청구권은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발생하게 된다. 그런데 위 직접청구권의 준거법과 관련하여 보험계약과 불법행위의 준거법이 일치하는 경우 해당 준거법에 따르면 되므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나, 대상판결과 같이 보험계약과 불법행위의 준거법이 일

치하지 않는 경우 어떤 기준에 따라 준거법을 정해야 할지 문제된다. 현재 외국적 요소가 있는 책임보험계약에서 직접청구권의 준거법에 대해서는 국제사법에서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바, 우선 그 논의는 직접청구권이 어떤 법률관계에서 비롯된 것인지 확정하는, 이른바 직접청구권의 성질 결정(characterization, classification, qualification) 문제를 출발점으로 삼을 수 있다.

국제사법에서 ‘성질 결정’이란 어떤 사안을 적절한 저촉규정에 포섭할 목적으로 독립한 저촉규정의 체계개념을 해석하는 것 또는 그 적용범위를 확정하는 것을 말하는데,¹⁵⁾ 특정한 국제사법적 사안이 어떤 법률관계에 속하는지 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문제는 ‘어떤 기준에 따라 성질 결정

(1) Where under any contract of insurance a person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insured) is insured against liabilities to third parties which he may incur, then—

(a) in the event of the insured becoming bankrupt or making a composition or arrangement with his creditors; or

(b) in the case of the insured being a company, in the event of a winding-up order being made, or a resolution for a voluntary winding-up being passed, with respect to the company, or of a receiver or manager of the company's business or undertaking being duly appointed, or of possession being taken, by or on behalf of the holders of any debentures secured by a floating charge, of any property comprised in or subject to the charge;

if, either before or after that event, any such liability as aforesaid is incurred by the insured, his rights against the insurer under the contract in respect of the liability shall, notwithstanding anything in any Act or rule of law to the contrary, be transferred to and vest in the third party to whom the liability was so incurred.

14) 대상판결은 영국의 1930년 제3자 권리법 적용이 문제되었던 사안으로, 2010년 제3자 권리법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다루지 않는다.

15) 석광현, 국제사법 해설, 박영사 (2013), 23-24면.

을 할 것인지’인데, 전통적으로는 법정지의 실질법이 성질 결정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법정지 실질법설(법정지법설)’, 법정지 국제사법에 따라 준거법으로 지정된 국가의 실질법의 체계개념이 기준이 된다는 ‘준거법설’ 등이 제기된 바 있는데,¹⁶⁾ 순수한 법정지 실질법설의 입장에서 국제사법의 독자적인 성질결정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¹⁷⁾ 다만 직접청구권의 성질에 대한 국제사법의 독자적인 체계개념이 정립되어 있지 않은 현재의 상황에서 법정지의 실질법에 대한 검토에서부터 성질 결정 논의를 시작할 수밖에 없다고 보이므로, 이하에서는 상법에서 정하고 있는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에 관하여 검토한다.

다.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권설과 보험금청구권설이 대립하고 있는데, 소멸시효나 지연손해금 산정 등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먼저 손해배

상청구권설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보고 직접청구권을 피해자의 피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것으로 보는 견해이다.¹⁸⁾ 위 견해는 피해자와 피보험자 사이에 보험계약관계가 없으므로 직접청구권을 보험금청구권으로 해석할 수 없고, 직접청구권은 손해배상금 지급을 1회적으로 해결하여 사고의 처리를 신속·원활하게 하기 위해 인정되는 것으로 피해자는 피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보험자에 대해 독립하여 행사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족하며,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보다 장기의 소멸시효가 인정되고, 피보험자의 다른 채권자들이 압류하거나 피보험자 자신에 의한 처분, 피보험자 파산 시의 파산재단 편입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손해배상청구권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것 등을 그 근거로 한다. 이에 반하여 보험금청구권설은 직접청구권을 법률의 규정에 따른 보험금청구권으로 해석하는 견해이다.¹⁹⁾ 이 견해는 책

16) 석광현, 앞의 책, 29-31면; 신창섭, 국제사법 (제5판), 세창출판사 (2022), 105-108면; 안춘수, 국제사법 (제2판), 법문사 (2023), 91-102면.

17) 석광현, 노태약 집필대표, 온주 국제사법, 로앤비 (2023), 제23조: 법률관계의 성질결정 참조.

18) 박세민, 앞의 책, 700면; 한기정, 앞의 책, 662-663면.

19) 남기정, “해상책임보험에서 제3자 직접청구권의 준거법 결정”, 사법논집 제58집 (2015), 220-224면; 양승규, “피해자의 보험금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 손해보험 325호, 손해보험협회 (1995), 76면; 이성진, “책임보험계약상 제3자 직접청구권 행사에 관한 준거법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5다42599 판결을 중심으로-”, Dong-a journal of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 law 20권, School of law and institute for legal studies Dong-A university (2017), 88-90면.

임보험의 본질을 피해자를 위한 보험, 즉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보고 가해자(피보험자)는 보험계약자에 불과하고 피해자인 제3자가 보험금청구권을 갖게 된다고 보고 있다. 그 근거로는 보험자에게 손해사고에 대한 어떠한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직접청구권을 손해배상청구권으로 해석하기 어렵고, 보험자에게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려는 의사가 있다고 해석하는 것도 어려우며, 피해자는 보험자에 대해 법의 규정에 따라 피보험자가 책임을 져야 할 사고로 입은 손해의 보상을 청구하는 것이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등을 들고 있다.

대법원은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에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는 손해배상액이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는 등의 일정한 경우에는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대하여 직접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위 약관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부여된 보험회사에 대한 보험금액 청구권은 상법 제662조 소정의 보험금액 청구권에 다름 아니므로 이를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3. 4. 13. 선고 93다 3622 판결 참조).”라고 하여 직접청구권을

보험금청구권으로 판시한 바도 있으나, 그 이후에는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이고 피보험자의 보험자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의 변형 내지는 이에 준하는 권리가 아니라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다.²⁰⁾

현재의 주류적인 학설과 판례의 입장은 손해배상청구권설의 입장에서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을 설명하고 있고, 특히 판례가 손해배상청구권의 입장을 명확하게 취하면서 그에 기초하여 이론을 발전시켜 온 이상 현 시점에서 두 학설의 이론적 우위성을 따지는 것은 실제로 큰 의미가 없는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것처럼 직접청구권에 적용될 준거법을 결정함에 있어서 위와 같은 법적 성질에 관한 논의는 여전히 중요한 의미를 제공한다. 그런데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직접청구권도 가해자와 보험자 사이의 보험계약의 존재를 전제로 인정되는 것이어서 그 행사나 범위에 있어서 보험계약의 영향을 받을 수

20) 대법원 1995. 7. 25. 선고 94다52911 판결, 대법원 1998. 7. 10. 선고 97다17544 판결, 대법원 2000. 6. 9. 선고 98다54397 판결. 대법판결에서도 이러한 태도는 그대로 유지되었다.

밖에 없다. 또한 손해배상청구권설의 입장과 같이 직접청구권을 손해배상채무의 병존적 인수라고 볼 경우 보험자는 피해자를 상대로 본래의 의미의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항변을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없다고 할 것임에도 위와 같은 항변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은 그 이론적 약점이 있다. 상법 제724조 제2항은 제3자가 ‘보험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험자에게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명문으로 보험계약과의 관련성과 손해 ‘배상’과의 차이를 밝히고 있기도 하다. 따라서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인정되는 보험금청구권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피해자 보호라는 입법취지와 계약당시에는 전혀 누구일지 모르는 불특정한 제3자에게 법이 인정한 직접청구권을 책임보험계약의 당사자가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계약자유 원칙을 넘어서는 것이라는 점에서 상법 제724조 제2항의 직접청구권은 강행규정이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²¹⁾

라. 직접청구권의 준거법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제사법에서는 직접청구권의 준거법에 대해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에 대해 국제적으로 통일된 개념이 정립되어 있지 않은 현 상황에서, 상법에 따른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을 주된 기준으로 하여 준거법을 정하게 될 경우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을 보험금청구권으로 본다면 보험계약에 관한 준거법이 적용이 될 것이고, 손해배상청구권으로 본다면 그 책임의 근거가 계약상 책임인지 불법행위 책임인지에 따라 준거법이 정해지는 것이 논리적이다.

학설상으로는 보험계약의 준거법에 따라야 한다는 견해와 불법행위의 준거법에 따라야 한다는 견해가 대립한다. 먼저 보험계약의 준거법에 따라야 한다는 견해는 제3자의 직접청구권은 보험계약상 피보험자인 가해자의 보험자에 대한 권리를 기초로 하는 것이고 보험약관 및 준거법에 따라 제3자의 권리 내용도 정해지므로 보험계약의 준거법이 피해자의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에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본다.²²⁾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을 손해배상

21) 박세민, 앞의 책, 695면; 한기정, 앞의 책, 660면; 남기정, 앞의 글, 225면; 최병규, “해상보험자에 대한 피해자 직접청구권의 최근 논의”, 일감법학 제41호,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 10.), 190면.

22) 서영화, 앞의 글(각주 6), 49면.

청구권으로 보면서도 보험계약의 준거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²³⁾ 이에 반하여 불법행위의 준거법에 따라야 한다는 견해는 피해자의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이 손해배상 청구권인 이상 이에 대해 불법행위의 준거법이 적용된다는 입장이다.²⁴⁾

대법원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대상판결에서 직접청구권에 관한 법률관계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제3자인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관계에 해당한다고 보는 기존 입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법률에 의한 채무인수에 경우에

도 구 국제사법 제34조 및 제35조(현행 국제사법 제54조 및 제55조²⁵⁾)에 해당한다)의 기준을 참작함이 타당한데, 외국적 요소가 있는 책임보험계약에서 제3자 직접청구권의 행사에 관한 법률관계에 대해서는 그 기초가 되는 책임보험계약에 적용되는 국가의 법이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어 준거법으로 된다’고 판시하였다. 나아가 최근 대법원은 제3자의 직접청구권이 문제되는 사안은 아니었으나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병존적 채무인수가 이루어진 사안에서 “구 국제사법 제34조는 채권의 양도인과 양수인 간의 법률관계는 이들 간의 계약의 준거법에 의하도록 정하고(제1항 본문), 채무

23) 박영준, “해상책임보험에서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에 관한 고찰”, 중앙법학 5집 1호 (2003), 64-65면. 위 견해는 보험자 입장에서 보면 보험자와 직접 관계가 없는 제3자의 개입으로 보험자가 불리하게 되어서는 안 되고, 직접청구권을 손해배상청구권이라고 보는 경우에도 불법행위의 준거법은 “책임보험의 보험사고가 발생했느냐의 문제”, 즉 국제사법상 보험계약의 선결문제로 보아야 하고, 불법행위의 준거법에 따라 보험계약상 배상책임이 존재하느냐가 결정된 이후에 “제3자에게 직접청구권을 인정하여야 하는가의 문제”는 보험계약의 본문제로 보아 보험계약의 준거법에 의하여야 한다고 본다. 이에 대해서는 제3자에게 직접청구권을 인정하여야 하는가의 문제를 보험계약의 본문제로 보아야 하는 근거가 미약하고, 손해배상 청구권설에 의할 경우 직접청구권은 보험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책임을 추궁하는 것이고 제3자 권리법과는 달리 상법상으로 직접청구권의 행사에 있어 피해자의 피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 먼저 확정될 것을 요구하지 않고 있어 손해배상책임의 인정과 동시에 별다른 요건 없이 직접청구권 행사가 가능하여 이를 선결문제 및 본문제에 관한 것으로 분리하는 것은 사실상 의미가 없어 타당하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된다(남기정, 앞의 글, 247면).

24) 최종현, “선박보험과 피해자의 직접청구권”, 보험법률 42호, 보험신보사 (2002), 35-36면.

25) 제54조(채권의 양도 및 채무의 인수)

- ① 채권의 양도인과 양수인 간의 법률관계는 당사자 간의 계약의 준거법에 따른다. 다만, 채권의 양도 가능성, 채무자 및 제3자에 대한 채권양도의 효력은 양도되는 채권의 준거법에 따른다.
- ② 채무인수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제55조(법률에 따른 채권의 이전)

- ① 법률에 따른 채권의 이전은 그 이전의 원인이 된 구채권자와 신채권자 간의 법률관계의 준거법에 따른다. 다만, 이전되는 채권의 준거법에 채무자 보호를 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이 적용된다.
- ② 제1항과 같은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전되는 채권의 준거법에 따른다.

자 및 제3자에 대한 채권양도의 효력은 양도되는 채권의 준거법에 의하도록 정하면서(제1항 단서), 채무인수에 대해서도 이를 준용하고 있다(제2항). 이때 채무인수에는 면책적 채무인수뿐만 아니라 병존적 채무인수도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병존적 채무인수의 경우 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의 법률관계는 이들 사이의 계약의 준거법에 의하고, 채권자에 대한 채무인수의 효력은 인수되는 채무의 준거법, 즉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적용되는 준거법에 의하게 되며, 이는 채권자, 채무자, 인수인이 함께 채무인수에 관한 합의를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채권자, 채무자, 인수인 사이의 합의를 통해 병존적 채무인수가 이루어진 경우, 인수인이 채권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에 관한 준거법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적용되는 준거법과 동일하다.”라고 직접적으로 병존적 채무인수에 대해 구 국제사법 제34조가 적용된다고 보았는데(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9다201662 판결), 이러한 최근 판시에 비추어 보면 제3자의 직접청구권에 대해서도 구 국제사법 제34조 및 제35조(현행 국제사법 제54조 및 제55조)의 기준을 참작하는 것을 넘어 직접 적용되거나 유추적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런데 대법원이 직접청구권을 보험자

가 피보험자의 제3자인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관계에 해당한다고 보면서도 피보험자와 제3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적용되는 준거법이 아닌 보험계약의 준거법에 따른다고 보는 것이 그 자체로 논리적인지 의문이다. 더욱이 대법원은 대상판결에서 법률에 의한 채무인수의 경우 ‘이전되는 채무·채권의 준거법에 의하도록 한 국제사법 제54조 및 제55조의 기준을 참작함이 타당하다’고 보면서도 ‘이전되는 채무’, 즉 피보험자와 제3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적용되는 준거법이 아니라 피보험자와 보험자 사이의 책임 보험계약의 준거법이 적용된다고 보아 모순을 보이고 있으며, 국제사법 제55조가 법률에 따른 ‘채권의 이전’에 관한 규정이라는 점에서 법률에 따른 ‘채무인수’에 그대로 적용 또는 원용하는 것도 무리가 있다. 이처럼 법률에 의한 채무인수의 준거법을 정함에 있어 국제사법 제54조 및 제55조를 적용 또는 원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보임에도, 대법원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기준이 적용되는지에 대해 아무런 판시를 하지 않은 채 위 규정들의 기준을 참작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하는 것은 오히려 더 큰 불명확성을 야기하고 있다는 비판을 면하기도 어렵다.²⁶⁾

한편, 대법원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국제사법 제54조 제2항에서 정한 ‘채무인수’에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른) 병존적 채무 인수도 포함된다고 보았는데, 위 규정은 면책적 채무인수에만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²⁷⁾ 병존적 채무인수는 기존의 채권자와 채무자 및 제3자의 관계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채무인수로 인한 별도의 추가적인 법적 규율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 자체의 준거법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 충분하기 때문이다.²⁸⁾ 이와 같은 점에서도 대상판결이 국제사법 제54조 제2항을 직접청구권의 준거법 판단 기준으로 참작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대상판결은 직접청구권 결정에 있어서 당사자가 준거법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 그 계약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에 의한다(국제사법 제46조 제1항)는 기준에 따라 책임보험계약에 적용되는 국가의 법이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았는데, 그와 같은 결론은 그 논리적 근거를 상당히 결여하였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이와 같은 대상판결의 논리적 문제점은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을 보험금청구권으로 보면 해결될 수 있는데, 제3자의 직접청구권 행사에 따라 보험자가 부담하

는 책임의 범위와 내용은 보험계약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당연하다는 점에서 충분히 논리적 일관성과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고, 이러한 입장에서 대법원이 직접청구권의 준거법으로 보험계약에서 정한 바와 같이 영국법이 적용된다고 보는 결론 자체에 대해서는 그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

4. 제3자 보호 방안

앞서 본 바와 같이 대법원은 직접청구권에 보험계약의 준거법이 적용된다고 보고 있고, 대부분의 해상보험에서 영국법을 준거법으로 하는 약관을 사용하는 선주책임 상호보험조합 또는 영리 보험회사와 해상보험계약을 체결하여 왔으므로 국내 법원에서 제3자 직접청구권이 문제될 경우 우리 상법보다는 영국의 법률과 관습이 적용된다. 대상판결에서 적용되었던 1930년 제정된 영국 제3자 권리법[Third Parties (Rights against Insurers) Act 1930]에 따르면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책임보험의 피해자인 제3자가 피보험자의 권리를 이전받아 보험자에 대하여 직접청구권을 행사하려면 피보험자가 제3자 권리법 제1조 제1항이 규정하는 파산 등 지급불능상태에 있을 것을

26) 최성수, “책임보험계약상 제3자의 직접청구권의 준거법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검토 -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5다42599 판결을 중심으로 -”, 아주법학 제13권 제4호 (2020), 147면.

27) 석광현, 앞의 책, 428면; 안춘수, 앞의 책, 302면.

28) 안춘수, 앞의 책, 302면.

요건으로 하고, 피보험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해산명령 또는 해산결의가 이루어졌거나 법인의 영업이나 재산에 관하여 관리수탁자가 선임되었거나 회사재산 전체에 대한 유동담보권자에게 회사재산에 대한 점유가 이전된 상태에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한다. 직접청구권 행사에 별다른 제한이 없는 우리 상법 규정에 비해 영국에서는 그 행사요건에 상당한 제한이 있고, 대상판결에서도 주위적 원고가 위 제3자 권리법상의 행사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보아 청구가 인정되지 않았다. 그런데 이와 같이 영국법이 대부분의 해상보험과 관련된 사건에서 적용됨에 따라 직접청구권 행사에 상당한 제한이 인정될 경우 상법에서 직접청구권을 인정한 본래의 취지와 달리 피해자 보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제3자 보호를 위해 직접청구권에 관한 상법 제724조 제2항의 규정을 별도로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

우선 국제사법 제45조 제4항은 “모든 요소가 오로지 한 국가와 관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그 외의 다른 국가의 법을 선택한 경우에 관련된 국가의 강행규정은 적용이 배제되지 아니한다.”라고 규

정하고 있는바, 위 조항은 순수한 내국계약에서 영국법을 계약의 준거법으로 지정한 경우에도 우리나라 강행규정이 여전히 적용된다는 의미로 해석되므로²⁹⁾ 국내 항해만을 목적으로 하는 연안 여객선과 같은 경우에 보험계약에 영국법을 계약의 준거법으로 지정하는 조항을 포함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조항에 따라 상법 제724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다만, 대상판결 사안에서는 위 규정이 적용되기 어렵다).

다음으로 국제사법 제20조는 “입법목적에 비추어 준거법에 관계없이 해당 법률관계에 적용되어야 하는 대한민국의 강행규정은 이 법에 따라 외국법이 준거법으로 지정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강행규정은 보편적 또는 국제적 강행규정을 의미한다.³⁰⁾ 만일 상법 제724조 제2항이 국제적 강행규정에 해당한다면 국제사법 제20조에 따라 준거법을 외국법으로 정한 경우에도 강행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 되는데, 이를 긍정하는 견해들이 다수 발견된다.³¹⁾³²⁾ 대법원은 대상판결에서 위 국제사법 규정에 따라 상법 제724조 제2항이 적용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는바, 상법 제724조 제2항

29) 신창섭, 앞의 책, 271-272면.

30) 신창섭, 앞의 책, 147면.

31) 남기정, 앞의 글, 261면; 박영준, 앞의 글, 65-66면; 최병규, 앞의 글, 200-201면; 신현기, “영국법상 제3자

이 국제적 강행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상법이 직접청구권을 명문으로 규정하여 피해자 보호의 취지를 명확히 드러내고 있고, 영국법상 제3자 권리법이 정하고 있는 행사요건을 엄격히 요구하는 경우 대상판결과 같이 피보험자가 자력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임에도 피보험자가 보험금 및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는 경우 등에 피해자 보호 목적을 달성하기 매우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를 국제적 강행규정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여 그 적용 범위를 넓히는 것이 불합리한 해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제3자 직접청구권에 관하여 우리나라와 영국이 그 요건을 달리 정하고 있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현재 상법 제724조 제2항을 국제적 강행규정으로까지 명시적으로 인정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따라서 향후 이 부분에

대해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한편, 계약외채무의 준거법에 관한 유럽연합 규정(로마 II) 제18조³³⁾는 ‘피해를 입은 자는 계약 외 채무에 대하여 적용되는 법 또는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책임 있는 자의 보험자에게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불법행위와 보험계약의 준거법 중 어느 하나가 인정되는 경우 피해자의 직접청구권 행사를 인정하고 있는바, 국제사법에 위와 같은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은 책임보험계약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법의 접점에 있는 것으로서 피해자에게 우회적인 청구를 피하도록 하고, 나아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을 고려하여 불법행위의 준거법 또는 보험계약의 준거법 중 어느 하나라도

의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의 적용 제한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5다42599 판결-, 판례연구 31집, 부산판례연구회 (2020), 306-309면.

- 32) 이에 반하여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에 관한 상법상 조항은 피해자, 가해자(피보험자), 보험자 간의 ‘사익적’ 이해관계를 조절하여 피해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데 취지가 있으므로 국내적 강행법규에는 해당하지만 국제적 강행법규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법 제724조 제2항의 피해자 직접청구권이 국제적 강행법규로서 당연히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견해가 있다[한창완, “책임보험에서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의 준거법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5다42599 판결-, 일감법학 제39호,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 2.), 277-279면].

- 33) Regulation (EC) No 864/2007 of the European Parliament of the Council of 11 July 2007 on the law applicable to non-contractual obligations.

Article 18 Direct action against the insurer of the person liable

The person having suffered damage may bring his or her claim directly against the insurer of the person liable to provide compensation if the law applicable to the non-contractual obligation or the law applicable to the insurance contract so provides.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을 인정하면 직접청구가 불가능하지 않다는 견해가 있다.³⁴⁾ 이에 대해서는 로마 II 규정과 달리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우리 국제사법하에서는 채택하기 어렵고 특히 가해자가 보험에 가입하였다는 우연한 사정으로 가능한 넓게 피해자의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이 언제나 정의에 부합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비판하는 견해가 있는데,³⁵⁾ 입법론적으로 적극적인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다.³⁶⁾³⁷⁾

5. 결론

책임보험, 특히 해상책임보험에 있어서 영국법 준거조항은 대법원의 확립된 입장에 따라 그 유효성이 인정되어 왔고, 실무적으로도 그 유효성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그런데 보험계약의 준거법과 불법행위의 준거법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직접청구권의 준거법은 보험계약의 준거법에 따르는 것이 논리적으로 간명하고, 우리 상법상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을 보험금청구권

으로 보는 입장을 취할 경우 논리적 일관성도 유지할 수 있다. 대법원의 입장처럼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을 손해배상청구권이라고 보면서 그 준거법은 영국법을 적용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의문이 있고, 설령 대법원의 태도를 따른다고 하더라도 국제사법 제54조 및 제55조의 적용에 대한 판시는 불명확성을 야기할 뿐이며,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인 보험계약의 준거법이 적용되어 직접청구권의 성질을 보험금청구권으로 보는 견해와 결론적으로 다르지 않게 된다. 한편, 대상판결과 같이 보험계약의 준거법인 영국법이 직접청구권에 적용된다고 할 경우 직접청구권 행사요건에는 상당한 제한이 따르므로, 실제로 제3자의 직접청구권 행사는 의미를 갖지 못하게 될 우려가 있는데, 이는 상법 규정의 입법취지를 비롯해서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국제적인 취지와도 부합하지 않는다. 따라서 제3자 직접청구권을 인정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는데, 현행 국제사법의 해석론으로는 제20조에 따라 상법 제724조 제2항을 국제적 강

34) 석광현, 앞의 책, 416-417면.

35) 한창완, 앞의 글, 275-276면.

36) 한창완, 앞의 글, 279-280면.

37) 정병석, “해상법 분야의 국제사법 준거법 조항 개정을 위한 입법론적 검토”, 국제사법연구 제28권 제1호 (2022), 728면은 제3자(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으로 “책임보험의 피보험자가 책임을 질 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에 대하여 제3자가 보험자에게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및 보험자와 그 제3자의 법률관계는 제3자가 선택하는 바에 따라 보험계약의 준거법 또는 제3자의 피보험자에 대한 청구의 준거법에 따른다.”라는 내용의 국제사법 제55조의2를 신설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행규정으로 해석하여 그 적용을 긍정하는 것도 충분히 생각해볼만 하다. 다만 입법론적으로 제3자의 직접청구권을 보험계약 또는 불법행위의 준거법에 선택적으로 연

결하는 방안이 가장 명확한 제3자 보호 수단이므로 적극적으로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참 고 문 헌

박세민, 보험법(제6판), 박영사 (2021)

석광현, 국제사법 해설, 박영사 (2013)

석광현, 노태악 집필대표, 온주 국제사법, 로앤비 (2023)

신창섭, 국제사법 (제5판), 세창출판사 (2022)

안춘수, 국제사법 (제2판), 법문사 (2023)

한기정, 보험법(제3판), 박영사 (2021)

남기정, “해상책임보험에서 제3자 직접청구권의 준거법 결정”, 사법논집 제58집 (2015)

박영준, “해상책임보험에서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에 관한 고찰”, 중앙법학 5집 1호 (2003)

서영화, “해상의 책임보험과 제3자의 직접청구권”, 부산지방변호사회지 제14호 (1997)

서영화, “해상의 책임보험과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소위 Pay First Clause와 관련하여”, 한국해법학회지 제28권 제1호, 한국해법학회 (2006)

신현기, “영국법상 제3자의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의 적용 제한 -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5다42599 판결-”, 판례연구 31집, 부산판례연구회 (2020)

양승규, “피해자의 보험금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 손해보험 325호, 손해보험협회 (1995)

이성진, “책임보험계약상 제3자 직접청구권 행사에 관한 준거법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5다42599 판결을 중심으로-”, Dong-a journal of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 law 20권, School of law and institute for legal studies Dong-A university (2017)

정병석, “해상법 분야의 국제사법 준거법 조항 개정을 위한 입법론적 검토”, 국제사법연구 제28권 제1호 (2022)

최병규, “해상보험자에 대한 피해자 직접청구권의 최근 논의”, 일감법학 제41호,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 10.)

최성수, “책임보험계약상 제3자의 직접청구권의 준거법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검토 -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5다42599 판결을 중심으로 -”, 아주법학 제13권 제4호 (2020)

최종현, “선박보험과 피해자의 직접청구권”, 보험법률 42호, 보험신보사 (2002)

한창완, “책임보험에서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의 준거법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5다42599 판결-”, 일감법학 제39호,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 2.)

[국문초록]

책임보험계약에서 제3자의 직접청구권의 준거법에 관한 연구

-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5다42599 판결을 중심으로 -

박형렬

해상책임보험에서 보험자와 피보험자 사이에 체결되는 보험계약에 영국법 준거약관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이는데, 그 유효성은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그런데 외국적 요소가 있는 책임보험에서 제3자의 직접청구권과 관련해서는 현행 국제사법이 명확한 준거법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권설과 보험금청구권설이 대립하고 있고, 현재의 주류적인 학설과 판례는 손해배상청구권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손해배상청구권설이 가지고 있는 이론적 약점을 고려할 때 제3자의 직접청구권은 보험금청구권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제3자 직접청구권의 준거법에 대해서는 법적 성질에 관한 위와 같은 견해 대립과 별개로 불법행위의 준거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견해와 보험계약의 준거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는 견해가 대립하는데, 대상판결(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5다42599 판결)은 제3자의 직접청구권에 관한 법률관계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제3자인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관계에 해당한다고 보는 기존 입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준거법은 그 기초가 되는 책임보험계약의 준거법이 적용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다.

그런데 대상판결은 직접청구권을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제3자인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관계에 해당한다고 보면서도, 그 준거법을 피보험자와 제3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적용되는 준거법이 아닌 보험계약의 준거법에 따른다고 보아 그 자체로 논리적인지 의문이다. 더욱이 채무인수에 관한 국제사법 제54조 제2항의 규정이 병존적 채무인수의 경우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일반적임에도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않은 채 위 규정을 준거법 결정 시 참작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한 것은 오히려 준거법 결정 기준과 관련하여 불명확성을 야기하고 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을 보험금청구권으로 보고 제3자와 보험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보험계약의 준거법을 적용하면 논리적으로 일관되고 간단하다. 다만 이 경우 대상판결과 같이 보험계약에 포함된 영국법 준거조항에 따라 1930년 제3자 권리법[Third Parties (Rights against Insurers) Act 1930]이 적용되어 직접청구권 행사가 제한될 수 있는데, 상법 제724조 제2항을 국제적 강행규정으로 보아 국제사법 제20조에 따라 위 규정을 적용하여 제3자를 보호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나아가 입법론적으로는 계약외채무의 준거법에 관한 유럽연합 규정(로마 II)에서 정한 바와 같이 제3자의 직접청구권을 불법행위 또는 보험계약의 준거법에 선택적으로 연결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주제어

제3자 직접청구권, 책임보험, 보험계약 준거법, 불법행위 준거법,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 상법 제724조 제2항, 영국법 준거조항, 영국 제3자 권리법, 국제적 강행규정

[Abstract]

A Study on the Law Applicable to Third Party's Direct Claim Against Insurer

- Focusing on Supreme Court Decision 2015Da42599 Decided October 26, 2017 -

Park, Hyeong Ryeol

In maritime liability insurance contracts, it is customary for a choice-of-law clause based on English law to be included between the insurer and the insured, and its validity is generally recognized. However, in liability insurance involving foreign elements, the current private international law lacks a clear provision for the governing law concerning the direct third party claim against the insurer.

The legal nature of direct third party claims is a subject of contention between the tort claim theory and the insurance claim theory. Presently, prevailing academic discourse and legal precedents favor the tort claim theory. However, considering the theoretical weaknesses of the tort claim theory, it is argued that interpreting the third party direct right of action as an insurance claim right is more reasonable.

Concerning the governing law for the third party direct right of action, there are conflicting views—some advocate for the application of the governing law for torts, while others argue for the application of the governing law of the insurance contract. A landmark decision (Supreme Court Decision 2015Da42599 Decided October 26, 2017) maintained the existing position that the legal relationship concerning the third party direct right of action corresponds to a situation where the insurer concurrently assumes liability for damages to the injured third party. It interprets that the governing law is that of the underlying liability insurance contract.

However, the landmark ruling raises doubts about its logical coherence by asserting that while recognizing the third party direct right of action as applicable to situations where the insurer assumes concurrent liability to compensate the third-party's loss, it deems the governing law to follow that of the insurance contract rather than that governing the legal relationship between

the insured and the third party. Furthermore, even though the general practice is not to apply Article 54(2) of the Private International Law Act, which is generally applicable to concurrent assumption of obligations, the decision suggests applying it without specifying concrete criteria, contributing to ambiguity in governing law decisions.

Therefore, interpreting the legal nature of the direct right of action as an insurance claim right and applying the governing law of the insurance contract provides logical consistency and simplicity. However, in this situation, the application of the Third Parties (Rights against Insurers) Act 1930 may be applicable due to the English law choice-of-law clause included in the insurance contract, potentially restricting the exercise of the direct right of claim. Considering Article 724(2) of the Commercial Code as an internationally mandatory regulation under Article 20 of the Private International Law Act provides a potential avenue for protecting third parties in an international context. Additionally, from a legislative perspective, it is worth considering Regulation (EC) No 864/2007 of the European Parliament of the Council of 11 July 2007 on the law applicable to non-contractual obligations (Rome II), which allows direct third party claims to be selectively linked to either the governing law of illegal acts or the governing law of the insurance contract.

Keywords: Third party direct right of action, Liability insurance, Choice-of-law for insurance contract, Choice-of-law for tort, Legal nature of direct right of action, Article 724(2) of the Commercial Code, English law choice-of-law clause, Third Parties (Rights against Insurers) Act 1930, International mandatory regulation, Rome II.

우주의 상업화와 우주자원채굴에 관한 우주법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법학박사 김 한 택

*논문접수 : 2024. 1. 17. *심사개시 : 2024. 1. 24. *게재확정 : 2024. 2. 10.

〈 목 차 〉

I. 서론	III. 우주자원채굴에 관한 국내법과 아르테미스 약정
II. 우주의 상업화에 관한 우주법	1. 우주자원채굴에 관한 국내법
1. 우주의 상업화 관련 우주법	2. 아르테미스 약정
2. 미국 법원의 판결	IV. 결론

I. 서론

1957년 10월 4일 소련의 스푸트니크(Sputnik) 1호 발사 이후 우주 공간에서 이루어진 초창기 국가들의 상업활동은 주로 위성 통신(satellite communications)에 집중되었다.¹⁾ 그러나 최근 우주 공간에서의 상

업활동은 기상(氣象) 및 지질 평가, 위성발사, 원격 탐사(remote sensing) 및 GPS(global positioning system, 범지구위치결정시스템)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 동시에 각 정부들은 위성발사 및 위성제공 분야를 점차 민간 부문으로 이전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²⁾ 기타 우주에서의 상업적 분야로는 우

1) 우주에서 상업적 활동이 처음으로 시작된 것은 통신사업분야로서 우주에서의 상업적 활동 중 가장 수익이 큰 분야이다. 한 예로 국제통신위성기구(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s Organization; INTELSAT)에 참여하고 있는 미국의 COSMAT는 수입만 수조 달러에 이른다고 하고, 다른 지역적 콘소시움(consortium)인 아랍 위성체제(Arab Satellite Communications System; ARABSAT)와 유럽통신위성기구(European Telecommunications Satellite Organization; EUTELSAT)는 다른 국가들과 함께 위성체제를 보유하면서 연간 약 5백억 달러의 수입을 올리는 위성산업으로 등장하였다. 통신사업은 또한 우주환경문제와의 관계에서 가장 손해를 덜 끼치는 사업으로 분류되고 있다(Harold Craig Manson, The Impact of International Outer Space Commerce on the Environment, 26 Texas International Law Journal, 1991, p. 544; 이영진, 상업적 우주활동의 국제법적 규제, 항공우주정책 법학회지, 제28권 제2호, 2013, p. 188; 김한택, 우주법론, 도서출판 아진, 2020, p. 283).

주관광, 우주정거장(space station) 개발, 우주항공교통(aerospace transportation), 준궤도 우주선(suborbital space vehicles) 개발, 소행성(小行星, asteroid) 및 기타 지구에 가까운 천체(天體, celestial body)에서의 자원 채굴, 탑재량 전달 시스템, 특수 복합 구조 설계, 분석, 제작, 개발 비행 테스트, 소규모 추진 시스템 개발, 펌프(pumps), 발사체 부품, 연구, 개발 및 프로젝트 관리 등이 있다.³⁾ 현재 우주 관련 상업 활동의 주요 발전 중 하나는 민간 기업가가 미국 항공 우주국(National Aeronautics and Space Administration, 이하 ‘NASA’)이나 국가 우주 기관 등에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 것이다. 투자은행 모건스탠리(Morgan Stanley)는 세계 우주산업이 2020년 3,850억

달러(약 480조원) 규모에서 2030년 5,900억 달러(약 735조원), 2040년 1조 1,000억 달러(약 1,370조원)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했는데,⁴⁾ 우주활동이 더욱 상업화됨에 따라 이 수치는 기하급수적인 속도로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구나 2020년 10월 미국 NASA가 달에서 물을 발견하면서 달이 미래 우주 탐사 작전 기지나 잠재적인 식민지로 활용될 수 있다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⁵⁾

최근 과학발전을 통해 달과 다른 천체를 포함한 우주 공간에는 인류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천연자원이 있다는 사실이 입증되고 있다.⁶⁾ 따라서 점점 더 많은 국가와 민간기업들이 우주 자원은 물론이고 수익성 있는 우주 사업에 집중하고 있다.

- 2) Paul Stephen Dempsey, National Laws Governing Commercial Space Activities: Legislation, Regulation, & Enforcement, 36 *Northwester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 Business*, no. 1, 2016, p. 3.
- 3) Information and materials about SpaceX are available at <http://www.spacex.com/> (last visited on Dec. 26, 2023); The Space Settlement Institute, “Private Space Companies,” available at <http://www.space-settlement-institute.org/private-space-companies.html#sthash.de0F0fA9.dpuf> (last visited on Dec. 26, 2023).
- 4) 세계 우주산업 규모 2030년 735조원… 한국 시장점유율은 1%, *조선일보*, 2023.01.12.
- 5) Jonathan P. Ziga, Commercialization of Resource Extraction Throughout the Final Frontier & the Parallel to Terrestrial Procedures, 55 *Case Western Reserve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2023, pp. 673-674.
- 6) 2022년 기준으로 세계에는 인류가 약 50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천연가스가 매장되어 있다. 석유는 47년 동안 사용할 분량이 남아 있으며, 매장량은 연간 소비량의 50배 정도이다. 매장지가 새로 발견되지 않는다면 현재 소비량 기준으로 인류는 47년 뒤면 석유 고갈, 50년 뒤면 가스 고갈이란 현실에 직면할 수 있다 (저개발국 성장…에너지 소비 증가 불가피, 이코노미 인사이트, 2022.12.17.). 달에는 물·산소와 같은 생명 자원은 물론 헬륨-3(Helium-3)라는 차세대 에너지 자원이 있다. 헬륨-3는 탄소 배출이나 방사능 오염 등의 걱정이 없는 핵융합 발전의 연료로 사용할 수 있다. 널리 쓰이는 삼중수소와 비교해도 방사선도 거의 없다. 약 1g으로 석탄 약 40t에 맞먹는 에너지를 만들 수 있을 만큼 효율적인 자원이기도 하다. 헬륨-3가 지구에 아닌 달에만 존재하는데, 과학계는 달 표면에만 약 100-200만t의 헬륨-3가 있다고 추정한다. 이는 인류가 약 1만 년 넘게 사용할 수 있는 양이다. 헬륨-3를 지구로 가져온다 해도 이를 활용하려면 핵융합 원자로가 필요하다. 핵융합 원자로를 건설하는 비용과 상용화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하면 단기간 내에 에너

경제적 인센티브에 의해 우주 활동에 더 많은 민간기업의 참여가 활발해지면 본질적으로 제한된 천연자원에 대한 국가간 채굴 경쟁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 우주에 관련된 현재의 국제법(international law)과 우주법(space law)⁷⁾이 충분히 확립되어 있는가 하는 점이 제기되고 있다.⁸⁾ 이 논문에서는 우주의 상업화에 관한 우주법과 우주자원 채굴에 관한 국내법, 그리고 미국 NASA의 아르테미스 프로그램(Artemis Project)⁹⁾에 참여하는 여러 세계 정부 간의 구속력 없는 다자간 협정인 아르테미스 약정(Artemis

Accords)이 어떠한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는가 살펴볼 것이다.

II. 우주의 상업화에 관한 우주법

1. 우주의 상업화 관련 우주법

민간 기업가들은 우주 공간과 그 자원의 법적 소유권, 재산권, 영토 소유라는 개념에 많은 열망을 표명했지만, 이러한 발전의 일부 측면은 우주법의 내용 및 정신과 뚜렷한 대조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다.¹⁰⁾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우주 공간 참여에

지원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 미지수이지만 헬륨-3 활용하기 위한 노력 덕분에 우주산업은 물론 로봇, 사물 인식, 자율주행 등 다양한 산업 분야가 발전하고 있다(달 표면의 헬륨-3가 인류를 구원할 수 있을까, *중앙일보*, 2023.06.15.).

7) 우주법은 ‘국제우주법’(international space law)과 ‘국내우주법’(national space law)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주법이라 함은 국제우주법을 지칭한다. 그러나 장래에는 점차 우주법에 관한 국내법규가 발달할수록 국제우주법과 국내우주법의 구별이 요구될 것이다. 현재 미국에서 우주의 사영화(privatization)와 상업화(commercialization)에 관련한 국내법규가 활발하게 제정되고 있으며, 그밖에 영국, 한국, 일본, 러시아, 프랑스, 브라질, 남아공화국, 필리핀, 우크라이나 등 여러 국가에서도 국내우주법규가 발달하고 있다. 국내우주법에 관하여 “National Space Law”(The United Nations Office for Outer Space Affairs, UNOOSA) 참조, available at <https://www.unoosa.org/oosa/en/ourwork/spacelaw/nationalspacelaw/index.html>(last visited on Feb. 12, 2024).

8) Eng Teong See, Commercialization of Space Activities— The Laws and Implications, 82 *Journal of Air Law and Commerce*, Issue 1, 2017, pp. 145-146.

9)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이란 2021년 5월 27일부터 미국이 50년 만에 인류를 다시 달로 보내는 프로젝트로 기존의 국가 간 기술개발 프로젝트가 아니라 민간기업이 참여하는 미국 NASA 주도의 유인달탐사 프로젝트이다. 이 프로그램은 2025년까지 인간을 달로 보내려는 미국 주도의 노력으로, 화성(Mars)과 그 이외의 우주 탐사를 확대한다는 궁극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다.

10) 소련은 “달이나 다른 천체에서의 인간 활동은 국가 전유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했다(See Pravda, November 18, 1959 and United Nations, September 22, 1960, Official Records, p. 48 para. 58). 그리고 미국의 존슨 대통령은 “우리는 우주에 대한 국가 주권 개념을 거부한다. 달은 물론 어떤 행성도 단일 국가의 깃발을 휘날릴 수 없다.” 또한 “현재 인류가 달성할 수 있는 목표는 전리품으로 나누어지기에는 너무 크고, 경쟁 국가 간의 맹목적인 경쟁에서 세상이 노력을 낭비하기에는 너무 크다”라고 언급하였다(Legal Sub-committee, October 20, 1966, A/AC.105/C.2/SR.63).

대한 두 가지 법적 기준, 즉 ‘우주법의 마그나 카르타’(Magna Carter of Space Law)로 불리는 1967년 우주조약(달과 기타 천체를 포함한 외기권의 탐색과 이용에 있어서의 국가 활동을 규율하는 원칙에 관한 조약, Treaty on Principles Governing the Activities of States in the Exploration and Use of Outer Space, including the Moon and Other Celestial Bodies, 이하 ‘OST’)¹¹⁾ 제1조에 명시된 ‘인류의 영역’(province of mankind)이라는 공식¹²⁾과 달을 포함한 태양계의 천체에 적용될 1979년 달협정(달과 기타 천체의 국가 활동을 관리하는 협정, Agreement Governing the Activities of States on the Moon and Other Celestial Bodies, 이하 ‘MA’)¹³⁾ 제11조 1항에 명시된 ‘인류의 공

동유산’(common heritage of mankind, 이하 ‘CHM’)¹³⁾ 원칙에 관한 것이다.

이에 관하여 일부 학자들은 인류의 영역 공식과 CHM 원칙은 모두 ‘일반적인 목표에 대한 진술’(statements of general goals)일 뿐이며, 단순한 도덕적, 철학적 의무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특히 OST 제2조¹⁴⁾ 상의 ‘비전유원칙’(principle of non-appropriation)이 국가들의 우주활동을 크게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의 견해에 따르면, OST 제1조의 ‘사용’(use)이라는 용어는 최소한 제한된 수준의 자원 사용이 허용되며,¹⁵⁾ 조약법과 우주에서의 국가 관행 모두 국제법에 따라, 우주활동의 사적 참여가 허용되고 있다는 것이

11) 18 UST 2410, 610, U.N.T.S. 205; 1967년 발효된 동 조약은 2024년 1월 현재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국을 포함하여 114개국이 당사국이다; OST에 관하여 김한택, 우주조약의 국제법적 의미에 관한 연구, *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제28권 2호, 2013, pp. 223-258 참조.

12) <제1조>

달과 기타 천체를 포함한 외기권의 탐색과 이용은 그들의 경제적 또는 과학적 발달의 정도에 관계없이 모든 국가의 이익을 위하여 수행되어야 하며 모든 인류의 활동범위이어야 한다. 달과 기타 천체를 포함한 외기권은 종류의 차별 없이 평등의 원칙에 의하여 국제법에 따라 모든 국가가 자유로이 탐색하고 이용하며 천체의 모든 영역에 대한 출입을 개방한다. 달과 기타 천체를 포함한 외기권에 있어서의 과학적 조사의 자유가 있으며 국가는 이러한 조사에 있어서 국제적인 협조를 용이하게 하고 장려한다.

13) G.A. Res. 34/68, U.N. GAOR, 34th Sess. Supp. No. 46 at 77, U.N. Doc. A/34/664, 1979.; See also Sylvia Maureen Williams, ‘The Law of Outer Space and Natural Resources’, 36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Law Quarterly*, 1987, p. 109; R. V. Dekanozov, “The Common Heritage of Mankind in the 1979 Agreement Governing the Activities of States on the Moon and Other Celestial Bodies,” *Proceedings of Twenty Fourth Colloquium on the Law of Outer Space*, 1981, p. 186.

14) <제2조>

달과 기타 천체를 포함한 외기권은 주권의 주장에 의하여 또는 이용과 점유에 의하여 또는 기타 모든 수단에 의한 국가 전용(專用)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15) Gbenga Oduntan, Aspects of the International Legal Regime concerning Privatization and Commercialization of Space Activities, 17 *Georgetown Journal of International Affairs*, no. 1, Winter/Spring, 2016, p. 80.

다.¹⁶⁾ 최근 선진국은 물론 개발도상국에서도 국가의 통제 하에서 자국 기업의 우주 활동을 독려하는 규정들을 마련하고 있는 추세인데, 심지어는 공산국가인 중국과 같은 명령경제(command economies) 체제에서조차도 우주 공간에서의 상업적 활동에 관하여 많은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¹⁷⁾

현재 민간기업들이 우주 공간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주요 영역은 아래와 같이 5가지이다.

- (a) 위성 기술 및 통신을 활용하여 우주에서 지구 기반 고객(earth-based customers) (개인이든 정부이든)에게 서비스를 제공.
- (b) 소행성이나 다른 행성의 광물자원과 같이 잠재적으로 유한한 자원의 추출.
- (c) 태양 에너지 또는 기타 파동 에너지 활용과 같은 무한한 성격의 자원 추출.
- (d) 우주 관광 또는 과학 교육 목적으로

우주 경험을 상업화하는 행위.

- (e) 우주 제품 및 응용 분야의 제조, 서비스, 연구 및 개발.¹⁸⁾

이러한 우주 활동의 상업화에 관한 내용들은 아래와 같이 우주법 상 조약인 경성법(hard law)과 선언, 결의 및 원칙 등 연성법(soft law)에 내포되어 있다. 경성법으로는,

- (a) 1963년 대기권, 외기권 우주 및 수중에서의 핵무기 실험을 금지하는 조약(The Treaty Banning Nuclear Weapon Tests in the Atmosphere, in Outer Space and Under Water 1963), 핵실험 금지 조약으로도 알려져 있다.¹⁹⁾
- (b) 우주조약 (OST, 1967).
- (c) 우주비행사의 구조 및 송환 및 우주 공간에 발사한 물체의 반환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the Rescue of Astronauts, the Return of Astronauts and the Return of Objects Launched

16) 예를 들어, 민간 위성 기술의 우주 참여는 신흥 글로벌 정보 인프라의 일부로 1970년대 이후 거의 아무런 문제없이 이루어졌으며, 유럽연합(EU), 국제전기통신연합(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s Union) 등 초국가적 기구에서는 이러한 발전에 긍정적인 관심과 지지를 보내왔다(Hamid Mowlana, *Global Information and World Communication: New Frontiers in International Relations*, London: Sage, 2005, pp. 14, 81, 109, 170).

17) 최근 우주산업에 대한 민간 투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2009년부터 2021년 2분기까지 전 세계 1553개 우주 기업에 투자된 금액이 총 1998억 달러에 달하였다. 2021년 기준 미국의 투자가 절반 정도이고, 중국이 25%를 차지할 정도로 양국 간 경쟁이 치열하다. 중국은 국가 정책적으로 우주산업을 육성해오고 있는데, 2015년이 본격적인 상업화에 전환점이 되었다. 바로 그해부터 중국 정부는 민영기업과 사회자원이 항공 우주 분야로 진출할 수 있게 허락했는데, 정부 주도에서 상업화로 전환하는 중요한 발걸음을 내디딘 것이다(‘미국 넘볼 태세’...중국 우주산업, 초고속 발전 이유는?[김광수의 中心잡기], *서울경제*, 2022.09.27.).

18) Gbenga Oduntan, *op. cit.*, p. 81.

19) 480 UNTS (1963).

- into Outer Space) (1968), ‘구조 협정’이라고도 한다.²⁰⁾
- (d) 우주물체로 인한 손해에 대한 국제 책임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International Liability for Damage caused by space Objects) (1972), ‘책임협약’이라고도 한다.²¹⁾
- (e) 우주로 발사된 물체의 등록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Registration of Objects Launched into Outer Space) (1975), ‘등록협약’이라고도 한다.²²⁾
- (f) 달협정 (MA, 1979) 등이 있고, 연성법으로는,
- (g) 우주탐사 및 이용에 관한 국가의 활동을 규율하는 법적 원칙 선언 (Declaration of Legal Principles Governing the Activities of States in the Exploration and Use of Outer Space, 일명 ‘우주법선언’),²³⁾
- (h) 국제 직접 TV방영을 위한 국가들의 인공위성 이용을 규율하는 원칙 (Principles Governing the Use by States of Artificial Earth Satellites for International Direct Television Broadcasting) (1982),²⁴⁾
- (i) 우주로부터 지구의 원격탐사에 관한 원칙(Principles Relating to Remote Sensing of the Earth from Space) (1986),²⁵⁾
- (i) 우주에서의 원자력 사용과 관련된 원칙(The Principles Relevant to the Use of Nuclear Power in Outer Space) (1992),²⁶⁾
- (k) 개발도상국의 필요를 특히 고려하여 모든 국가의 이익을 위한 우주 탐사 및 이용에 관한 국제협력 선언

20) U.K.T.S. 56 (1969), Cmnd. 3997; 1968년 발효된 동 조약은 2024년 1월 현재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국을 포함하여 98개국이 당사국이다.

21) U.K.T.S. 16 (1974), Cmnd. 5551; 961 U.N.T.S. 187; 10 ILM. 965. 1973년 발효된 동 조약은 2024년 1월 현재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국을 포함하여 98개국이 당사국이다.

22) UNTS 187; 14 ILM 43; UKTS 70 (1978); 1976년 발효된 동 조약은 2024년 1월 현재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국을 포함한 72개국이 당사국이다.

23) General Assembly Resolution 1962(XVIII), 13 December 1963; 우주법 선언의 원칙들의 대부분 조항들에 대하여 국가들로부터 이의제기가 없었기 때문에 국제관습법화 되었다고 할 수 있다. ICJ 판사였던 Manfred Lachs도 1963년 우주법 선언은 단순한 권고사항이 아니라 법으로 인정된 문서라고 주장한 바 있다(Manfred Lachs, *The Law of Outer Space: An Experience in Contemporary Law Making*, Sijthoff, 1972, p. 138).

24) UNGA Resolution 37/92, 10 December 1982.

25) UNGA Resolution 41/65, 3 December 1986.

26) 85th Plenary Meeting, 14 December 1992.

(Declaration on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the Exploration and Use of Outer Space for the Benefit and in the Interest of all States, Taking into Particular Account the Needs of Developing Countries) (1996),²⁷⁾

- (l) “발사국” 개념의 적용(Application of the concept of the “launching State”),²⁸⁾
- (m) 우주물체 등록에 있어 국가 및 정부 간 국제기구의 관행 강화에 관한 권고 사항 (Recommendations on enhancing the practice of States and international 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s in registering space objects),²⁹⁾
- (n) 우주쓰레기 경감 가이드라인(Space Debris Mitigation Guidelines),³⁰⁾
- (o) 우주의 평화적 탐사 및 이용과 관련된 국내입법에 대한 권고 사항 (Recommendations on national legis-

lation relevant to the peaceful exploration and use of outer space)³¹⁾

- (p) 우주 공간 활동의 장기적 지속 가능성에 대한 지침(Guidelines for the Long-term Sustainability of Outer Space Activities)³²⁾ 등이 있다.³³⁾

2. 미국 법원의 판결

우주의 상업화와 관련하여 2004년 미국 네바다주 연방법원(U.S. District Court for the District of Nevada)은 “Nemitz v. United States 사건”³⁴⁾에서 1967년 OST는 비전유 원칙을 내포하고 있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Gregory Nemitz는 “Orbital Development”를 소유하고 있다고 주장한 사람인데, ‘Eros 433’이라고 부르는 소행성을 웹사이트를 통하여 2000년 3월 3일에 Archimedes Institute에 등록한 바 있다. NASA가 동 소

27) A/RES/51/122, 11 June 1996.

28) A/RES/59/115, 10 December 2004.

29) A/RES/62/101, 17 December 2007.

30) A/RES/62/217, 21 December 2007.

31) A/RES/68/74, 16 December 2013.

32) A/AC.105/2018/CRP.20, 27 June 2018.

33) 국제환경법에서도 연성법의 역할이 중요한데, 1972년 스톡홀름 선언(Stockholm Declaration), 1982년 나이로비 선언(Nairobi Declaration), 1982년 세계자연헌장(World Charter for Nature), 1992년 환경과 개발에 관한 리우 선언(Rio Declaration), 2002년 요하네스버그 선언(Johannesburg Declaration) 등이 여기에 속한다. 동 연성법들에 관하여 Paolo Galizzi, From Stockholm to New York, via Rio and Johannesburg: Has the Environment Lost its Way on the Global Agenda?, 29 *Fordham International Law Journal*, Issue 5, 2005, pp. 952-1008 참조.

34) No. CV-N030599, 2004 WL 3167042, at *1(D.Nev.Apr.26, 2004).

행성에서 탐사를 하려고 하자, Nemitz는 사용료 20달러를 요구했다. 그러나 NASA가 개인이 소행성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법에도 없는 사항이라고 거부하자, Nemitz가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다. 법원은 OST의 어느 문구도 Archimedes Institute나 Nemitz에게 소행성에 대한 소유권을 허용하지는 않는다고 결정하였다.³⁵⁾ 그러나 이 판결은 미국이 1984년 “상업우주발사법”(Commercial Space Launch Act of 1984)³⁶⁾이후 계속해서 주장해온 우주의 상업적 이용을 배척하는 판결은 아니라는 점에 주목해야 하는데, Nemitz의 경우 웹사이트를 통해 등록만 했을 뿐, 실제로 소행성에 접근하여 소유할 수 없었다는 것이 판결 이유였기 때문이다.³⁷⁾ Nemitz 사건은 터무니없는 사례로 보이기도 하지만, OST 제2조 상 개인이 과

연 비전유원칙에서 배제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제기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³⁸⁾

III. 우주자원채굴에 관한 국내법과 아르테미스 약정

1. 우주자원채굴에 관한 국내법

국제법상 우주자원채굴에 관한 합법성은 인정되는가? 천체를 포함한 우주 공간의 탐사와 이용에 관해, OST는 우주 자원의 이용에 관해서는 침묵하는 것 같다.³⁹⁾ 그리고 달협정(MA) 제6조 (2)항와 11조도 과학적 조사뿐만 아니라 활용 및 이용에 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사실 이 두 조항은 민간주도, 투자 또는 이익추구에 반하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 있다.⁴⁰⁾ 그럼에도 불구하고 MA는 미국, 러

35) Nemitz, 2004 WL 3167042 at *2; Blake Gilson, Defending Your Client's Property Rights in Space: A Practical Guide for the Lunar Litigator, 80 *Fordham Law Review*, 2011, p. 1391; Bryon C. Brittingham, Does the World Really Need New Space Law?, 12 *Oregon Review of International Law*, 2010, p. 44.

36) Available at <https://www.govinfo.gov/content/pkg/STATUTE-98/pdf/STATUTE-98-Pg3055.pdf>(last visited on Jan. 8, 2024).

37) Gilson Blake, Defending Your Client's Property Rights in Space: A Practical Guide for the Lunar Litigator, 80 *Fordham Law Review*, 2011, p. 1399; Han Taek Kim, Fundamental Principles of Space Resources Exploitation: A Recent Exploitation of International and Municipal Law, 11 *Journal of East Asia and International Law*, Spring, 2018, pp. 44-45; 김한택, 국제법상 우주자원개발원칙, *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제33권 제2호, 2018, p. 46.

38) P. J. Blount & C. J. Robinson, One small step: the impact of the US Commercial Space Launch Competitiveness Act of 2015 on the exploitation of resources in outer space. 18 *North Carolina Journal of Law & Technology*, 2016, p. 166.

39) Eng Teong See, Commercialization of Space Activities-The Laws and Implications, 82 *Journal of Air Law and Commerce*, Issue 1, 2017, p. 157.

시아, 중국 및 기타 주요 우주개발국가로부터 서명은 물론, 비준조차 얻지 못했다.⁴¹⁾

OST는 국가 또는 비국가 행위자의 활동을 구별하지 않고 우주에서의 국가 활동에 관하여 국가에게만 국제적 책임을 부과하고 있는데,⁴²⁾ OST의 준비문서(travaux préparatoires)도 그러한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우주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위원회(Committee on the Peaceful Uses of Outer Space, 이하 ‘COPUOS’)가 설립된 이후 소련은 우주법 틀 내에 민간기업이 들어갈 여지가 없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미국

은 사실 법적으로 민간기업의 참여를 배제하고 싶지 않았다.⁴³⁾ 소련은 처음에는 이러한 민간 활동을 위해 우주 공간을 개방하려는 미국의 입장에 반대했지만, 궁극적으로는 민간기업이 해당 국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조건 하에 우주 탐사 및 사용에 대한 민간기업의 참여 가능성을 인정하였다.⁴⁴⁾ OST 제3조는 당사국이 우주의 탐색과 이용에 있어서의 활동을 국제연합헌장을 포함한 국제법에 따라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를 위하여 그리고 국제적 협조와 이해를 증진하기 위하여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⁴⁵⁾ OST 제6조⁴⁶⁾는 비

40) Ram S. Jakhu, Legal Issues Relating to the Global Public Interest in Outer Space, 32 *Journal of Space Law*, 2006, pp. 103-104.

41) 2024년 1월 현재 달협정 가입국은 아르메니아,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칠레, 카자흐스탄, 쿠웨이트, 레바논, 멕시코, 모로코, 네덜란드, 파키스탄, 페루, 필리핀, 사우디아라비아, 터키, 우루과이, 베네수엘라 등 18개국이고, 아직 비준하지 않은 서명국으로는 프랑스, 인도, 과테말라, 루마니아 등인데, 주요우주개발국인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인도가 동참하지 않았다. 우주개발국가 중 호주는 달협정을 비준한 유일한 국가이고, 프랑스와 인도는 서명은 했지만, 비준하지 않았다.

42) Jakhu, *op. cit.*, p. 44

43) F. G. von der Dunk, The Origins of Authorisation: Article VI of the Outer Space Treaty and International Space Law in *National Space Legislation in Europe: Issues of Authorisation of Private Space Activities in the Light of Developments in European Space Cooperation*, Studies in Space Law, volume 6 (Frans G. von der Dunk, editor), Martinus Nijhoff Publishers, 2011, p. 4.

44) Bin Cheng, Article VI of the 1967 Space Treaty Revisited: ‘International Responsibility,’ ‘National Activities,’ and ‘The Appropriate State’, 26 *Journal of Space Law*, 1998, pp. 7, 14.

45) See Bin Cheng, The Commercial Development of Space: The Need for New Treaties, 19 *Journal of Space Law*, 1991, p. 21.

46) <제6조>

본 조약의 당사국은 달과 기타 천체를 포함한 외기권에 있어서 그 활동을 정부기관이 행한 경우나 비정부 주체가 행한 경우를 막론하고, 국가활동에 관하여 그리고 본 조약에서 규정한 조항에 따라서 국가활동을 수행할 것을 보증함에 관하여 국제적 책임을 져야 한다. 달과 기타 천체를 포함한 외기권에 있어서의 비정부 주체의 활동은 본 조약의 관계 당사국에 의한 인증과 계속적인 감독을 요한다. 달과 기타 천체를 포함한 외기권에 있어서 국제기구가 활동을 행한 경우에는, 본 조약에 의한 책임은 동 국제기구와 이

정부 기관의 우주활동이 정부의 우주활동에 동화되는 결과로서 두 반대 입장 사이의 절충안으로 나타난 것이다.⁴⁷⁾

우주비행사가 처음으로 달에 착륙한 지 50여 년이 흘렀는데, 최근 달과 달자원에 대한 관심이 다시 불붙었다.⁴⁸⁾ 2015년 미국의 “상업 우주 발사 경쟁력법”(Commercial Space Launch Competitiveness Act, 이하 ‘CSLCA’)⁴⁹⁾의 제4편과 2020년 4월 6일 자 “우주 자원의 회복 및 사용을 위한 국제 지원 장려에 관한 행정명령”(Executive Order of April 6, 2020, on Encouraging International Assistance for the Recovery and Use of Space Resources)⁵⁰⁾은 미국 기업이 국제법을 위반하지 않고 우주 자원을 “소

유, 운송, 사용 및 판매”할 자격이 있음을 규정하여 우주에서 자원을 추출할 권리를 확인하고 있다. 소위 ‘소행성법’(Asteroids Act)으로 불리는 CSLCA는 미국이 천체에 대한 주권 또는 배타적 권리 및 관할권을 주장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면서,⁵¹⁾ 민간 우주 기업에게 달과 소행성을 포함하여 우주에서 추출한 자원을 소유하고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CSLCA는 소행성 및 기타 천체에서 추출한 자원에 대한 재산권을 민간 기업에게 명시적으로 부여한 최초의 법문서라고 할 수 있다. 러시아는 CSLCA를 “국제법 질서를 전면적으로 무시”(total disrespect for international law order)했다고 비판하였다.⁵²⁾

기구에 가입하고 있는 본 조약의 당사국들이 공동으로 부담한다.

47) Bin Cheng, *Studies in International Space Law*, Oxford University Press (1997), p. 237.

48) 1969년 7월 20일, 아폴로 11호의 우주비행사 닐 암스트롱(Neil Armstrong)이 달 착륙선 이글(Eagle)호에서 내려 달 표면에 인류 최초로 발을 내딛었다. 1960년대부터 1970년대 초까지 진행된 아폴로 계획에서 달에 다녀온 우주비행사는 총 24명이고, 그중 12명이 달 표면을 걸었다. 사실상 미국의 승리로 끝난 미국과 소련의 ‘우주 경쟁’은 1972년의 아폴로 17호 미션으로 그 대미(大尾)를 장식했다(아르테미스 프로그램, 아폴로 달탐사의 계보를 잇다, *INDO PACIFIC DEFENSE FORUM*, 2023.07.19.).

49) CSLCA의 제정과정과 내용에 관하여 김영주, 우주 자원의 상업적 이용에 관한 법적 문제-미국의 2015년 ‘우주 자원의 탐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구조와 쟁점-, *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제32권 1호, 2017, pp. 419-477; 신흥균, 미국 국내법령상 우주자원 소유권의 국제법상 의의, *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제33권 제2호, 2018, pp. 419-442; 우주자원의 법적 성격에 관하여 정영진, 국제법상 우주자원의 법적 성격과 관리제도, *국제법학회논총*, 제62권 제4호(통권 제147호), 2017, pp. 151-164 참조.

50) Encouraging International Support for the Recovery and Use of Space Resources, Federal Register, available at <https://www.federalregister.gov/documents/2020/04/10/2020-07800/encouraging-international-support-for-the-recovery-and-use-of-space-resources>(last visited on June 6, 2023).

51) 51 U.S.C.A. § 51303; See Han Taek Kim, The Non-Appropriation Principle and *Corpus Juris Spatialis*, 35 *The Korean Journal of Air & Space Law*, no. 1, 2020, pp. 192-194.

52) Philip de Man, The Exploitation of Asteroids and The Non-Appropriation Principle: Reflections on the nature of property rights in light of the US Space Resource Act of 2015, 40 *Journal of Space Law*, 2015-2016, p. 2.

한편 2017년 7월 20일 룩셈부르크도 미국의 CSLCA를 모델로 한 “우주 자원의 탐사 및 이용에 관한 법률”(Law on the Exploration and Use of Space Resources)⁵³⁾을 통과시켰고, UAE(United Arab Emirates, 아랍에미리트)도 “국가우주법”(National Space Law)을 제정하였다. 이 법의 원래 명칭은 “우주 부문 규제에 관한 연방법 제12호”(Federal Law No. 12 on the Regulation of the Space Sector)인데, 2020년 12월에 발효되어 UAE의 우주 관련 활동에 대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제공하고 있다.⁵⁴⁾ 일본도 2021년 6월 23일에 관보에 일본의 새로운 우주 자원 탐사, 개발 관련 사업 활동 진흥법(2021년 법률 제83호)(일명 “우주자원법”)을 공포하였다.⁵⁵⁾ 미국의 CSLCA, 룩셈부르크의 우주자원법, UAE의 국가우주법, 일본의 우주자원법은 모두 달과 천체를 포함한 우주 공간의 법적 지위에 관한

한 국제법상 공해(公海, high seas)의 법적 지위와 유사한 국제공역(res extra commercium)⁵⁶⁾이론에 근거하고 있다. 영국 런던대(UCL) 빈첵(Bin Cheng) 교수는 1967년 우주조약(OST)은 동 조약 이전의 국제관습법 상 우주공간을 *res extra commercium*으로, 그리고 천체를 무주지(res nullius)로 간주되었던 입장을 우주와 천체 전부를 *res extra commercium*으로 만드는 데에 기여하였다고 하였다.⁵⁷⁾ *Res extra commercium*은 국제법상의 공해와 유사하여 각 국가가 공해를 독점적으로 소유할 수는 없지만, 동 지역의 자원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우주 공간은 국가에 종속되거나 편입되지 않고 국가 영토 너머에 존재하며 모든 국가가 탐험할 수 있는 곳으로, 마치 각국의 어선들이 바다를 점유하지 않고 물고기를 잡아서 팔 수 있도록 허용된 공해와 유사하다고 보는 것

53) Loi du 20 juillet 2017 sur l'exploration et l'utilisation des ressources de l'espace, available at <http://legilux.public.lu/eli/etat/leg/loi/2017/07/20/a674/jo> (last visited on Apr. 24, 2023)

54) Sarwat Nasir, UAE's national space law comes into effect, Feb 24, 2020, available at <https://www.thenationalnews.com/uae/science/uae-s-national-space-law-comes-into-effect-1.983817> (last visited on Apr. 25, 2023).

55) Japan: Space Resources Act Enacted, available at <https://www.loc.gov/item/global-legal-monitor/2021-09-15/japan-space-resources-act-enacted/> (last visited on Apr. 25, 2023); 일본우주자원법에 관하여 김영주, 2021년 일본 우주자원법의 입법 구조와 적용 논점, 사법, vol.1, no.64, 통권 64호, 2023, pp. 886-926 참조.

56) 학자에 따라서는 *res extra commercium* (不融通物)을 *res communis omnium* (公共物)으로 보는 견해도 있는데, 이는 *res nullius* (無主地)와는 달리 (전체) 공동체의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공해, 남극 대륙 또는 천체와 같이 어떤 국가나 국가 그룹의 점유나 주권의 적용을 받지 않는 모든 인류의 공공물로 보고 있다; Devanshu Ganatra & Neil Modip, Asteroid Mining and Its Legal Implications, 40 *Journal of Space Law*, 2015-2016, p. 93.

57) Bin Cheng, The 1967 Space Treaty, 95 *Journal du Droit International*, 1968, p. 564.

이다.⁵⁸⁾ 이러한 *res extra commercium* 선언은 15세기 이후 유럽 국가들이 *res nullius*에 대하여 적용했던 ‘선점의 원리’를 배제하고 있으며,⁵⁹⁾ OST에 규정된 비전유 원칙은 모든 국가를 구속하는 국제관습법(customary international law)과 강행규범(*jus cogens*)으로 발전한 조항이라고 할 수 있다.⁶⁰⁾ 따라서 동 원칙은 ICJ 규정 제38조 1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법으로 인정된 일반 관행(*general practice accepted as law*)에서 비롯된 규칙으로, 각국의 묵시적인 합의에 의하여 구속력이 있다고 믿어지는 국제관습법과 전체 국가로 구성되는 국제공동체에 의해 승인된 보편국제법으로서 이탈이 허용되지 않는 상위의 절대규범인 강행규범이라고 할 수 있다.

2015년 CSLCA는 1967년 미국이 OST에 가입하면서, 린든 B. 존슨 대통령이 조약 비준 동의를 위해 상원에서 미국은 우주에 대한 소유자를 인정하지 않겠다고 한 발

언⁶¹⁾에 배치된다. 사실 존슨 대통령의 이 발언은 내부 성명(*internal statement*)이며 국제법에 따라 일방적으로 철회될 수 있는 국가의 일방적 선언(*unilateral declaration*)인데, 미국은 2015년 CSLCA로 인해 존슨 대통령의 일방적 선언을 철회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⁶²⁾

국가가 민간기업에게 우주에서 자원채굴을 허용하면 국가 간 자원경쟁은 물론 그로 인한 충돌을 예상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당사국이 탐사 및 이용을 포함하여 우주 공간에서 활동할 때 다른 모든 당사국의 해당 이익을 적절히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하는 OST 제9조가 중요한데, 동조의 마지막 문장은 당사국이 “어떤 활동이… 달 및 기타 천체를 포함한 외기권에서 다른 당사국이 계획한 활동이 달 및 기타 천체를 포함한 우주의 평화적 탐사 및 이용 활동에 잠재적으로 유해한 간섭을 일으킬 수 있는 경우, 해당 활동에 관해 협의를 요

58) P. P. C. Haanappel, *The Law and Policy of Air Space and Outer Space-A Comparative Approach*, Kluwer Law International, 2003, pp. 11-12.

59) Heidi Keefe, Making the Final Frontier Feasible: A Critical Look at the Current Body of Outer Space Law, 7 *Santa Clara Computer & High Technology Law Journal*, 1995, p. 358.

60) OST의 비전유원칙과 국제관습법의 관계에 관하여 Abigail D. Pershing, Interpreting the Outer Space Treaty's Non-Appropriation Principle: Customary International Law from 1967 to Today, 44 *The Yale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2019, pp. 149-178 참조.

61) “오늘날 우주 공간은 무료입니다. ---어떤 나라도 그곳에 양보를 하지 않습니다. 이대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미국은] 우주 공간의 소유자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Treaty on Outer Space: Hearing before the Committee on Foreign Relations, 90th Cong. 1967, pp. 105-106.

62) Eng Teong See, *op. cit.*, p. 160.

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⁶³⁾

우주 분쟁과 관련하여 세계국제법협회(ILA)는 1994년 부에노스아이레스와 1996년 헬싱키 회의를 거쳐 1998년 타이페이(Taipei) 회의에서 “우주법 분쟁해결에 관한 협약안”(Draft Convention on the Settlement of Space Law Dispute)을 채택한 바 있는데,⁶⁴⁾ 이 협약안은 조약으로 발전하지 못했으므로 법적 구속력은 없다.⁶⁵⁾ 한편 분쟁 당사자들은 2011년 상설중재재판소(Permanent Court of Justice)가 채택한 “우주 활동과 관련된 분쟁의 중재를 위한 선택적 규칙”(Permanent Court of Arbitration Optional Rules for Arbitration of Disputes Relating to Outer Space Activities)⁶⁶⁾을 활용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도 있다.

CSLCA는 OST 제7조에 규정된 책임 문제와 관련하여 중요한데, 제7조는 달과 기타 천체를 포함한 우주에 물체를 발사하거나 또는 그 물체를 발사하여 궤도에 진입케 한 본 조약의 각 당사국과 그 영역 또는 시설로부터 물체를 발사한 각 당사국은 지상, 공간 또는 달과 기타 천체를 포함한 우주에 있는 이러한 물체 또는 동 물체의 구성부분에 의하여 본 조약의 다른 당사국 또는 그 자연인 또는 법인에게 가한 손해에 대하여 국제적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1972년 책임협약은 이 조항을 별도의 조약으로 발전시킨 것이다. 따라서 미국은 OST와 책임협약의 당사국이므로 책임문제에 관한 한 CSLCA는 두 조약의 범위 내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⁶⁷⁾

63) 예를 들어, 중국은 희토류 원소와 에너지가 풍부한 비방사성 동위원소인 헬륨-3을 채굴하기 위해 영구적인 달 기지를 건설할 계획을 발표한 것으로 알려졌다(Mary-Ann Russon, China Wants to Visit Mars by 2020 and Beat NASA to Set Up the First Manned Moon Base, INT'L BUS. TIMES (Apr. 22, 2016), available at <https://www.ibtimes.co.uk/china-wants-visit-mars-by-2020-beat-nasa-set-first-manned-moon-base-1556304> (last visited Dec. 26, 2023); Jeremy Beck, China's Helium-3 Program: A Global Game Changer, SPACE SAFETY MAGAZINE. (Mar. 16, 2016), available at <https://www.spacesafetymagazine.com/space-on-earth/everyday-life/china-helium-3-program/> (last visited Dec. 26, 2023).

64) Final Draft of the Revised Convention on the Settlement of Disputes related to Space Activities, ILA, *Report of the 68th Conference Taipei, Taiwan, Republic of China* (1998), pp. 249-267; 이 절차는 아래와 같은 방안 가운데에서 우선순위 없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6조 제1항).

1. 만약 국제우주법재판소(International Tribunal for Space Law)가 설치될 경우의 동 재판소
2. 국제사법재판소(ICJ)
3. 동 협약 규정에 의거하여 설치되는 중재재판소

65) 우주법상 분쟁해결에 관하여 김한택, 국제우주법상 분쟁해결에 관한 연구, *안암법학* 제41호, 2013, pp. 219-245 참조.

66) Available at <https://docs.pca-cpa.org/2016/01/Permanent-Court-of-Arbitration-Optional-Rules-for-Arbitration-of-Disputes-Relating-to-Outter-Space-Activities.pdf> (last visited on Jan. 12, 2024).

67) Frans G. von der Dunk, Asteroid Mining: International and National Legal Aspects, 26 *Michigan State*

1960년대 말과 1970년대 초에 새로 독립한 개발도상국들은 ‘신국제경제질서’(New International Economic Order) 수립을 추진했는데, 이들은 우주 탐험과 활용에서 파생되는 이익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⁶⁸⁾ 결과적으로, COPUOS 법률소위원회(LSC)에서 우주 자원의 활용과 관련된 논의가 수년 동안 계속되었는데,⁶⁹⁾ 그러나 이에 관한 진전은 거의 없었다. 일부 국가에서는 새로운 조약을 제정하는 것이 시기상조라고 주장했고,⁷⁰⁾ 새로운 조약이 달에만 적용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다른 천체에도 적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⁷¹⁾ 그러나 1979년 달협정(MA)

은 15일 만에 비밀 논의 끝에 체결되었다.⁷²⁾ MA는 투표 없이 UN 총회에서 컨센서스(consensus) 방식으로 통과되었는데, 그렇다면 MA는 국제관습법의 규칙으로 발전하였는가?⁷³⁾ MA 당사국가 수가 매우 적은 것은 국가들이 이 협정을 준수하기를 꺼렸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모든 국가를 구속하는 국제관습법을 형성하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⁷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도 행정명령을 통해서 MA가 국제관습법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언급한 바 있다.⁷⁵⁾ 만일 어느 국가의 민간기업이 광물 채굴업무에 수백만 달러를 투자했는데, 기술은 물론이고 아무것도 기여하지

International Law Review, no.1, 2018. p. 100.

68) See Comm. on the Peaceful Uses of Outer Space, Rep. of the Legal Subcomm. on Its Eighth Session, Annex I, U.N. Doc. A/AC.105/58, at 4-7 (1969).

69) Nirav S., Comprehensive Essay on New International Economic Order (NIEO), PRESERVE ARTICLES, available at <http://www.preservearticles.com/essay/comprehensive-essay-on-new-international-economic-order-nieo/20115> (last visited Jan. 7, 2024).

70) See e.g., Comm. On the Peaceful Uses of Outer Space, Rep. of the Legal Subcomm. on Its Eleventh Session, 187th mtg., A/AC.105/C.2/SR.187, at 3 (May 2, 1972).

71) See e.g., Comm. On the Peaceful Uses of Outer Space, Rep. of the Legal Subcomm. on Its Eleventh Session, 188th mtg., U.N. Doc A/AC.105/C.2/SR.188, at 21 (May 3, 1972)

72) Bin Cheng, *Studies in International Space Law*, op. cit., pp. 361-362; Fengna Xu, Jinyuan Su and Miqdad Mehdi, A Re-Examination of Fundamental Principles of International Space Law at the Dawn of Space Mining, 44 *Journal of Space Law*, no.1, 2020, p. 3.

73) Ricky J. Lee, op. cit., p. 112.

74) Mahulena Hofmann and Federico Bergamasco, Space resources activities from the perspective of sustainability: legal aspects, *Global Sustainability*, 23 January 2020, p. 3; Thomas Gangale, The Legality of Mining Celestial Bodies, 40 *Journal of Space Law*, 2015-2016, p. 190.

75) Executive Order on Encouraging International Support for the Recovery and Use of Space Resources, Issued on April 6, 2020, available at <https://trumpwhitehouse.archives.gov/presidential-actions/executive-order-encouraging-international-support-recovery-use-space-resources/> (last visited on Jan. 11, 2024).

않은 다른 기관이나 국가와 함께 이익을 공유해야 한다면 문제가 될 것이다. 어쨌든 국제사회는 MA 제11조 7항⁷⁶⁾에 명시된 메커니즘을 확립하는 데 실패했다고 볼 수도 있다.⁷⁷⁾

한편 2020년 1월 27일 우주 자원의 활용을 위해 국제법 및 우주 자원 활동 분야의 정부, 업계 및 학계 전문가로 구성된 “헤이그 국제 우주 자원 거버넌스 실무그룹”(Hague International Space Resources Governance Working Group)⁷⁸⁾이 발표한

“우주 자원 활동에 관한 국제 프레임워크 개발을 위한 구성 요소”(Building Blocks for the Development of an International Framework on Space Resource Activities, 이하 ‘Hague Building Blocks’)는 실무그룹의 4년간 작업을 통하여 국제법적 프레임워크 개발에서 고려해야 할 20개 구성 요소⁷⁹⁾를 국제사회에 제시하고 있는데,⁸⁰⁾ 장차 새로운 조약제정 시 참고할 만하다.

76) <MA 제11조 7항>

제정할 개발규칙의 주요한 목적은 다음의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 (a) 달 천연자원의 질서 있고 안전한 개발
- (b) 달 자원의 합리적 경영
- (c) 달 자원의 사용기회의 확장
- (d) 달 자원으로부터 파생하는 이익을 모든 당사국에게 공평하게 분배하되 달의 개발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공헌한 국가의 노력은 물론 개발도상국의 이익과 필요에 대한 특별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

77) Ricky J. Lee, The Jus ad Bellum in Spatialis: The Exact Content and Practical Implications of the Law on the Use of Force in Outer Space, 29 *Journal of Space Law*. 2003, p. 93.

78) 동 실무 그룹은 우주 자원에 대한 거버넌스 프레임워크의 필요성을 평가하고 그러한 프레임워크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6년에 설립되었다. 이를 위해 우주 자원 활동과 관련된 다양한 조항을 포함하고 잠재적으로 미래 거버넌스 프레임워크의 일부를 형성하고 이와 관련하여 국가 및 국제기구에서 고려할 수 있는 일련의 구성 요소(Building Blocks)에 관하여 작업을 했다. 실무그룹 구성원은 우주 자원 활동의 이해관계자이며 컨소시엄(Consortium) 파트너, 업계, 국가, 국제기구, 학계 및 NGO를 대표한다. 실무그룹의 구성원 수는 35명으로 제한되지만, 참관인 수에는 제한이 없었다.

79) 20개 구성 요소는 1. 목적, 2. 주요 용어의 정의, 3. 범위, 4. 원칙, 5. 우주 자원 활동에 대한 국제적 책임, 6. 우주 자원 활동에 사용되는 우주 제작 제품에 대한 관할권 및 통제, 7. 우선권, 8. 자원권, 9. 모든 국가와 인류의 이익에 대한 정당한 고려, 10. 우주 자원 활동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으로 유해한 영향의 회피 및 완화, 11. 우주 자원 활동에 대한 기술 표준, 사전 검토 및 안전 구역, 12. 우주 자원 활동으로 인한 유해 영향 모니터링 및 시정, 13. 우주 자원 활용으로 인한 이익 공유, 14. 정보 등록 및 공유, 15. 조난 시 지원 제공, 16. 우주자원 활동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책임, 18. 제도적 장치, 19. 분쟁 해결, 20. 모니터링 및 검토로 이루어졌다.

80) Rossana Deplano, *op. cit.*, pp. 814-818, available at https://www.universiteitleiden.nl/binaries/content/_sets/rechtsgeleerdheid/instituut-voor-publiekrecht/lucht-en-ruimte-recht/space-resources/final-report-phase-2_the-hague-international-space-resources-governance-working-group.pdf (last visited on Jan. 12, 2024).

2. 아르테미스 약정

미국 NASA의 아르테미스(Artemis) 프로젝트⁸¹⁾는 우주개발과 우주 활용을 위한 혁신적인 신기술과 시스템을 개발하고, 달 탐사를 발판 삼아 화성을 비롯한 심우주 탐사로 도약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아르테미스 약정문의 부제는 “평화로운 목적을 위한 달, 화성, 혜성, 소행성의 민간 탐사 및 이용 협력 원칙”(Principles for Cooperation in the Civil Exploration and Use of the Moon, Mars, Comets, and Asteroids for Peaceful Purposes)이라고 되어 있다. 본 약정은 NASA가 주도하여 기존의 조약체결 관행과는 그 형태가 다른 형태로 체결되었으므로,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 이하 ‘VCLT’) 상 조약이라고 보기는 어렵다.⁸²⁾ 아르테미스 약정 섹션 13(2)에서도 미국 정부는 이 협정의 원본을 보존하고 유엔 사무총장에게 이 협정의 사본을 전달할 것이나, 이것을 유엔의 공식 문서로서 기구의 모든 회원국에게 회람할 목적으로 하는 유엔헌장 제102조⁸³⁾에 따라 등록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아르테미스 약정은 국제법의 맥락에서 구속력이 없는 ‘정치적 약속’(political commitment)이다.⁸⁴⁾

NASA가 아르테미스 약정 웹사이트 첫 페이지에도 “안전하고 평화롭고 번영하는 미래를 위한 원칙”이라는 문구를 넣었고,⁸⁵⁾ 아르테미스 약정의 주요 내용들이 1967년 OST 조항을 따를 것을 추구하고

81) 아르테미스(Aetemis)는 그리스 신화에서 달, 사냥, 야생 동물, 순결의 여신으로 로마 신화에서는 디아나(Diana)와 동일시된다. 제우스(Zeus)와 레토(Leto)의 딸인 그녀는 아폴로(Apollo)와 남매지간이다. 아르테미스 프로젝트는 NASA가 2024년까지 인간을 다시 한 번 달에 보내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우주 프로그램이다. 아르테미스 임무를 위해 NASA는 혁신적인 기술을 사용하여 최초의 여성과 최초의 유색 인종을 착륙시킬 것인데, 이는 아폴로 프로젝트가 백인 남성들만 달에 착륙시켰던 점을 고려한 것이다.

82) 오시진, 국제우주법체계 상 아르테미스 약정의 함의, *국제법평론*, 2021-III(통권 제60호), p. 40.

83) <제102조>

1. 본 헌장이 발효된 후 국제연합 회원국이 체결한 모든 조약 및 국제협정은 가능한 한 조속히 사무국에 등록되고 공표되어야 한다.
2. 본조 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되지 않은 그러한 조약 또는 국제협정의 어떠한 당사자도 국제 연합의 어떤 기관 앞에서도 그 조약 또는 협정을 원용할 수 없다.

84) Elya A. Taichman, The Artemis Accords: Employing Space Diplomacy to De-Escalate a National Security Threat and Promote Space Commercialization, 11 *American University National Security Law Brief*, no. 2, 2021, p. 128.

85) The Artemis Accords available at <https://www.nasa.gov/specials/artemis-accords/index.html> (last visited on 28 Nov. 2021); 아르테미스 약정의 세부내용에 관하여 김한택, 아르테미스 약정의 우주법적 의미에 관한 연구, *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제38권 제1호, 2023, pp. 77-110 참조.

있지만, 아르테미스 약정에 서명하는 국가들은 미국이 주도하는 새로운 우주개발 질서에 동의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사실 아폴로 시대 달 탐사가 전적으로 NASA 중심이었다면 아르테미스 달 탐사는 NASA가 여러 민간기업들과 파트너십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⁸⁶⁾

아르테미스 약정에서 중요한 조항은 우주 활동에서 발생하는 충돌 방지 문제를 다루는 섹션 11이다. 아르테미스 약정의 섹션 11(2)에서 우주 자원의 추출 및 활용이 OST를 준수하고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우주 활동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실행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동 약정 섹션 11(3)과 11(4)는 OST 9조에 명시된 원칙, 즉 조약 당사국은 다른 당사국 및 해당 이익을 고려하여 우주 공간에서 활동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다른 당사국의 활동에 대한 유해한 간섭을 방지할 의무의 원칙을 운영하기 위해 동 약정 섹션 11(5)는 서명국이 서로 ‘활동의 위치 및 성격에 관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제

공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잠재적인 유해한 간섭 및 유해한 간섭을 피하기 위해 동 약정 섹션 11(7)은 ‘안전지대’(safty zone)를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⁸⁷⁾

아르테미스 약정 섹션11에 언급된 안전지대설치는 일종의 혁신이다. 그 이유는 OST에는 안전지대 개념이 언급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아르테미스 약정의 섹션 11이 1969년 VCLT 상 제31조 (3)항 (b)⁸⁸⁾에 따른 후속 관행인지, 즉 이것이 OST의 권위 있는 해석인지 여부에 대한 질문이 있을 수 있다.⁸⁹⁾ 아르테미스 약정은 OST 조문에 세부 사항과 명확성을 추가하여 결국 혁신 요소를 도입하고 있는데, VCLT 제31조 (3)항 (b)에 따른 후속 관행에 대한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아르테미스 약정은 미국이 주도하므로 그러한 후속 관행은 OST의 모든 당사자의 합의를 반영하지 않을 수 있다. 그 이유는 이미 중국과 러시아는 이러한 미국 중심의 연합체의 반대편에 섰기 때문이다. 아르테미스 계획과 달리, 중국과 러

86) 최남미·정서영, 한국의 아르테미스 약정 가입의 의의와 향후 과제, *항공우주산업기술동향* 21권 1호, 2023, p. 43.

87) Rossana Deplano, The Artemis Accords: Evolution or Revolution in International Space Law? 70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Law Quarterly*, 2021, p. 808.

88) <VCLT 제31조>(해석의 일반규칙)

(3) 문맥과 함께 다음의 것이 참작되어야 한다.

(b) 조약의 해석에 관한 당사국의 합의를 확정하는 그 조약 적용에 있어서의 추후의 관행.

89) Rossana Deplano, *op. cit.*, pp. 808-809.

시아는 독자적인 우주개발에 나선 상황인데, 러시아는 아르테미스 약정이 ‘미국 중심적’(US-centric)이라며 참여를 거절하였다. 현재 미국의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의 확장 전략은 중국·러시아와의 치열한 우주 경쟁 속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이는 ‘우주 냉전’을 고착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⁹⁰⁾

아르테미스 약정의 섹션 10(2)는 “우주 자원의 추출은 본질적으로 OST 제2조에 따른 국가전유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우주 자원과 관련된 계약 및 기타 법적 문서는 OST에 따라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이 두 번째 언급은 조약 당사국이 우주에서 활동을 수행하는 민간 행위자를 승인하고 계속 감독하도록 요구하는 OST 제6조와 관련이 있다.⁹¹⁾ 결국 아르테미스 약정에서 우주 자원의 추출 및 활용이 OST를 준수하고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우주 활동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실행되어

야 함을 강조하면서 OST 제2조에 규정된 ‘비전유 원칙’(non-appropriation principle)을 따른다는 것은 앞에서 설명한 국제법상 국제공역(*res extra commercium*) 원칙을 따른다는 것을 의미한다.⁹²⁾ 지난 2020년 10월 미국과 캐나다, 일본, 영국, 이탈리아, 호주, 룩셈부르크 그리고 아랍에미리트(UAE) 등 8개국이 이 약정에 서명한 후 2024년 2월 현재 동 약정 서명국은 대한민국을 포함하여 35개국이나 되었다.⁹³⁾

1979년 MA 이후 지금까지 우주관련조약이 제정되지 못했는데, 그 이유는 과거 미국과 소련이 주도하던 우주시대보다도 최근 우주개발 능력을 갖춘, 그리고 우주에 관심을 갖고 있는 국가들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COPUOS의 회원국 수도 1958년에 18개국으로 출발하여 1977년에 47개국, 2024년 1월 현재 102개국으로 1975년 이후 두 배 이상 증가했다.⁹⁴⁾ 그리고 상업 우주 활동이 급속히 확대되면서 이제는 국가들

90) 우주 新냉전... 확대되는 미국 주도 ‘아르테미스’, 조선일보, 2022.08.16.

91) Rossana Deplano, *op. cit.*, pp. 802-807.

92) *Res extra commercium* (lat. “a thing outside commerce”) literally means something that cannot be the object of commercial trade, e.g. tombs under Roman Law(See Gbenga Oduntan, *Sovereignty and Jurisdiction in the Airspace and Outer Space-Legal Criteria for Spatial Delimitation*, Routledge, 2012, p. 197).

93) 2024년 2월 현재 아르테미스 약정 서명국은 미국을 비롯하여 캐나다, 일본, 영국, 이탈리아, 호주, 룩셈부르크, 아랍에미리트(UAE), 우크라이나, 대한민국, 앙골라, 아르헨티나, 바레인, 브라질, 불가리아, 콜롬비아, 체코, 에콰도르, 프랑스, 독일, 아이슬란드, 인도, 이스라엘, 멕시코, 네덜란드, 뉴질랜드, 나이지리아, 폴란드, 루마니아, 르완다, 사우디아라비아, 싱가포르, 스페인, 벨지움, 그리스 등 35개국이다. *available at* <https://www.state.gov/artemis-accords/>(last visited on Feb. 13, 2024).

94) *Available at* <https://www.unoosa.org/oosa/en/ourwork/copuos/members/evolution.html>(last visited on Jan. 7, 2024).

간 조약제정을 위하여 표결방식이 아닌 컨센서스 방식은 매우 어렵고 불가능한 일이 되었다.⁹⁵⁾ 이런 시점에서 아르테미스 약정의 등장은 국제사회에 커다란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IV. 결론

‘소행성법’(Asteroids Act)으로 불리는 미국의 2015년 상업 우주 발사 경쟁력법(CSLCA)는 민간 우주 회사에게 달과 소행성을 포함하여 우주에서 추출한 자원을 소유하고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또한 CSLCA는 미국이 천체에 대한 주권 및 주권 또는 배타적 권리 또는 관할권을 주장하거나 주장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것은 Bin Cheng 교수의 견해대로 OST 제2조의 비전유원칙을 *res extra commercium*로 해석하여 국가들의 공해상 어업행위와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여 문제의 지역에서 주권을 설정하지 않고 자원에 능력에 따라 채취할 수 있다는 이론을 적용한 것이다. 이러한 모델은 2017년 룩셈부르크의 우주자원법, 2020년 UAE의 국가우주법, 2021년 일본의 우주자원법의 제정으로 이어지고 있다. 더구나 미국은 NASA를 중심으로 하여 평화적 목적의 달·화성·

혜성·소행성 탐사 및 이용에 관해 아르테미스 프로그램 참여국들이 지켜야 할 원칙을 규정한 아르테미스 약정에 참여할 국가들을 모으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OST 제2조의 비전유원칙은 국제관습법으로 정립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인류공동유산(CHM) 원칙은 MA 가입국 간에 적용될 조약법 상 적용될 문제이고 국제관습법상의 적용문제는 아니다. 2024년 1월 현재 OST 가입국은 주요 우주개발국인 미국, 중국, 러시아를 포함하여 114개국인데 반하여, MA 가입국은 이들 국가들이 가입하지 않은 채 18개국에 불과하다. 비록 조약법상 조약은 아니지만, 아르테미스 약정국의 서명국도 짧은 기간에 35개국이나 되었다. 아르테미스 약정국들은 OST를 준수하면서 약정국간에는 ‘안전지대’를 설정하여 충돌을 피하면서 우주자원개발을 함께 하겠다는 생각이다. 그러나 문제는 아르테미스 약정국이 아닌 국가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동 약정에 언급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주자원 때문에 국가 간 충돌이 예견된다.

이 문제를 해결할 가장 좋은 방법은 우주 활동에서 민간 부문의 역할을 구체적으

95) Jack Wright Nelson, The Artemis Accords and the Future of International Space Law, 24 *ASIL Insights*, issue 3, 2020, p. 5.

로 인정하고, 우주에서의 상업 활동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우주관련조약에 대한 보충의정서의 채택이나 새로운 우주조약의 도입을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1979년 달협정(MA) 이후 조약제정이 어려워진 현 시점에서는 우주 공간의 이용과 관련된 모든 측면에 대한 통합되고 구속력 있는 법적 도구의 궁극적인 생성을 위한 잠정적 조치인 연성법(soft law)을 개발하여 국가들의 참여를 독려하는 방법도 좋을 듯하다. 사실 우주법 등 과학기술이 급속히 발전하는 분야에서는 이러한 유형의 연성법은 길고 힘든 조약 체결 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우주 자원 추출을 위한 표준 및 관행을 창조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⁹⁶⁾ 이러한 연성법의 법적 효력에 관련하여서는, 1974년 11월 12일 유엔이 총회 결의안 3232호(XXIX)를 통해서 “국제사법재판소의 역할 검토”(Review of the role of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라는 제목 아래 ‘선언’(declaration)과 ‘결의’(resolution)를 국제법 발전에 반영될 수 있는 방법으로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의해서 고려하도록 권고한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⁹⁷⁾

한편 2021년 유엔 평화적 우주 이용 위원회(COPUOS)의 법률소위원회(Legal Subcommittee, LSC)는 호주, 벨기에, 체코공화국, 핀란드, 독일, 그리스, 폴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스페인의 제안으로 ‘우주 자원의 탐사와 개발, 활용과 같은 제반 활동에 관한 잠재적 법적 모형’(Potential legal models for activities in exploration, exploitation and utilization of space resources)을 위한 작업반(working group)설치를 의제로 채택⁹⁸⁾하여 그 이후 매년 논의를 계속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96) Jennifer Ann Urban, Soft Law: The Key to Security in a Globalized Outer Space, 43 *Transportation Law Journal*, 2016, pp. 47-48; Laura C. Byrd, Soft Law in Space: A Legal Framework for Extraterrestrial Mining, 71 *Emory Law Journal*, Issue 4, 2022, p. 832.

97) Preamble, UNGA Res. 3232(XXIX), November 12, 1974; 김한택, 아르테미스 약정의 우주법적 의미에 관한 연구, 전계논문, p. 102.

98) A/AC.105/C.2/2021/CRP.22.

참 고 문 헌

1. 국내문헌

김영주, 2021년 일본 우주자원법의 입법 구조와 적용 논점, *사법* vol.1, no.64, 통권 64호, 2023.

김영주, 우주 자원의 상업적 이용에 관한 법적 문제-미국의 2015년 ‘우주 자원의 탐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구조와 쟁점-, *항공우주정책 법학회지*, 제32권 1호, 2017.

김한택, 아르테미스 약정의 우주법적 의미에 관한 연구, *항공우주정책 법학회지*, 제38권 제1호, 2023.

김한택, 국제법상 우주자원개발원칙, *항공우주정책 법학회지*, 제33권 제2호, 2018.

김한택, 우주조약의 국제법적 의미에 관한 연구, *항공우주정책 법학회지*, 제28권 2호, 2013.

신홍균, 미국 국내법령상 우주자원 소유권의 국제법상 의의, *항공우주정책 법학회지* 제33권 제2호, 2018.

오시진, 국제우주법체계 상 아르테미스 약정의 함의, *국제법평론*, 2021-III(통권 제60호).

이영진, 상업적 우주활동의 국제법적 규제, *항공우주정책 법학회지*, 제28권 제2호, 2013.

정영진, 국제법상 우주자원의 법적 성격과 관리제도, *국제법학회논총*, 제62권 제4호(통권 제147호), 2017.

최남미·정서영, 한국의 아르테미스 약정 가입의 의의와 향후 과제, *항공우주산업기술동향*, 21권 1호, 2023.

2. 외국문헌

Blount, P. J. & Robinson, C. J, One small step: the impact of the US Commercial Space Launch Competitiveness Act of 2015 on the exploitation of resources in outer space. 18 *North Carolina Journal of Law & Technology*, 2016.

- Byrd Laura C, Soft Law in Space: A Legal Framework for Extraterrestrial Mining, 71 *Emory Law Journal*, Issue 4, 2022.
- Cheng Bin, Article VI of the 1967 Space Treaty Revisited: 'International Responsibility,' 'National Activities,' and 'The Appropriate State', 26 *Journal of Space Law*, 1998.
- Cheng Bin, *Studies in International Space Law*, Oxford University Press, 1997.
- Cheng Bin, The Commercial Development of Space: The Need for New Treaties, 19 *Journal of Space Law*, 1991.
- Cheng Bin, The 1967 Space Treaty, 95 *Journal du Droit International*, 1968.
- Christol Carl, Article 2 of the 1967 Treaty Principles Revisited, 9 *Annals of Air & Space Law*, 1984.
- Dekanozov R. V, The Common Heritage of Mankind in the 1979 Agreement Governing the Activities of States on the Moon and Other Celestial Bodies, *Proceedings of Twenty Fourth Colloquium on the Law of Outer Space*, 1981.
- Dempsey Paul Stephen, National Laws Governing Commercial Space Activities: Legislation, Regulation, & Enforcement, 36 *Northwester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 Business*, no. 1, 2016.
- Deplano Rossana, The Artemis Accords: Evolution or Revolution in International Space Law? 70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Law Quarterly*, 2021.
- von der Dunk, Frans G, Asteroid Mining: International and National Legal Aspects, 26 *Michigan State International Law Review*, no. 1, 2018.
- von der Dunk Frans G (ed.), *National Space Legislation in Europe: Issues of Authorisation of Private Space Activities in the Light of Developments in European Space Cooperation*, Studies in Space Law, volume 6, Martinus Nijhoff Publishers, 2011.
- Galloway Eilene, Agreement Governing the Activities of States on the Moon and Other Celestial Bodies, 5 *Annals of Air & Space Law*, 1980.

- Ganatra Devanshu & Modip Neil, Asteroid Mining and Its Legal Implications, 40 *Journal of Space Law*, 2015-2016.
- Gangale Thomas, The Legality of Mining Celestial Bodies, 40 *Journal of Space Law*, 2015-2016.
- Haanappel P. P. C, *The Law and Policy of Air Space and Outer Space-A Comparative Approach*, Kluwer Law International, 2003.
- Hofmann Mahulena and Bergamasco Federico, Space resources activities from the perspective of sustainability: legal aspects, *Global Sustainability*, 23 January 2020.
- Jakhu Ram S, Legal Issues Relating to the Global Public Interest in Outer Space, 32 *Journal of Space Law*, 2006.
- Keefe Heidi, Making the Final Frontier Feasible: A Critical Look at the Current Body of Outer Space Law, 7 *Santa Clara Computer & High Technology Law Journal*, 1995.
- Kim Han Taek, Fundamental Principles of Space Resources Exploitation: A Recent Exploitation of International and Municipal Law, 11 *Journal of East Asia and International Law*, Spring, 2018.
- Lachs Manfred, *The Law of Outer Space: An Experience in Contemporary Law Making*, Sijthoff, 1972.
- Lee Ricky J, The Jus ad Bellum in Spatialis: The Exact Content and Practical Implications of the Law on the Use of Force in Outer Space, 29 *Journal of Space Law*, 2003.
- de Man Philip, The Exploitation of Asteroids and The Non-Appropriation Principle: Reflections on the nature of property rights in light of the US Space Resource Act of 2015, 40 *Journal of Space Law*, 2015-2016.
- Manson Harold Craig, The Impact of International Outer Space Commerce on the Environment, 26 *Texas International Law Journal*, 1991.
- Mowlana Hamid, *Global Information and World Communication: New Frontiers in*

International Relations, London: Sage, 2005.

Nelson Jack Wright, The Artemis Accords and the Future of International Space Law, 24 *ASIL Insights*, issue 3, 2020.

Oduntan Gbenga, Aspects of the International Legal Regime concerning Privatization and Commercialization of Space Activities, 17 *Georgetown Journal of International Affairs*, no. 1, Winter/Spring, 2016.

Pershing Abigail D, Interpreting the Outer Space Treaty's Non-Appropriation Principle: Customary International Law from 1967 to Today, 44 *The Yale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2019.

Sattler Rosanna, US Commercial Activities aboard the International Space Station, XXVII *Air & Space Law*, no. 2, 2003.

See Eng Teong, Commercialization of Space Activities-The Laws and Implications, 82 *Journal of Air Law and Commerce*, Issue 1, 2017.

Taichman Elya A, The Artemis Accords: Employing Space Diplomacy to De-Escalate a National Security Threat and Promote Space Commercialization, 11 *American University National Security Law Brief*, no. 2, 2021.

van Traa-Engelman H. L, Commercial Utilization of Outer Space: Law and Practice, Martinus Nijhoff Publishers, 1993.

Urban Jennifer Ann, Soft Law: The Key to Security in a Globalized Outer Space, 43 *Transportation Law Journal*, 2016.

Walsh Kevin B, Controversial Issues under Article XI of the Moon Treaty, 6 *Annals of Air & Space Law*, 1981.

Williams Sylvia Maureen, 'The Law of Outer Space and Natural Resources', 36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Law Quarterly*, 1987.

Williams Sylvia Maureen. Celestial Bodies, 11 *Encyclopedia of Public International Law*, 1989.

Xu Fengna, Su Jinyuan and Mehdi Miqdad, A Re-Examination of Fundamental Principles of International Space Law at the Dawn of Space Mining, 44 *Journal of Space Law*, no. 1, 2020

Ziga Jonathan P, Commercialization of Resource Extraction Throughout the Final Frontier & the Parallel to Terrestrial Procedures, 55 *Case Western Reserve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2023.

[국문초록]

우주의 상업화와 우주자원채굴에 관한 우주법

김한택

최근 과학의 발전을 통해 달과 다른 천체를 포함한 우주 공간에는 인류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천연자원이 있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다. 따라서 점점 더 많은 국가와 민간기업들이 우주 자원은 물론이고 수익성 있는 우주 사업에 열중하고 있다. ‘소행성법’(Asteroids Act)으로 불리는 미국의 2015년 상업 우주 발사 경쟁력법(CSLCA)은 민간기업에게 달과 소행성을 포함하여 우주에서 추출한 자원을 소유하고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또한 CSLCA는 미국이 천체에 대한 주권 및 주권 또는 배타적 권리 또는 관할권을 주장하거나 주장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는데, 이것은 Bin Cheng 교수의 견해대로 우주조약(OST) 제2조의 비전유원칙을 국제공역(*res extra commercium*)으로 해석하여 국가들의 공해상 어업행위와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여 문제의 지역에서 주권을 설정하지 않고 자원을 능력에 따라 채취할 수 있다는 이론을 적용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모델은 2017년 룩셈부르크의 우주자원법, 2020년 UAE의 국가우주법, 2021년 일본의 우주자원법의 제정으로 이어지고 있다. 더구나 미국이 NASA를 중심으로 하여 평화적 목적의 달·화성·혜성·소행성 탐사 및 이용에 관해 아르테미스 프로그램 참여국들이 지켜야 할 원칙을 규정한 아르테미스 약정(Artemis Accords)을 제정하여 이에 참여할 국가들을 모으고 있다. 2024년 1월 현재 OST 가입국은 주요 우주개발국인 미국, 중국, 러시아를 포함하여 114개국인데 반하여 MA 가입국은 이들 국가들이 가입하지 않은 18개국에 불과한데, 비록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상 조약은 아니지만 아르테미스 약정의 서명국은 짧은 시간에 33개국이나 되었다. 아르테미스 약정 서명국들은 OST를 준수하면서 서명국간에는 ‘안전지대’(safty zone)를 설정하여 충돌을 피하면서 우주자원개발을 함께 하겠다는 생각이다. 그러나 문제는 아르테미스 약정 서명국간에는 안전지대를 설정하여 충돌을 피할 수 있으나, 아르테미스 약정 서명국이 아닌 국가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아르테미스 약정에 언급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우주자원 때문에 발생할지 모르는 국가 간 분쟁이 우주의 사영화 및 상업화 문제에 큰 장애가 될 것으로 우려된다.

이 문제를 해결할 가장 좋은 방법은 우주 활동에서 민간 부문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인

정하고 민간 부문이 행사할 수 있는 주요 권리와 의무를 규제함으로써 우주에서의 상업 활동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우주관련조약에 대한 보충의정서의 채택이나 새로운 우주조약의 도입을 생각할 수 있으나, 그 이전에 연성법을 제정하여 국가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방법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주제어

우주의 상업화, 우주자원채굴, 우주조약, 달협정, 아르테미스 약정

[Abstract]

Space Law on Space Commercialization and Space Resource Mining

Han Taek Kim

The U.S. Commercial Space Launch Competitiveness Act (CSLCA) of 2015, known as “the Asteroids Act”, gives private space companies the authority to own and sell resources extracted from outer space, including the moon and asteroids. Additionally, the CSLCA makes clear that the United States cannot assert or claim sovereignty over, or exclusive rights or jurisdiction over any celestial body. According to Professor Bin Cheng’s view, this means interpreting the non-appropriation principle of Article 2 of the Outer Space Treaty (OST) as *res extra commercium* and understanding it in the same context as countries’ fishing activities on the high seas, which means that resources can be extracted according to ability without establishing sovereignty in the area in question.

This model is leading to the enactment of Luxembourg’s Space Resources Law of 2017, the UAE’s National Space Law of 2020, and Japan’s Space Resources Act of 2021. Moreover, the United States, led by NASA, is gathering countries to participate in the Artemis Accords, which stipulates the principles that participating countries in the Artemis program must adhere to regarding the exploration and use of the Moon, Mars, comets, and asteroids for peaceful purposes. As of January 2024, there are 114 countries that have joined OST, including major space developing countries such as the United States, China, and Russia, while only 18 countries have joined Moon Agreement. As far as the Artemis Accords concerned, although it is not a treaty under the 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 of 1969, members of the Artemis Accords were 33 countries, as of January 2024. The idea is that the Artemis Accords countries will comply with the OST and establish a safety zone between member States to avoid conflicts and develop space resources together. However, the problem is that conflict can be avoided by establishing a safety zone between the Artemis Accords members, but the Artemis Accords does not mention how to resolve relations with other countries not joining Artemis Accords.

The best way to solve this problem is to expand the scope of commercial activities in space by specifically recognizing the role of the private sector in space activities and regulating key rights and obligations that the private sector can exercise. We can consider adopting a supplementary protocol or introducing a new space treaty, but I think it would also be a good idea to enact soft law before that and encourage the participation of countries.

Keywords: Space Commercialization, Space Resource Mining, Outer Space Treaty, Moon Agreement, Artemis Accords

글로벌지속가능철강협정(GSSA)과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의 국제통상법적 영향과 대응:

글로벌 철강 시장과 탄소배출 규제를 중심으로

조 문 영*
정 서 용**

*논문접수 : 2024. 1. 20. *심사개시 : 2024. 1. 24. *게재확정 : 2024. 2. 10.

— < 목 차 > —

- | | |
|---|-------------------------------|
| I. 서론 | IV. GSSA와 EU CBAM의 국제적 영향 |
| II. 글로벌지속가능철강협정(GSSA)과 EU 탄소국
경조정(CBAM)의 배경 및 개요 | 1. 주요 국가별 대응 및 영향 |
| 1. 미국-EU GSSA | 2. 국제적 분쟁 및 협력의 가능성 |
| 2. EU CBAM | V. GSSA와 EU CBAM의 비교 분석 및 시사점 |
| III. GSSA와 EU CBAM의 국제통상법적 분석 | 1. GSSA와 EU CBAM의 유사점 및 차이점 |
| 1. 미국-EU GSSA와 국제통상법 | 2. 통상법적 쟁점의 시사점 |
| 2. EU CBAM과 국제통상법 | VI. 결론 |
| 3. 두 기제의 국제통상법적 쟁점 | |
| 4. 보조금 및 반덤핑 관련 이슈 | |

*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 박사과정, 제1저자

** 고려대학교 국제학부 교수, 교신저자

이 논문은 고려대학교에서 지원된 연구비로 수행되었음 (Supported by a Korea University Grant)

I. 서론

미국과 EU의 환경 규제는 한국의 철강 수출 가도에 중대한 전환점이다. 한국은 2019년 철강 수출이 세계 3위를 기록했다.¹⁾ 2023년 4월 기준, 중국 등 아시아로의 철강 수출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유럽, 미국 등으로의 철강 수출이 한국 철강 수출의 전체 실적에 기여하였다. 유럽으로의 수출은 대(對) 러 제재 확대, 튀르키예 생산 지연 등 여파로 인해 2023년 5월 58만 2,000톤으로 전년 동월 대비 22.5% 증가했다.²⁾ 이런 상황에서 주요 수입국인 미국과 EU가 ‘글로벌지속가능철강 협정(Global Arrangement on Sustainable Steel and Aluminum; GSSA)’의 협상 시한을 최초 2024년 1월에서 더 미루고 있다. 이어 EU 집행위원회는 관세 재적용 시점을 2025년 3월 31일로 연기했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도 유럽에서 수입되는 철강, 알루미늄의 지정된 쿼터에 대한 관세 부과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유예했다.³⁾ 따라서 한국은 대응 전략의 방향성을 점검할 시간적 여유를 좀 더 가지게 됐다. 또 다른 EU의 수입규제 정책인 탄소국경조정제도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는 2026년 1월 1일 본격 시행을 목표로 진전되고 있다. 비료, 전기, 시멘트, 수소 제품 등 탄소 집약적인 6개의 대상 품목 중 하나이자 대(對) EU 수출량이 2022년 기준 51억 USD⁴⁾로서 가장 큰 영향을 받을 철강·알루미늄의 탄소 배출량 감축 여하에 따라 추가 관세를 EU에 내야 한다. 이는 피할 수 없다. 2027년 시작해 2032년까지 EU의 배출권거래제(Emission Trading System; ETS) 무상할당 기한이 단계적으로 끝나면 그 부담은 현실화한다.

GSSA는 미국이 EU를 상대로 제안한 것이다. CBAM은 EU 중심의 정책이다. 서로 중첩되는 부분이 그래서 있다. 이 때문에 국제통상법적으로 한국에 어떠한 영향이 있고, 어떤 식으로 조율해야 하는지와 그 대응 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지속 가능한 친환경 공법으로 생산하는 ‘녹색 철강(Green Steel)’ 제조의 관점에서 보면, GSSA와 CBAM은 내용이 비슷하다. 그렇지만 누가 선도하느냐에 따라 그 파급효과는 상이하다. 이 두 기제의 협의와 대응에 따라 한국에게는 위기이자 기회이다. 한국 정부는 GSSA에 대해 일본과 협력해 대응할 전

1) Posco News Room,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한국 철강 시장”, 2020.08.26

2) 김세움, “[무역통계] 철강 수출 3개월 연속 ‘증가세’···‘유럽 북미향’실적 견인”, Ferro Times, 2023.05.11

3) 무역협회, “해 넘기는 미·EU 철강협상...급한 불렸지만 내년 미대선 변수”, 2023.12.29

4) 김민지, “대 EU 수출 CBAM 적용 품목 비중” 연합뉴스, 무역협회, 산업통상자원부, 2023.09.26

락을 모색 중이다. 철강업계에서는 GSSA 참여가 CBAM과 중첩된 측면이 있어, CBAM 관련 일부 면제나 부담 감소 등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⁵⁾ 그렇지만 이러한 관측도 EU와 미국에 어떤 대응 논리를 가지고 협의하느냐에 따라 그 면제 여부 등은 유동적이다. 설혹 면제된다고 하더라도 개도국들의 참여 없이는 탄소 감축의 의미가 사실상 없기 때문에 단기적인 시각으로 면제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적실성이 부족하다. 한편, 영국-EU 간에 배출권거래제⁶⁾ 연계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영국 또한 2027년부터 철강 등에 CBAM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유럽 주변부에서 독자적, 양자적인 움직임이 있다. 미국 상원의원의 해외오염관세⁷⁾ 법안 발의 등 미국의 규제도 시시각각 변화하고 있어 더 구체적인 분석이 요구된다.

이 연구는 GSSA와 CBAM에서 철강 품목에 대해 국제통상법적으로 비교 분석한

다. 특히 2023년 10월부터 보고 의무가 발생한 CBAM에 대해서 한국 산업계와 정부가 어떠한 대책과 전략을 가지고 대응해야 하는지 논하고자 한다. 먼저 GSSA의 등장 배경, 주요 내용, 목적과 국제통상법적 관점에서의 쟁점을 검토한다. EU의 CBAM도 유사한 틀로 분석한 후 두 메커니즘의 국제통상법적 쟁점, WTO 규정과의 합치성, 이와 관련한 보조금, 반덤핑 이슈를 다룬다. 이어서 GSSA와 CBAM의 국가별 대응과 영향을 알아보고, 이에 따른 국제통상 분쟁과 협력의 가능성을 논의한다. 그리고 GSSA와 CBAM 간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토대로 두 기제의 국제통상법적 쟁점의 시사점을 도출한 후 한국의 국제적 대응 전략을 모색하는 것으로서 결론을 맺고자 한다.

5) 김세진, “9월 2주차 국내 ESG 핫클립”, Impact On, 2023.09.14

6) 영국 에너지 및 철강업계는 CBAM 부담금 비용 발생을 막기 위해 영국과 EU의 탄소배출 비용(탄소 가격)을 연동해야 하며, 이를 위해 양자 간 배출권거래제도(ETS) 연계 협상의 개시를 촉구했다. EU의 ETS에 속 하던 영국은 브렉시트 이후 독자적인 ETS 제도를 도입, 정부가 막대한 양의 무료배출권을 할당함에 따라 거래가격이 EU보다 크게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다.(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KBA Europe, “영국 에너지 철강업계, 영국-EU 배출권거래제도 연계 협상 추진 촉구”, 2023.11.07)

7) 미국 상원 재무위원회의 빌 캐시디(Bill Cassidy) 상원의원이 미국산보다 ‘더 더러운(dirtier)’ 에너지 및 산업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을 고립시키면서 유사한 입장을 가진(like-minded) 파트너 간의 청정무역을 촉진하기 위한 ‘2023년 해외오염관세 법안(Foreign Pollution Fee Act of 2023)’을 발의, 오염집약도(pollution intensity)가 미국산 유사 제품보다 10% 이상 높은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되, 배출 수준에 따라 제품마다 단계별 관세를 부과하는 법안(인사이드 트레이드, “美 빌 캐시디 상원의원, 청정무역 촉진 및 中 대응 위한 ‘해외오염관세’ 법안 발의”, 무역협회, 2023.11.03)

II. 글로벌지속가능철강협정(GSSA) 과 EU 탄소국경조정(CBAM) 의 배경 및 개요

1. 미국-EU GSSA

가. 등장 배경

미국-EU GSSA의 출발은 미 트럼프 행정부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8년 무역확장법 (Trade Expansion Act of 1962)의 제 232조⁸⁾ 조치로 유럽의 철강과 알루미늄 물품에 대해 각각 25%와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했다. EU는 보복 관세로 맞섰다.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 2021년 10월 미-EU는 기존의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를 철회하고 새 협상을 시작했다. 그 후 2년간의 협상 끝에 철강과 알루미늄 산업에서의 비시장 국가의 과잉생산(excess capacity)과 탄소 집약도(carbon intensity) 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GSSA 체결에 의견 접근을 보았다. 다만 미국은 2024년 1월 말까지 합의 성과를 이루어 내지 못할 경우, 제 232조를 부활시키는 조건을 명기하였다.⁹⁾ 그렇지만 GSSA의 협상 시한을 2023년 10

월에서 2024년 1월로 연기하였다가 관세 적용 시점을 2025년 3월로 또다시 미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선진국 간 협상이 ‘녹색 철강’ 생산을 위한 계측 방식 등 새로운 국제 규범 형성을 놓고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중국을 비롯한 비시장국가들의 철강 과잉생산은 글로벌 산업과 환경에 부정적 파장이 크다. 국제 철강 가격하락 등의 불안정성을 초래해 철강 산업의 시스템적 위험을 키운다. 각국이 철강 산업의 중요도 때문에 자국 산업 보호를 목적으로 철강에 무역 장벽 등 보호 정책을 경쟁적으로 도입하게 된다. 이는 국제 무역 분쟁의 원인으로 작용한다. 아울러 철강 산업은 에너지 집약적이어서 글로벌 온실가스 배출의 11%¹⁰⁾를 차지하고 있다. 지속 가능한 철강 생산 방법에 관한 연구와 국제 협력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나. 주요 내용 및 목적

GSSA는 비시장 국가를 겨냥하고 있다. 중국 등 견제를 내포함을 의미한다. 중국

8) 무역확장법 제232조는 국가안보조항(national security clause)이다. 외국산 수입 제품이 미국의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경우, 긴급하게 수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법 조항이다. (설송이, “미국 통상법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무역협회, 2018.07.10)

9) 이정민, “미국-EU ‘지속가능한 철강 알루미늄 합의’(GASSA) 동향 및 전망”, Kotra해외시장뉴스, 2023. 06.23

10) International Energy Agency, “Global CO2 emissions in 2019”, 2020.02.11

이 국영 철강기업에 불법 보조금을 주어 철강을 과잉 공급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의도가 있다. 또한, 탄소집약도가 높은 공정으로 생산된 철강 공급을 금지함으로써 ‘녹색 철강’ 생산을 장려한다. <표 1>은 미국-EU GSSA 합의 내용이다.

<표 1> 미국-EU GSSA 주요 합의 내용¹¹⁾

무역확장법 제232조의 관세 대신 저율 관세할당물량 (TRQ)* 도입
• 미국은 제232조 하에 있는 EU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현재의 관세를 제232조 하의 TRQ로 대체 • TRQ 조치 하에서, 역사적으로 축적된 자료에 기반한 EU 철강·알루미늄 제품의 양이 제232조 관세의 적용 없이 미국 시장에 진입하여 전방 사업자(downstream)의 수요를 충족
무역구제 및 관세 문제 협력, 추가 조치 개발에 관한 합의
• 양측은 무역구제 및 관세 문제에 관한 조정을 확장 • 이러한 분야에서 비시장 과잉 생산량을 해결하기 위한 추가 조치를 협의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만날 것

글로벌 철강·알루미늄 무역 조치 협상이 시장 지향적 조건 복원 및 탄소 집약도의 (carbon-intensity) 문제 해결

- 미국과 EU는 철강·알루미늄 분야의 무역에 대한 미래의 조치를 협상
- 이는 전 세계의 비시장 과잉 생산량과 이러한 산업의 탄소 집약도를 고려하게 될 것
- 미국과 EU는 이러한 조치에 대한 협상을 돕기 위해 기술협력그룹을 구성하며, 이러한 조치에 참여하려는 동질적인 경제 체제를 구축

WTO의 패널에 앞에서의 EU의 보복 관세 철회 및 분쟁 중단

- EU는 미국 상품에 부과된 추가 관세를 중단
- 미국과 EU는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조치로서 미국의 제232조와 EU의 추가 관세에 관해 서로에 대한 분쟁을 중단

EU 시장에서 시장 지향적 조건 확보를 위한 기타 조치

- EU는 그 시장에서 시장 지향적 조건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 조치 및 기타 적절한 조치의 적용

* TRQ(Tariff Rate Quota): 일정 물량에는 낮은 관세를 부과하고, 이를 초과하는 물량은 기본 관세를 적용¹²⁾

11) Office of the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Executive Office of the President, “Fact Sheet: US-EU Arrangements on Global Steel and Aluminum Excess Capacity and Carbon Intensity, 2021.10

12) 한국수산물무역협회, TRQ(Tariff Rate Quota, 저율관세율할당물량) 제도란?(2024.1.20. 방문)
<<http://www.kfta.net/TRQAuction/Introduce/>>

이렇듯 GSSA는 탄소배출이 높은 공정으로 생산된 철강의 공급을 억제하여 기후 위기 대응과 함께, 미국의 철강업계와 노동자들을 보호하고자 한다. 미국과 EU가 각종 무역 규제와 무역 구제 장치들을 활용하며, 기술개발 협력 및 정책적으로 공조하는데도 그 의의가 있다. 미 백악관이 2021년 10월 발표한 GSSA의 목표와 합의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후 변화 대응 및 왜곡된 경제 관행에 대한 대응에서 전혀 없던 통상 정책의 조정을 통해 글로벌 선도자가 된다. 둘째, 미국 철강 회사와 노동자들이 받지 못한 혜택을 제공한다. 그리하여 미국의 일자리와 산업 보호 및 미국 제조업체들이 철강을 원료로 한 제품을 쉽게 제조하도록 저렴한 철강과 알루미늄을 공급한다. 셋째, 총 탄소배출의 약 10%를 차지하는 철강·알루미늄의 생산에 대해 미국, 유럽 및 전 세계의 ‘녹색 철강’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며, 수십 년 동안 경쟁력 있는 미국 철강 산업을 보장한다. 넷째, 미-EU 관계의 강력함을 강조하면서 미국과 EU는 2021년 6월 미-EU 정상 회담에서 신규 규칙을 갱신하기 위해 그들의

집합적인 경제의 규모를 활용하겠다고 서약했다. 이는 17년간의 보잉-에어버스 분쟁의 성공적인 해결과 미-EU 무역 및 기술 협의회(Trade and Technology Council: TTC)의 설립을 기반으로 한다.¹³⁾

GSSA 협상에서 미-EU 간의 입장 차는 아직 남아 있다. EU는 탈 탄소화의 약속 추진에 우선순위를 두는 데 비해 미국은 비시장 과잉 설비 해소에 중점을 둔다. 협상 목표달성을 위한 방법으로는 EU는 배출권 거래제(ETS)¹⁴⁾에 기반한 CBAM 방식을 지지한다. 반면, ETS가 부재한 미국은 배출집약도에 따른 관세 체제를 주장한다. EU의 CBAM과 관련해서는 미국은 GSSA로 인해 CBAM에 대한 면제가 부여되기를 바란다. 그런데 EU는 GSSA로 CBAM이 면제된다면 CBAM이 무력화될 가능성이 있어 반대한다. 또한, EU는 GSSA가 WTO 규범과 완전히 합치되기를 요구하지만, 미국은 WTO 규범 합치성과 관련한 입장을 밝힌 적이 없다. 문서의 법적 성격에서도 EU는 양해각서로서 협상 설계를 제안했으나, 미국은 구속력 있는 협정을 주장했다.¹⁵⁾ 미-EU 간에 CBAM과 GSSA의 주요

13) White House, “Fact Sheet: The United States and European Union to negotiate world’s first carbon-based sectoral arrangement on steel and aluminum trade”, 2021.10.31

14) 2005년 EU가 처음 시작한 EU 배출권 거래제(ETS)는 탄소배출을 제한하고 감축하기 위한 시장 기반의 접근 방식이다. 오염을 유발하는 기업들이 정부로부터 배출권을 구매하거나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이다.

15) 고준성, “미-EU간 GSSA 논의 동향 및 전망”, 월간 철강보 10월호, 2023.10

사안을 둘러싼 이견이 좁혀지기에는 시간이 더 소요될 것이다.

2. EU CBAM

가. 등장 배경

EU CBAM은 2003년 탄소 누출 문제가 처음 논의된 이래 2005년 EU의 탄소배출권거래제가 시작되고, 엄격한 배출제한으로 탄소 누출의 국가 간 이동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태동했다. <표 2>는 EU의 CBAM 논의 배경의 역사이다.

<표 2> EU CBAM 논의 배경의 역사

2003년	- 탄소 누출 문제가 처음으로 논의되기 시작 - 이 시기에는 주요한 정책 도구로서의 탄소 국경 조정에 대한 논의는 아직 활발하지 않음
2005년	- EU 배출량 거래제(ETS)의 첫 번째 거래 기간이 시작, 이 시기부터 탄소 누출 문제에 대한 관심이 점차 증가 - 기업들이 엄격한 배출제한으로 인한 경쟁력 손실을 우려하며, 다른 국가로의 이동 가능성을 제기
2008~2009년	EU는 2020년까지의 기후 및 에너지 목표 설정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면서, 탄소 누출에 대한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

	탄소 고배출 산업 분야에서의 탄소 누출을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대안들을 포함하여 무료배출권 할당 등이 제안
2010년대 중반	- 탄소 국경 조정에 대한 논의가 점점 활발 - 국제적인 기후 변화 협약 및 2015년 파리협정(Paris Agreement)을 계기로 더욱 중요한 문제로 부각
2020년 12월	- EU는 ‘그린 딜(European Green Deal)’이 승인되어,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조정 - 탄소 국경 조정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다시금 강화
2021년 7월	2021.07.14. ‘Fit for 55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1990년 수준 대비 55% 감축하기 위한 입법안)’ 발표 - 동 입법안에 EU는 탄소 국경 조정 메커니즘(CBAM)의 도입을 공식적으로 포함, 이는 EU 내에서 생산된 제품과 동일한 환경 규제를 받지 않는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제품에 대해 과세하거나 기타 조치를 취하는 것이 목표

EU는 폭염과 에너지난 등 기후 변화에 대한 피해를 다른 국가에 전이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탄소 누출 정책을 2000년대

초부터 구상했다. 한국은 2015년부터 ETS를 통해 탄소 배출량을 시장주의적 관점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방향으로 대비하고 있었다. 이는 한국이 GSSA와 CBAM에 대응하는 데 비교적 강점이 있음을 의미한다.

나. 주요 내용 및 목적

EU의 CBAM은 2026년 1월 1일 시행된다. 시멘트, 철강과 알루미늄, 비료, 전기, 수소 제품 등 6개 수입 품목에서 유럽의 저탄소 생산 물품과의 탄소 배출량 차이를 금액화하여 추가 관세 성격으로 부과하는 제도이다. 탄소 누출을 방지하고 더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무역을 위한 조치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온실가스 배출이 주로 선진국에 의해 이루어진 것을 고려하면, 명목상으로는 개도국에게 배출 절감 기술 지원을 한다고는 하지만, EU 제품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고 중국, 인도 등의 국가로의 무역 적자를 만회해보려는데 그 목적이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들 국가로부터 수입된 탄소 다배출 물품에 대해 공정한 경쟁과 무역을 도모하는 것은 일면 타당하다. 그렇지만 과거 고도 경제 성장을 구가했던 EU와 미국이 국내 산업을 보

호하는 정책으로 회귀하여 경제 어려움을 벗어나려는 측면이 있다. 중국은 이러한 세계적인 저탄소 정책 기조에도 불구하고, 기후 변화로 인한 가뭄과 폭염에다,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까지 더해져 여름철 전력 사용 수급이 부족함에 따라 석탄발전소 건설 승인 건수를 늘린 바 있다.¹⁶⁾ 에너지 데이터 기관인 글로벌에너지모니터(Global Energy Monitor)와 에너지·청정공기 연구센터(Center for Research on Energy and Clean Air)의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신규 석탄 발전 승인 건수가 2021년에 비해 4배 증가했다.¹⁷⁾ 전 세계가 기후 변화로 인해 무차별적 피해를 보기 때문에 책임 소재를 따지기보다는 공정한 규범을 형성하고, 개도국과 선진국이 협력과 경쟁을 통해 기후 위기를 돌파해야 할 상황이다.

III. GSSA와 EU CBAM의

국제통상법적 분석

1. 미국-EU GSSA와 국제통상법

미-EU의 양자 협의인 GSSA는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eneral Agreement on

16) Julia Simon, "China is building six times more new coal plants than other countries, report finds", NPR, 2023.03.02

17) Ibid.

Tariff and Trade; GATT)의 제1조 최혜국대우(Most-Favored-Nation Treatment)와 제3조 내국민대우(National Treatment)원칙과 상치된다. WTO 규범에 저촉되는 것이다. 양자협이는 국제 정치의 현실주의 관점에서 접근할 때는 자연스러울 수 있다. WTO 규정을 과거에 합의한 역사적인 연원으로 보았을 때는 모순적인 측면이 있다. 1918년부터 1939년까지, 제1차 세계 대전 종전에서 제2차 세계 대전 발발 전까지는 독일과 영국이 세계 무역에서 양자 교역 시스템의 ‘핵심-주변부 체제’(hub and spoke: 중앙의 허브 국가와 여러 스포크 국가 간의 양자 무역협정 네트워크)였을 시기에 미국 정부는 당시 미국이 겪었던 무역 차별에 대해 확고히 반대했다. 이것이 GATT의 비차별 원칙의 시초가 되었다.¹⁸⁾ GATT 협정은 기존의 특혜적 무역협정, 즉 관세동맹이나 자유무역지대와 같은 참가국 간의 자유무역에 대한 협정들을 인정하면서도 그러한 협정들의 확대를 금지하는 조건 아래에서 체결되었다.¹⁹⁾

초기 유럽경제공동체(EEC)설립과 관련

하여 미국의 태도는 복잡했다. 1957년 설립된 EEC가 미국의 경제력에 대항할 무역 블록이 될 것을 우려했다. 냉전 초기 EEC의 경제 통합이 소련의 유럽 내 영향력에 미칠 영향에 대하여 염려했다. EEC가 미국의 유럽 시장 접근을 방해할 보호주의 정책으로 번질 우려가 있다고도 생각했다. 그러나 냉전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서유럽의 통합이 중요한 전략적 가치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했다. 통합된 유럽 시장이 제공하는 기회가 분명해 졌다. 서유럽의 안정이 세계 경제에 중요하다는 인식 강화되었다. 1994년 체결된 북미자유무역협정 (NAFTA)는 미국이 경제 통합과 무역 자유화의 이점을 인정했음을 의미한다.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950년대 말 미국 정부는 앞서 언급하였던 소련을 견제하기 위한 정치적인 이유로 EEC와 유럽자유무역연합(EFTA)의 설립을 지지했다.²⁰⁾ 1960년대 후반, 미국은 GATT에서 개발도상국을 위한 일반특혜 관세 제도(GSP)에 마지못해 동의했다.²¹⁾ 하지만, 이러한 제도는 원칙적으로 GATT의 최혜국대우 조항²²⁾에 내재된 비차별 원칙과는 분

18) Richard H. Snape, Discrimination, regionalism and GATT. University of Chicago Press, 7, 1993

19) 라울리 찰스 외, 미국 보호무역의 정치경제학,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0.11.07

20) Ibid.

21) Ibid.

22) 한 국가가 특정 무역 파트너에게 제공하는 가장 유리한 조건을 자동적으로 모든 다른 파트너 국가들에게도 동등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원칙

명히 이탈되는 것이다.

1980년 이후 미국 정부는 여덟 번의 다자간 무역 협상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다. GATT가 지향하는 다자간 무역체제에 잠재적으로 해를 끼칠 수 있는 새로운 유형의 특혜적 무역협정의 선봉에 나선 것이다.²³⁾ 1980년대 후반부터 미 무역대표부(USTR)는 양자 및 다자간 협상을 병행하여 진행할 것임을 공언하였다.²⁴⁾ 양자 차원의 특혜적 무역협정을 활용해 미국 수출기업의 시장 접근을 촉진한다는 생각에서였다. 실제로 이 방식은 현재 미 행정부에 영향을 끼쳐 자국 시장 접근이 제한 없이 허용된다는 가정 아래 다른 국가들에게도 유사한 수준의 시장 개방을 강요하는 전략

인 ‘쇠지레식 사고(crowbar mentality)’를²⁵⁾ 조장한다. 이는 다자간 무역 체계를 심각히 해할 위험이 있다.²⁶⁾ ‘수퍼 301조’는²⁷⁾ 불공정 무역을 한 외국에 대해 명백한 차별을 허용하는 것이다. 이는 1930년대 독일과 영국의 정책을 연상시키는 방식이다. 국제 통상의 경제학 이론이 리카도의 비교우위²⁸⁾에 입각한 경제적 효용의 측면에서 즉, 국제적 경쟁을 통해 상대적으로 저비용 고효율의 제품을 국경을 넘어 소비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발전이 된 것을²⁹⁾ 고려하면, 다자협력 기구인 GATT/WTO 기구의 역할에 관한 논쟁은 태생적으로 모순을 안고 있어 그 기능에 대해 회의감을 갖지 않을 수 없다.³⁰⁾

23) 라울리, supra note 19

24) Ibid.

25) 한 국가가 다른 국가에 대해 경제적,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무역을 이용하는 전략이다. 강대국이 자신의 경제적 우위를 이용해 약소국에 대한 정책 변경을 강제하거나, 국제 정치적 입장을 변화시키려고 할 때 자주 사용된다. 그러나 이러한 전략은 종종 대상 국가와의 긴장을 증가시키거나, 다자간 무역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는 무역이 단지 상품과 서비스의 교환 이상의 의미를 가지며, 국가 간의 복잡한 상호작용과 권력 관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26) Bhagwati, J. The World Trading System at Risk. Princeton University Press, 49, 1991

27) 1974년도 무역법(Trade Act of 1974)의 301조 규정이 1988년도 종합무역법(Omnibus Trade and Competitiveness Act of 1988)에 의해 강화된 것. 일반적으로 301조라 함은 1974년도 무역법상의 제 301조부터 제 309조까지의 조항을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용어이다. 301조 규정은 교역상대국의 불공정한 무역행위로 미국의 무역에 제약이 생기는 경우 광범위한 영역에서 보복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시사경제용어사전, “수퍼301조”(2024.02.14. 방문)<<https://www.moef.go.kr/sisa/dictionary/detail?idx=1564>>)

28) 각 나라가 자신이 비교적 뛰어난 분야에서 물건을 생산하는 데 중점을 두고, 다른 나라로부터는 자신이 잘 만들지 못하는 물건을 구매함으로써 상호 간에 무역을 통해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한 19세기 영국 경제학자 리카도의 이론

29) 라울리, supra note 19

30) Ibid.

이처럼 국제경제학 및 통상법적 이론에 내재하는 한계점이 있다. 먼저, 내국민대우 원칙에서 보면, GSSA는 국가가 국내에서 판매되는 외국 상품, 서비스, 투자에 대해 자국의 상품, 서비스, 투자와 동일한 대우를 해야 한다는 원칙에 위반될 수 있다. GSSA가 특정 회원국의 철강 제품에 유리하게, 또는 불리하게 작용하여 다른 회원국의 철강 제품과 다른 대우를 받게 된다면, 이는 내국민대우 원칙을 위반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즉 중국과 인도산 철강 제품에 대한 차별이 될 수 있다. 이는 후술하는 GATT 제20조 환경 예외에 의해서도 합치될 수 있다. 최혜국대우 원칙에서 보면, 한 국가가 다른 국가에 특정 무역 혜택을 부여할 경우, 그 혜택은 자동으로 조약 체결의 모든 기타 국가에도 부여되어야 한다. 그러나 GSSA의 경우, 특정 국가나 그룹의 철강 제품에 대해 특별한 혜택을 제공하고, 다른 회원국에는 그러한 혜택을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이 원칙에 저촉될 수 있다. 이 역시 환경 예외 조항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 현재 WTO의 최종 심 역할을 하는 상소기구(Appellate Body)가 2019년 12월 이래 그 기능이 사실상 정지된 상황이기 때문에 미-EU의 독자적인

협력관계는 한국으로 하여금 이에 협력하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계기로 작용할 수도 있다.

2. EU CBAM과 국제통상법

EU의 CBAM 역시 최혜국대우와 내국민대우 등 WTO 주요 규정에 저촉된다. 그렇지만 이는 WTO 원칙이 무디어지는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자국 산업 보호 조치이다. 과거 미국과 EU 등 선진국들은 2차 세계 대전 이후의 폐허를 복구하고 1944년 브레튼우즈 체제 설립을 통해 세계은행(World Bank), IMF, GATT/WTO의 세 가지의 국제기구를 창설했다. 명목상 세계 평화를 위하나 실제로는 서방의 이러한 전략적 목적 달성에 이들 기구가 봉사할 수밖에 없었다.³¹⁾ 그런데 선진국들이 우선권(privilege)을 유지하려고 했던 이러한 이권다툼에 대한 반작용이 미 트럼프 행정부를 기점으로 두드러지게 된 것이다.³²⁾

CBAM이 국제 통상 규칙에 합치하려면 수입 상품에 몇몇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첫째, 비차별적 접근을 보장하여야 한다. CBAM을 도입할 때 특정 국가나 상품에 대한 차별 없이 균일하게 적용해야 하

31) James Raymond Vreeland, "Corrupting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nual Review of Political Science, 2019.05

32) Ibid.

며, 이를 통해 국제통상법상의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다. 둘째, 기술이전과 개발도상국의 관점에서 볼 수 있어야 한다. CBAM은 개발도상국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래서 개발도상국의 입장을 고려하여 기술이전이나 다른 지원 조치를 동반해야 한다. 셋째, CBAM에 관해 분쟁이 발생할 경우, WTO 분쟁 메커니즘을 통해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3. 두 기제의 국제통상법적 쟁점

가. GATT 제1조와 제3조의 비차별적 대우 규정 저촉

두 기제의 국제통상법적인 쟁점은 WTO의 기본 원칙인 최혜국대우와 내국민대우 등³³⁾의 비차별적 대우의 규정에 어긋나는 것이다. 이 두 원칙은 동종성(Likeness)을 기준으로 하여 차별을 금지한다. 동종성은 물리적 특성, 기능, 소비자의 취향 및 관습에 기반을 두며, 생산 공정(Process and Production Methods; PPM)이 다르다 해서 차별할 수 없다.³⁴⁾ 탄소배출을 이유로 한 CBAM은 PPM 기반으로는 동일한 상품을

차별적으로 대우하는 조치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체계는 본질적으로 내국민대우 의무를 위반할 가능성 있다.³⁵⁾ US-Tuna II (Mexico) 사건³⁶⁾에 대한 WTO의 판정에서 볼 수 있듯이 생산 공정 과정이 다르다고 해서 제품을 차별하는 것은 동종성과 관련하여 WTO 비차별 원칙에 어긋난다. 이 사례에서 미국은 돌고래 보호를 목적으로 참치 어획 시 돌고래를 해치지 않는 방법으로 잡힌 참치만 특별한 라벨을 부여하는 법을 제정했다. 이는 멕시코와 같은 다른 국가들이 사용하는 어업 방법을 차별하게 되었다. 미국의 조치는 멕시코가 생산한 참치와 미국 내에서 생산된 참치 사이의 차별을 만들어냈다. 멕시코는 이것이 WTO의 동종성 원칙 및 최혜국대우 원칙, 내국민대우 원칙에 위배 된다고 주장했다. WTO는 미국의 조치가 실제로 특정 참치 제품을 차별하고 있으며, 이는 WTO 규정에 위배 된다고 판결했다. 또한, WTO 상소 기구는 여러 중요한 판단 요소를 제시했다. (i) 해당 조치가 합리적인 목적에 얼마나 기여하는지, (ii) 조치의 무역 제한적 성격, 그리고 (iii) 회원국이 달성하려는 목적이

33) 수입 상품에 대하여 국내 상품과 동등한 권리나 특권을 부여할 것을 요구하는 것, 한국조달연구원, 2011. 04.11

34) Michael Mehling, "Adjusting Carbon at the U.S. Border & Some Legal Considerations", MIT Center for Energy and Environment Policy Research, 2021.03.17

35) 이천기 외, "EU 탄소국경조정 메커니즘에 대한 통상법적 분석 및 우리 산업에의 시사점", KIEP, 2021.07

36) DS381: United States-Measures Concerning the Importation, Marketing and Sale of Tuna and Tuna Products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의 심각성과 그 결과의 중요성과 같은 것이 그것이다.³⁷⁾ WTO는 동종성의 판단에서 생산 및 가공 방법을 직접적인 기준으로 삼지 않았다. 대신 제품 자체의 특성과 소비자의 인식에 더 중점을 두었다. 따라서 CBAM과 GSSA의 결과로 만들어진 철강이 ‘탄소배출 감소’라는 목적을 달성했는지, 소비자가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 합치성의 여부가 결정된다. CBAM은 탄소 배출량에 따라 수입 제품에 대한 조정을 목표로 한다. 이는 소비자들이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제품을 선택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GSSA도 지속 가능한 제품에 대한 국제 표준을 설정하고 촉진 역할을 한다. 이는 소비자 인식을 반영하는데 중요할 수 있다.

동종성의 기준을 다룬 또 다른 WTO 분쟁 사례로는 일본 주류 케이스와 EC-석면 케이스가 있다.³⁸⁾ 일본 정부는 수입 위스키, 브랜디, 기타 주류에 대해 자국 내 ‘사케’나 소주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했다. WTO 패널은 상품의 동종성을 평가할 때 물리적 특성, 사용 목적, 소비자의 인식 및

취향, 상품의 경쟁 관계 등을 고려하였다. 패널은 위스키와 브랜디가 사케나 소주와 동종 상품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결정했다. 이는 소비자의 관점에서 볼 때 이들 주류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고 경쟁 관계에 있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일본의 세금 체계는 WTO의 내국민대우 원칙에 위배로 판정되었다.³⁹⁾ EC-석면 분쟁에서, 프랑스는 건강상의 이유로 석면 함유 제품의 수입 및 판매를 금지했다. 캐나다는 이 조치가 자국의 석면 제품에 대한 차별적인 무역 장벽을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이 경우에는 석면 함유 제품과 석면이 없는 대체 제품 간의 동종성이 논점이었다. 패널은 제품의 물리적 특성, 사용 목적, 소비자의 인식 및 취향, 그리고 건강에 대한 위험성을 고려했다. WTO 패널은 석면 함유 제품과 석면이 없는 대체 제품이 동종 상품으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이는 석면의 건강 위험이 소비자의 선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따라서 두 제품 간에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⁴⁰⁾ 결국, 프랑스의 석면 금지 조치는 WTO 규정에 부합하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이렇게 볼 때 GSSA와 CBAM은 WTO 원칙 중 내

37) 박호민, “EU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BAM)의 WTO TBT 협정 합치성- 환경, 기술, 그리고 TBT협정 간 관계 모색”, 법제논단, 2022.02

38) 김호철, “탄소국경조정 도입의 WTO 합치성 쟁점 : GATT 제2조, 제3조, 제20조”, 통상법률, 2021

39) DS8: Japan-Taxes on Alcoholic Beverages

40) DS135: European Communities-Measures Affecting Asbestos and Products Containing Asbestos

국민대우 원칙에 위배이며, 국가별, 혹은 상품의 생산 방식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제품의 동종성의 기준으로 최혜국대우와 내국민대우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

나. GATT 제2조 관세 양허와 관련한 합치성

CBAM 등의 탄소세 부과에 대하여 GATT 제2조 관세 양허와 관련해 3가지 고려 사항들이 있다. (i) 철강과 같은 탄소 집약형 제품의 수입에 대해 조정세를 부과하는 국경세 조정(수입 Border Tax Adjustment; BTA), (ii) 수출에 대해 탄소세를 환급하는 국경세 조정(수출 BTA), 그리고 (iii) 정해진 수준 이상의 탄소 감축을 달성한 기업에 대한 세금공제제도가 그것이다. 여기에서의 국제통상법적 판단을 위한 주요 쟁점은 관세 양허에 관한 GATT 제2조 제1항과, 그 예외에 관한 제2조 제2항 (a)에 관한 법리 및 동 제2조 제2항 (a)에 규정하고 있는 GATT 제3조 2항 내국민대우 원칙과의 관련성에 대한 논의이다. GATT 제2조 제1항은 관세 양허의 일반 원칙이다. 회원국들이 WTO 협정에 따라 약속한 관세율을 초과하여 부과할 수 없다는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제2조 제2항 (a)에 의하면, 특정 상품에 부과되는 직접 세금이나 규제가 수입품과 국내제품 사

이의 불공정한 차별을 초래하지 않는 한, 일부 차이를 둘 수 있다. 이는 특정 조건 아래에서 제2조 제1항의 관세 양허를 넘어서는 내부세나 기타 조치의 적용을 허용하는 예외 조항인 것이다. 또한, 이 조항은 GATT 제3조 제2항의 내국민대우 원칙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모든 조치가 수입품과 국산품에 같이 적용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이는 EU가 일종의 과징금의 형태인 탄소세의 수출입 BTA 제도를 어떻게 관련 규정에 합치되도록 구축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로 귀결된다.

한편 수출 BTA의 경우, 수출에 대한 탄소세 환급이 GATT 보조금 협정(Agreement on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 ASCM)에서 금지하는 수출 보조금 여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내국민대우 원칙과 관세 양허 조항에 따르면, 특정 수출품에 대한 탄소세 환급은 해당 상품이 국내 시장에서 경쟁할 때 발생하는 조세 부담을 수출할 때 경감함으로써 수출상품이 더 유리한 위치에 서게 한다. 이는 GATT 제2조 양허 관세 원칙에 어긋날 수 있으며, 내국 상품과 수입 상품 간의 공정한 경쟁 조건을 저해할 수 있다. 수출 보조금은 보조금 협정에 따라 특정 조건 아래 제공되는 정부의 재정적 기여나 어떠한 형태의 지원을 통해 수출 성과와 직접 관련이 되는 보조금이다. 수출품에 대한 탄소

세 환급이 특정 상품의 수출을 촉진하고, 이로 인해 해당 상품이 국제 시장에서 불공정하게 경쟁 우위를 갖게 한다면 이는 수출 보조금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다. GATT 제20조 환경 예외 조항의 합치성

다음 쟁점은 GATT 제20조 일반예외(General Exceptions)의 환경 예외 조항 및 제21조 안보상의 예외(Security Exceptions)에 합치 여부이다. GSSA와 CBAM은 GATT 제20조 (b) 인간,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 혹은 (g) 고갈될 수 있는 천연자원의 보존과 관련된 조치와 GATT 제21조 안보상의 예외에 의해 WTO에 합치될 가능성이 열려 있다. 탄소 배출량을 기준으로 하여 기후 친화적 상품과 그렇지 않은 상품을 구분하고, 기후 친화적인 상품에 한정해서 생산, 수입, 판매를 허용하는 방안이 실현 가능한 때문이다.⁴¹⁾

제20조 환경 예외와 관련한 WTO 분쟁 사례에는 US-슈퍼펀드(Superfund)⁴²⁾와 US-개량 가솔린(Reformulated Gasoline, RFG)

분쟁⁴³⁾이 있다. US-슈퍼펀드 사례에서, 미국은 석유와 특정 화학물질에 대해 세금을 부과했는데, 이 세금은 오염 방지 및 폐기물 처리 비용에 기인하였다. 이 세금 체계는 수입된 물질에 다르게 적용이 되었다. 이로 인해 특정 수입국들이 미국의 조치가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미국은 환경 보호를 위한 조치라고 주장하며 GATT 제20조의 환경 예외 조항을 근거로 들었다. WTO 패널은 미국의 세금 체계가 환경 보호의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특정 수입품에 차별적으로 적용되었다고 판단했다. 패널은 환경 보호 목적의 조치라 할지라도, 모든 WTO 회원국에 동등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패널은 화학물질에 대해 내국세를 부과할 수 있고, 수입품 중 생산 과정에서 해당 화학물질의 사용에 따라 세금을 부과할 수는 있지만, 화학물질의 생산 공정이 추적되어야 하는 것에 대해서는 판결을 내리지 못했다.⁴⁴⁾ US-개량 가솔린 케이스의 경우, 미 환경보호청(EPA)은 대기 오염을 줄이기 위해 개량 가솔린과 일반 가솔린(Conventional Gasoline)에 대한 새로운 표준을 도입했다. 이 표준은 RFG의 화학적 구성에 대한 엄격한 요구 사항을 설

41) 이재형, “기후변화상품에 대한 특별대우와 국제통상규범”, 법학연구, 20(2). 29-58, 2010

42) United States-Taxes on Petroleum and Certain Imported Substances (L/6175-34S/136)

43) United States-Standards for Reformulated and Conventional Gasoline(WT/DS2/1)

44) 이정아, “탄소국경조정의 국제통상법적 분석: EU의 CBAM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23

정했다. 특히, 미국 내에서 생산된 가솔린과 수입 가솔린에 다른 기준을 적용했다. 미국은 이 표준이 환경 보호 목적을 위한 것이며, GATT 제20조의 환경 예외 조항에 따라 정당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WTO 패널은 미국의 가솔린 표준이 환경 보호를 위한 것이긴 하지만, 수입 가솔린에 대해 불리하게 차별적인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내국민대우 원칙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패널은 환경 보호를 위한 조치가 WTO의 기본 원칙과 일관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는 제20조 하에 “정당화할 수 없는 차별(unjustifiable discrimination)”이며, “국제 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disguised restriction on international trade)”라고 규정했다.⁴⁵⁾

2007년 브라질 페타이어 분쟁은 환경 예외 조항을 원용한 대표적 최근 사례이다. 브라질 정부는 페타이어로 인한 환경 및 보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생 타이어의 수입을 금지했다. 페타이어가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과 모기 서식지로서 텅기열 같은 감염병 확산의 근원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었다. EU는 브라질의 이러한 조치가 WTO 규정, 특히 내국민대우 원칙 및 수입금지 조치의 예외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다고 주장하며 WTO에 제소했다. EU의

주장은 브라질이 남미공동시장(MERCOSUR) 회원국으로부터의 재생 타이어 수입은 허용하면서 다른 국가들의 수입을 금지함으로써 차별적인 무역 장벽을 세웠다는 것이었다. WTO는 브라질의 조치가 일부 WTO 규정을 위반한다고 판단했다. 일관성 없는 적용과 차별적인 조치가 문제가 되었다. CBAM과 GSSA가 환경 보호 목적이라 하더라도 다른 국가의 철강 제품에 관세 부과를 통해 시장 접근을 제한한다면, 혹은 미-EU 양자 간에는 예외가 적용된다면 비차별적 원칙에 어긋날 수 있다.

국내 산업 보호 정책과 국제 무역 규범 사이의 충돌을 다루는 사례에는 2013년 인도의 태양광 패널 WTO 분쟁이 있다. 인도 정부는 국가태양광미션(National Solar Mission)을 통해 국내 태양광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자 했다. 이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인도는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에 보조금을 제공했다. 보조금을 받으려면 자국산 태양광 셀 및 모듈을 사용해야 하는 ‘국내 구매 요건’(Domestic Content Requirement, DCR)이 있었다. 미국은 인도의 국내 구매 요건이 WTO의 내국민대우 원칙 및 수입 제한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다면서 2013년 인도를 WTO에 제소했다. 인도는 DCR 정책이 국가 차원의 에너지 안보, 기후 변화

45) Meheling, *supra* note 34

대응,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해 필수적인 조치이며 합리적인 가격으로 충분한 양의 청정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했다. 태양광 전기 생산을 위해서는 태양광 전지 및 모듈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공급이 필요하나, 수입 의존도가 높고 국내 제조 능력이 부족하여 공급 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이에 따라, DCR은 GATT 제20조 (j)에 의거, 공급이 부족한 상품의 획득, 분배에 필수적이며 전 세계적인 공급 부족뿐만 아니라 특정 지역 시장의 공급 부족에 대응을 위한 조치를 포함한다고 인도는 강조했다. 나아가, 인도는 DCR이 GATT 제20조 (d)에 따른 법률 또는 규정의 준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주장했다.⁴⁶⁾ 미국의 주장은 인도의 DCR이 외국산 제품에 대해 차별적인 무역 장벽을 설정하고, 이로 인해 외국 제조업체들이 인도 시장에 공정하게 접근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2016년, WTO는 인도의 DCR이 국제 무역 규정에 위배라고 판결했다. 내국민대우와 무역 관련 투자 조치 협정(Trade-Related Investment Measures: TRIMs) 협정에 어긋난다고 보았다. WTO는 인도에 해당 조치를 철회하거나 규정을 준수하도록 명했다. 인도는 WTO의 판결에 따라 태양광 프로그램의 일부 정책을 재조정해

야 했다. 이는 인도뿐만 아니라 캐나다 온타리오주, 중국, 미국, EU 등 다른 국가들의 재생 에너지 정책에도 영향을 미쳤다.

CBAM과 GSSA의 목적이 환경 보호에 있더라도 국내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정책이 도입되었다면 차별적 성격이 있다. 이는 국가별로 다른 표준과 규제가 국제 무역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으며, 글로벌 표준 설정과 적용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또한, CBAM과 같은 새로운 정책 또한 국제 무역의 투명성과 일관성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하며, 국제 사회에서의 신뢰 구축과 정책의 효과적인 이행이 요구됨을 알 수 있다.

일본과 EU가 2019년 제소한 브라질의 세제인센티브 케이스에서, 브라질은 자동차 및 고기술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여러 세제 혜택 프로그램이 GATT 제20조 (b)에 의거 인간,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과 건강 보호의 일환으로 시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브라질 자동차 산업의 혁신, 경쟁력 강화 및 환경 성능 향상을 목적으로 2012년 도입된 정부 정책인 'INOVAR-AUTO' 프로그램이 차량 안전성 개선과 CO₂ 배출 감소를 목표로 하여 공중 보건 보호에 기여한다는 것이다. 또한,

46) 법무법인 세종 국제통상법 센터, "US vs. India - Solar Cells 사건(DS456, 2016. 10. 14. -상소기구)", 국제법판례·통상법 해설 포털, 2022.6.22

제20조 (g)에 따라 고갈 가능한 천연자원의 보존과 관련된 조치가 허용되므로 브라질은 ‘INOVAR-AUTO’ 프로그램이 석유와 그 부산물의 보존에 이바지한다고 했다. WTO 패널과 상소 기구는 이 프로그램의 차별적인 측면이 이러한 환경 예외 조항 아래에 정당화될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었다. 패널은 차량 안전성 개선과 CO₂ 배출 감소라는 목표가 제20조 (b) 및 제20조 (g)의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했지만, 프로그램의 차별적인 측면이 이러한 목표달성에 필요하지 않다고 결론지었다. 또한, 이 프로그램이 EU와 일본에서 수입된 자동차에 비해 MERCOSUR 국가 및 멕시코에서 수입된 제품에 덜 유리한 대우를 제공하는 것이어서 최혜국대우 원칙에 위배라고 판정했다. 이 판결에 따라 브라질 정부는 프로그램을 재조정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자동차 산업을 지원해야 했다. ‘INOVAR-AUTO’ 프로그램은 브라질 자동차 산업의 혁신과 환경 성능 개선을 목적으로 하였지만, 비차별 원칙의 국제 무역 규범과의 충돌로 인해 수정되어야 했던 사례이다.

환경 예외 조항을 원용한 또 다른 최신 사례는 2021년 EU의 팜유(Palm Oil) 케이스이다. EU는 2019년 재생 가능 에너지 지침(REC II)을 개정하여, 2030년까지 EU의

에너지 사용에서 높은 탄소배출을 일으키는 바이오 연료의 사용을 점진적으로 줄여가기로 정했다. 팜유 바이오 연료가 타깃이 되었다. 이 결정은 주로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와 같은 주요 팜유 수출국들에 영향을 미쳤다. 이들 국가는 EU의 결정이 무역 차별이며 WTO 규정에 위배라고 주장했다. EU는 열대 우림의 파괴와 기후 변화 촉진, 생물 다양성의 손실을 방지하려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EU는 환경 예외 조항을 원용했다. 환경적 이유로 인해 팜유의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제20조에 의거한 정당한 조치라는 것이다. 인도네시아는 EU의 재생가능 에너지 프레임워크인 재생 에너지 지침과 관련된 위임규정 등 WTO의 기술장벽무역협정(TBT)⁴⁷⁾과 보조금 협정을 위반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조치가 무역의 불필요한 장애물을 생성하고, 과학적 증거 및 관련 국제 표준에 의존하지 않으며, 수량적 제한을 부과하고, EU에 의한 법률의 균등하고 공정하며 합리적인 관리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이 주장의 핵심이다. 말레이시아도 EU가 부과한 조치들이 TBT 협정과 보조금 협정에 위배라고 주장했다. 이들 조치에는 EU의 재생 에너지 목표, 토지이용 변화에 따른 간접적인 영향(Indirect Land Use Change; ILUC) 위험도를

47) Technical Barriers to Trade: 국가 간의 서로 다른 기술규정과 표준 등으로 인해 무역에 장애가 발생하는 것을 포괄적으로 일컫는 것으로, 대표적인 비관세장벽 중 하나이다. (KDI 경제정보센터)

평가하는 기준, 그리고 지속 가능성 및 온실가스 배출 절감 기준이 포함되어 있었다. 최종 판결은 아직 내려지지 않았다. EU는 환경의 지속 가능성에 중점을 두고 있는 반면, 주요 팜유 생산국인 말레이시아는 수출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하고 있다. 말레이시아는 EU의 제한이 팜유 산업에 불공정하게 영향을 미치며,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것이다. 이 사례는 재생 에너지 정책과 무역 규범 간의 긴장, 특히 환경 보호를 위한 조치와 WTO 규정 간의 관계에 대한 중요한 논쟁을 제기한다. 이와 유사하게 EU의 CBAM과 미-EU GSSA는 환경 보호를 목표로 하면서도 개도국의 기존 산업에 대한 위협이 되는 차별적인 조치로 작용하고 있다. 개도국과 선진국 간의 갈등 유발 요인이 되고 있다.

라. GATT 제21조 안보상의 예외 합치성

CBAM과 GSSA는 GATT 제21조 안보상의 예외가 원용될 부분이 있다. 안보상의 예외는 국가에 자국의 무역 제한 조치가 국가안보에 부합함을 판단할 권한을 준다. 예를 들어, 기후 변화는 전 세계적으로 안보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극한 기후 현상, 해수면 상승, 자연재해로 인한 대량

난민은 안보 문제로 전이된다. 세계은행의 2050년까지의 분석에 따르면, 기후 변화로 인한 대규모 이주가 예측된다. 동아시아 및 태평양 지역에서는 4,900만 명, 남아시아에서는 4,000만 명, 북아프리카에서는 1,900만 명,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1,700만 명, 동유럽 및 중앙아시아에서는 500만 명이 이주할 것이 예상된다. 가장 심각한 상황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이다. 8,600만 명의 기후 관련 이주민 발생이 전망된다.⁴⁸⁾ 안보상의 예외 조항은 국가가 자국의 안보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 주권적인 판단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원칙이다. 따라서 국가는 기후 변화를 국가안보와 연관해 판단하여 안보 예외 조항을 적용할 수 있다. 관련한 분쟁 사례로는 ‘러시아-교통수단 제한조치’⁴⁹⁾가 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의 분쟁 상황에서 우크라이나로부터 또는 우크라이나를 경유하는 특정 교통수단의 이동을 제한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조치가 WTO의 최혜국대우 및 내국민대우 원칙을 위반한다고 주장했다. 러시아는 GATT 제21조에 명시된 안보상의 예외 조항에 따라 정당화된다고 주장했다. WTO 패널은 2019년 러시아의 조치가 안보상의 예외 조항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이는 WTO 역사상 제21조가 적용된

48) Andrew R. Hoehn and Thom Shanker, “Climate security is national security”, Rand Corporation, 2023.06.30

49) DS512: Russia—Measures Concerning Traffic in Transit

몇 안 되는 사례 중 하나이다. 안보상의 예외 조항이 원용된 판례는 상대적으로 드물다. 이 때문에 명확한 기준을 파악하기가 어렵다. 안보 문제는 성격상 그 국가의 재량적 판단에 달려있어 자의적이다. 미국은 2019년 트럼프 행정부 때 무역확장법 제 232조에 근거하여 철강과 알루미늄, 자동차에 대한 수입 제한조치를 취할 때 안보상의 예외를 원용했다.⁵⁰⁾ 중국은 물론 전통 우방인 무역 상대국에 대한 경제적 압박 수단으로 활용했다. 국가안보라는 목적성이 존재하면 보호무역 조치가 남용될 소지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⁵¹⁾ 그래서 이 조항은 신중하고 제한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예외 조항들로 인한 합치성의 여부는 해석의 여하에 따라 논란의 여지가 다분하다. 실제로 이러한 주장이 WTO의 분쟁 해결 기구에서 어떻게 판단될지는 아직 불확실하다.

4. 보조금 및 반덤핑 관련 이슈

가. 보조금 협정상 보조금 이슈

보조금 협정의 제1조를 보면, 보조금은 정부 또는 정부 지시에 따라 특정 기업에 제공되는 금전적 기여, 수익의 감소, 또는 수입을 증대시키는 조치로 정의된다. 특정

한 이익을 받는 기업이나 산업부문에 제공 경우에만 보조금으로 간주한다. 보조금 협정의 제18조는 자발적 약속(Undertakings)에 관한 것이다. 특정 보조금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보조금을 제공하는 국가는 수입국과 협상을 통해 해당 보조금을 제거하거나 수정하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협상에 실패하면 수입국은 상계조치를 취할 수 있다.

CBAM은 유럽산업의 경쟁력에 이점을 제공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보조금과 유사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보조금 협정의 핵심 요소 중 하나는 ‘특정성’이다. 보조금은 특정 기업, 산업 또는 그룹에 한정되어야 용인된다. 그렇지만, CBAM은 특정한 산업이나 기업 전체를 우대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특정성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 보조금 협정에 따르면, 보조금이 무역을 왜곡하거나 국제 무역에서 부당한 경쟁을 초래하는 경우 문제가 된다. CBAM이 EU 내의 기업에는 이점을 주면서 다른 국가의 수출상품에 불이익을 주게 되면, 이는 무역 왜곡으로 간주할 수 있다. 보조금 협정은 보조금이 무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경우, 해당 보조금을 받는 수출상품에 대해 상대국은 상계 관세 조치할 수 있다

50) 장성길, “국가안보 측면에서의 투자분쟁 검토 및 대응 방안 모색”, 통상법률, 2021

51) 이효영, “경제안보의 개념과 최근 동향 평가”,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2022.04.14

록 규정하고 있다. WTO의 보조금 및 상계 관세 조치 협정은 정부가 특정 산업이나 기업들에 제공하는 재정적 이점을 규제한다. GSSA의 일환으로 어떠한 형태의 금전적 지원이나 이점이 제공되는 경우, 보조금 협정에 따라 다른 회원국들이 불공정한 보조금으로 간주할 여지가 있다. 한편, EU로의 수출국이 환경 비용을 고려하지 않은 물품을 수출하는 것은 보조금 협정 제 1조의 정의에 해당하는 보조금이 아님에도, EU가 이를 보조금으로 간주하여 CBAM을 적용하는 것은 보조금에 대한 상계 관세 조치로 인정이 안 된다.⁵²⁾

한편, CBAM과 GSSA는 특정 산업 또는 기업에 대한 명시적인 지원을 제공하지는 않지만, 이들 기제의 구조가 특정 국가나 기업에 더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자국 내에서 이미 엄격한 환경 규제를 적용받고 있는 기업들은 CBAM과 GSSA 하에서 추가적 영향을 비교적 덜 받을 수 있다. 보조금 협정은 특정 종류의 보조금을 ‘허용보조금’으로 분류하여 무역 왜곡 효과를 발생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정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허용보조금은 그 요건이 엄격하고 복잡하게 설계되어

인정되기 어렵다.⁵³⁾ CBAM이 허용보조금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환경보조금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환경보조금에 대한 요건은 다음과 같다. (i) 일회적이고 비반복적 조치이며 (ii) 적응비용(adaptation cost)의 20% 한정되며 (iii) 기업이 전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지원 대상 투자의 대체 또는 영업비용을 보전하지 않으며 (iv) 기업의 공해 오염 감축 계획에 직접 연계되고 그에 비례하며, 달성될 수 있는 제조비용의 절감을 보전하지 않고, (v) 새로운 설비 또는 생산 공정을 채택할 수 있는 모든 기업이 이용 가능해야 한다.

나. GATT 제6조 반덤핑 이슈

CBAM은 GATT 제6조 및 제6조 시행 협정의 제2조에서 설명하는 덤핑의 정의와도 맞지 않는다.⁵⁴⁾ 제6조는 덤핑과 부정적 보조금에 대한 일반적인 원칙을 다룬다. 덤핑은 특정 상품을 정상적인 가치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출하는 행위이다. 이 조항은 덤핑이나 부정적인 보조금으로 인해 국내 산업에 해를 끼치는 경우, 해당 국가가 반덤핑 또는 상계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제6조 시행 협정의

52) Joachim Englisch and Tatiana Falcão, “EU Carbon Border Adjustments and WTO Law, Part one”, Environmental Law Institute, 10862-10863, 2021

53) 안덕근, “WTO 보조금 협정 연구”, 법무부 국제통상법률지원단 연구총서, 2003.10

54) Englisch supra note 52

제2조는 덤핑의 정의에 관한 조항이다. 덤핑 가격과 일반적인 시장 가격 간의 비교, 덤핑 여부의 판단 기준, 그리고 덤핑의 정도를 어떻게 측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을 제공한다. 반덤핑 협정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규제한다. 무역 상대국이 물품을 저렴하게 판매하여 국내 산업에 손해를 입히는 행위를 제한한다. 물품을 그것의 정상 가치 이하로 판매하는 것은 덤핑으로서 금지한다. CBAM은 상품의 가격에 추가 비용을 부과함으로써, 덤핑으로 간주할 가격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 이는 해당 비용이 특정 국가들의 수출에만 적용되어 그들의 경쟁력을 해치는 경우 더욱 문제가 된다. 또한, 수출 가격은 탄소 제한이 있는 국내 가격이나 탄소의 사회적 비용을 내재화하는 이상적인 시장 가격과 비교되지 않는다. 그것들은 수출국 자체의 정상 가격과 비교된다.⁵⁵⁾

아울러 피해판정은 명백한 증거(positive evidence)에 기초하여야 하며 (i) 덤핑수입 물량 및 덤핑수입품이 동종 상품의 국내 시장 가격에 미치는 영향 및 (ii) 동 수입품이 이러한 상품의 국내 생산자에 미치는 결과적인 영향에 대한 객관적인 검토(objective examination)를 포함해야 한다.⁵⁶⁾

실질적인 피해와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것은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이다. CBAM과 GSSA와 같은 새로운 무역 조치에 적용될 때 더욱 그러하다. 피해 입증을 위해서는 산업의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 관련 경제적 요소를 먼저 고려해야 한다. CBAM과 GSSA는 전통적인 무역 조치와 다르게 작동하므로, 이러한 지표들을 효과적으로 적용하고 측정하는 것은 더욱 복잡하다. 인과관계의 증명은 또 다른 난제이다. EU 측에서 실질적인 피해의 원인이 되는 요소가 다양하고, 덤핑과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설정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 CBAM은 탄소배출량과 관련된 비용을 반영하려 하지만, 이러한 비용이 특정한 경제적 피해와 직접 연결된다는 것은 증명하기 어렵다.

CBAM 및 GSSA는 이러한 반덤핑 조치와 충돌하여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덤핑 관련 또 다른 법리적 쟁점은 제품의 가격이 어떻게 결정되는지에 관한 것이다. CBAM 및 GSSA는 탄소 배출량, 환경 지표를 고려하여 제품 가격을 결정하거나 조절하는 메커니즘을 도입할 수 있다. 이로 인해 다른 국가의 철강 산업과의 경쟁에서 불공정한 이점을 얻을 수 있으며, 이것이 반덤핑 관련 법적 분쟁을 초래할 수 있다.

55) Joost Pauwelyn, "Carbon Leakage Measures and Border Tax Adjustments under WTO Law", Research Handbook on Environment, 2012

56) 외교부 다자통상국 세계무역기구과, "[최근동향] WTO 반덤핑 협정 개요", 2007.12.13

결국, GSSA와 CBAM은 WTO 보조금 협정과 반덤핑 협정에 반하는 정책으로서 WTO에 합치되기 위해서는 GATT 제20조 환경 예외나 제21조 안보상의 예외에 의거해 예외로 인정받는 경우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환경 예외와 안보상의 예외는 국제 무역협정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상황들이다. 그 적용은 엄격하고도 제한적이다. 이러한 조항들은 남용을 방지하고 무역 자유화의 기본 원칙을 유지하기 위해 설계되었으나, 실제 적용 시 명확성 부족과 증명의 어려움이 존재한다. 환경 예외의 경우, 그 조치가 환경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과 최소한의 무역 제한을 입증해야 한다. 안보상의 예외는 국가안보에 필수적임을 증명해야 하는데, 이는 주관적 판단의 여지가 있어 복잡하다. 국제 무역법에서 예외 조항의 적용이 국제 사회의 이익을 반영하고, 무역의 원칙과의 조화를 위한 중요한 과제임을 시사한다.

IV. GSSA와 EU CBAM의 국제적 영향

1. 주요 국가별 대응 및 영향

가. GSSA에 대한 주요 국가의 대응 및 영향

(1) 한국

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EU가 러시아산 철강 수입을 금지한 결정은 한국의 철강 산업에 새로운 시장에 진입할 기회를 제공했다. 지정학적 긴장 상황이 유럽 시장에서의 경쟁 우위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⁵⁷⁾ 2022년 한국 철강 업체들의 유럽 수출은 전년 대비 20.4% 증가하여 약 48억 USD에 달했다는 점이 이를 증명한다.⁵⁸⁾ 2023년 4월, 산업통상자원부는 WTO 규정과 일치하는 체계의 설계를 위해 노력하고, 비슷한 입장인 일본, 영국, 호주 등과 같이 GSSA의 가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한 바 있다.⁵⁹⁾ 그러나 영국 철강업계는 EU와 ETS 연계 방안 등 양자적으로 해결점을 쉽게 찾으려고 하고 있다. 한국은 미 케네디 행정부 당시 타국의 희생 위에 자국의 경기 회복을 도모하는 ‘근린공핍화 정책(beggar-thy-neigh-

57) 강용구, “‘그린 보호무역주의’ 본격화, 국내 철강업계 영향은”, The Bell 자본시장 미디어, 2023.05.17

58) Ibid.

59) Ibid.

bor policy)’이⁶⁰⁾ 공멸을 부르는 부작용을 상기하여 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

(2) 일본

미 트럼프 대통령이 2018년 3월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의거 강철 수입품에 대해 25%의 글로벌 관세 및 알루미늄 수입품에 대해 10%의 관세를 부과하자 캐나다, EU, 그리고 멕시코를 포함한 여타 피해국들은 미국산 제품에 대한 보복 관세를 부과로 대응했다. 그러나, 일본은 보복 조치를 하지 않았다. 일본은 미-EU 간의 GSSA 추진으로 인해 자국 내 생산업체들이 지속할 수 없는 불리한 위치에 놓였다고 주장한 뒤, 2021년 1월 국내 산업의 보호와 국제 무역 환경에서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미국과의 무역협정 재협상을 추진했다. 일본 정부는 미국의 관세 조치가 국제 무역 규칙에 위배라고 주장하며,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에 대한 보상과 더불어 불공정한 무역 장벽 해소를 적극적으로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미국과 일본 사이의 무역 관계는 기존의 동맹 관계의 범주를 넘어 서

로의 경제 이해를 조율하고, 상호 이익을 추구하는 더 폭넓은 협력의 장으로 발전하게 되었다.⁶¹⁾

미-일 협정에 따르면, 2022년 4월 1일부터 미국은 일본에 매년 최대 125만 메트릭 톤의 철강을 관세 없이 수출할 수 있는 저율관세할당물량(TRQ)을 실시하며, 이때 수출되는 철강은 일본 내에서 “용해 및 주입”되어야 한다. 이를 초과하여 수출되는 일본 철강에 대해서는 미국이 25%의 종가세를 부과하게 된다. 그 조건들이 GSSA와 유사하지만, 몇 가지 주목할 만한 차이점들이 있다.⁶²⁾ 가장 분명한 차이점은 미-일 협정이 알루미늄 제품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는다는 것이다. USTR에 따르면, 일본이 비시장경제 국가에서 오는 알루미늄을 보장할 의향이 있다면, 미국은 협정을 확장하여 알루미늄을 포함하는 것에 대해 개방적인 태도를 보이게 된다. TRQ 제품 할당은 2018-2019년의 역사적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이는 2015~2017년을 기준으로 한 미-EU 협정과는 달리, 2018년 제232조의 철강 관세 시행 이후 미국으로의 철강 수출이 급격히 감소했기 때문에, 실질적으

60) 다른 나라의 경제를 희생시키면서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는 정책이다. 대공황 당시 영국을 시작으로 상당수의 국가들이 금본위제를 폐지하고 경기 부양을 위해 자국 통화가치의 평가절하 정책을 실시하였다. (이명환, “근린공평화정책 다시 되풀이 되나?”, 한국금융연구원, 2013.03.30)

61) Douglas J. Heffner, et al., “U.S. and Japan Accord to Ease Section 232 Steel Tariffs”, Faegre drinker, 2022.02.10

62) Ibid.

로 더 낮은 TRQ를 초래한다. 또한, 미-EU 협정에서는 제232조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수입 제품이 TRQ에 포함되지 않을 것을 명시적으로 언급했다. 그러나 미-일 협정에는 이러한 언어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⁶³⁾ 따라서 일본은 이미 미국과의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협의를 어느 정도 이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GSSA에 대한 영향은 한국보다 나은 것으로 판단된다.

(3) 중국 및 인도

GSSA의 주요 목적 중 하나는 철강 산업의 탄소 감축이다. 이는 중국과 인도와 같은 주요 생산 국가에서의 생산 방식과 에너지 사용에 큰 변화를 요구하게 된다. 이 국가들이 협정을 수용하고 실행한다면 전 세계적인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지만, 이에선 자본 투자와 기술 혁신이 필요하다. 중국과 인도가 철강생산 1, 2위 국가인 점에서 GSSA의 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산업 내 변화는 경제적 비용을 수반한다. 이는 생산 비용의 상승, 철강 가격의 변동 및 국제 시장에서의 경쟁력에 영향을 미친다. 노동 시장에도 파장이 있어, 일부 분야에서는 일자리 감소가 발생할 수 있다.

GSSA에 참여하거나 자체적인 환경 기

준을 채택함으로써 중국과 인도는 국제 사회에서의 입지를 강화할 수도 있다. 이들 국가가 지구 환경 보호에 대한 전 세계적인 노력에 기여하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를 보낼 수 있다. 다른 국가들에게도 비슷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할 수도 있다. GSSA는 청정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를 촉진할 수 있다. 이는 중국과 인도가 기술 혁신 분야에서 더 나아가 협력할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기술은 이들 국가의 철강 산업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활용될 수 있다.

나. EU CBAM에 대한 국가별 대응 및 영향

(1) 한국

철강 산업은 고로제철회사, 전기로제강회사, 그리고 가공회사로 구분된다. 첫째, 고로제철회사는 철광석을 기본 원료로 사용하여 고로에서 용강을 추출하고, 이를 철강재로 제련한다. 둘째, 전기로제강회사는 철 스크랩(고철)을 재활용하여 전기로를 통해 철강재를 생산한다. 셋째 유형은 가공회사이다. 고로제철회사나 전기로제강회사에서 생산한 반제품을 추가 가공하여 최종 제품을 생산한다.⁶⁴⁾

63) Ibid.

64) 강용구, *supra* note 57

고로제철회사에서는 탄소배출이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 포스코와 현대제철과 등 국내 기업들은 2050년까지 수소 기반 제철 기술을 포함한 탈 탄소 제철 기술 도입을 계획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전기로의 신설 및 확장으로 CBAM에 대응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전환은 초기 투자비용에다, 운영 및 원료 비용 증가를 초래하며, 최종 제품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다.⁶⁵⁾ 전기로제강회사인 동국제강과 세아그룹의 경우, 탄소배출이 상대적으로 적어 초기 투자비용은 낮지만, 원료비용이 증가하여 제품 가격에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⁶⁶⁾ 반면, 가공회사들은 탄소배출의 압력이 적으나, 원료 비용의 상승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겪을 것이다. 이로 인해 산업 전반에서 원가 상승 압력이 작용하여 최종 소비자에게로 파급이 된다.⁶⁷⁾

EU의 CBAM 정책으로 인한 환경적, 경제적 부담은 국내 철강 산업은 물론 소비자 와 관련 산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산업 구조의 변화와 함께 다양한 도전을

야기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3년 2월, 산업통상자원부는 「저탄소 철강생산 전환을 위한 철강 산업 발전 전략」을 발표했다. 원료-공정-제품-수출로 이어지는 철강 밸류체인에 걸쳐 2030년까지 ① 철 스크랩 산업생태계 구축 ② 세계 최초 수소유동환원 기술개발 ③ 친환경 선박용 고망간강 밸류체인을 완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⁶⁸⁾ 미국에 대해서는 대미 철강 수출쿼터 소진율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쿼터제 운영방식을 개선하고, 중동, 인도, 아세안 등 신흥시장에 대해서도 대형 수주기회 발굴, 무역 장벽 완화 등을 위한 관련 FTA 협상 및 아웃리치를 지속할 계획을 내놓았다.⁶⁹⁾

(2) 일본

일본은 모든 시나리오에서 EU로의 철강수출을 늘릴 수 있다. 일본은 철 및 강철 생산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에너지 효율적이다. 그래서 유럽 수입업체들은 중국이나 인도로부터의 수입보다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에 더 낮은 CBAM 가격을 지불할 것이다.⁷⁰⁾ 일본은 다른 모든 지

65) Ibid.

66) Ibid.

67) Ibid.

68) 김남규, “정부, ‘저탄소 철강생산 전환을 위한 철강산업 발전전략’ 발표”, 대한뉴스, 2023.02.16

69) Ibid.

70) Camille Van der Vorst, Sandra Rousseau, “Japan’s reaction to the EU’s carbon pricing policy-an economic-environmental analysis”, Leuven Centre for Global Governance Studies, 32-34, 2022.12

역으로의 철강 수출을 감소시킬 수도 있다. 이는 일본의 수출에서 그 우선순위의 변화와 관련이 있을 수 있지만, EU가 아닌 지역에서의 경쟁 증가의 결과이기도 하다. 중국, 인도 등 상대적으로 더 에너지 집약적인 생산을 가진 지역의 수출업체들은 유럽 수입업체들로부터의 수요 감소에 직면하고 있으며, 대안 수출 시장을 찾게 될 것이다. 이는 이러한 새로운 시장에서의 경쟁 증가로 이어진다.⁷¹⁾

일본이 EU로의 CBAM 대상 제품 수출을 증가시키는 동안, CBAM 대상 제품의 자국 내 공급은 일본이 EU와 기후클럽⁷²⁾을 형성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감소한다. 게다가, CBAM에 간접 배출의 포함은 직접 배출만을 기반으로 한 CBAM에 비해 CO₂ 배출에 별다른 차이를 가져오지 않는다. 그러나 간접 배출이 포함된 CBAM은 일본이 자체 탄소 가격을 인상하지 않는 경우, 일본의 후생을 더욱 크게 향상할 것이다. 간접 배출의 포함은 다른 지역에 비해 일본 수입에 대한 낮은 CBAM 가격으

로 인해 유럽 수입업체들에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수요를 증가하게 한다.⁷³⁾ 경제적 관점에서 일본이 EU의 CBAM으로부터 염려할 것이 별로 없다. 일본의 주요 철강 회사인 일본제철, JFE, 고베제강은 고로에서의 CO₂ 배출을 감소시키기 위해 혁신적인 접근을 취하고 있다. 2008년부터 이들은 신에너지·산업기술종합개발기구(NEDO)에 위탁해 ‘COURSE 50’(CO₂ Ultimate Reduction System for Cool Earth 50)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이 프로젝트의 목표는 기술의 결합을 통해 철강 생산 과정에서 배출되는 CO₂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것이다. 수소환원 기술을 이용하여 10%의 탄소 절감율, CO₂ 분리·회수기술을 통해 추가로 20%를 줄이려고 한다. 전통적인 고로 방식보다 약 30%의 탄소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된다.⁷⁴⁾ 이는 일본이 자유무역의 옹호자로서 국제적 지위를 손상할 위험을 무릅쓰고 보복 관세를 설치할 이유가 거의 없음을 의미한다.⁷⁵⁾ 일본은 이미 기술적으로나 국제 협력관계로나 CBAM에 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친환경적으로 경쟁력이 높

71) Ibid.

72) 독일의 주도로 2050 탄소 중립 달성과 파리협정의 1.5°C 목표달성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G7 국가를 중심으로 더 적극적인 제도적 장치의 도입과 협력을 추진하는 복수국간 협력체 (이주관·김민성, “다자적 기후클럽 확대 논의 동향과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23.07.24)

73) Van der Vorst, supra note 70

74) 이종형, “[이종형의 철강비전] 1편. 코앞으로 다가온 탄소국경세와 철강사들의 대응”, 포스코 뉴스룸, 2023.11.22

75) Van der Vorst, supra note 70

은 일본 제품 수요 증가로 이어져 오히려 이익을 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 중국

세계 철강생산의 절반, 이산화탄소 배출의 30%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은 2060년 탄소 중립(Net Zero) 글로벌 어젠다에 합류했지만,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는 2021년부터 증산 금지라는 생산 규제 외에는 별다른 조치를 하지 못하고 있다.⁷⁶⁾

CBAM은 에너지 집약적 산업에 파장이 중대하다. 철강, 알루미늄, 비료, 시멘트, 정유, 제지, 유리 및 화학 산업을 포함한다. 중국의 2020년 EU 수출은 약 3,913.4억 USD이다.⁷⁷⁾ 이러한 경제적 연계성의 맥락에서 볼 때, CBAM은 불가피하게 중국의 EU로의 수출에 영향을 줄 것이다. 2020년 중국의 주요 산업 분야에서의 EU 수출을 보면, 철강 37.56억 USD, 알루미늄 13.64억 USD, 비료 0.67억 USD, 시멘트 0.03억 USD이다.⁷⁸⁾ 이 네 분야의 총 수출액은

51.9억 USD로, 대 EU 전체 수출의 1.33%를 차지하고 있다.⁷⁹⁾ 이 수치는 단기적 관점에서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산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⁸⁰⁾

나아가, EU로 수출되는 제품의 탄소 배출량은 철강에서 761만 톤, 알루미늄에서 313만 톤, 비료에서 13만 톤, 시멘트에서 1만 톤으로 총 1,088만 톤에 이른다. 이는 수출 제품의 비용 상승을 초래할 것이다.⁸¹⁾ 또한, CBAM 규정은 수입업체가 그들의 상품의 탄소배출을 보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초기에는 직접 배출에 초점을 맞출 수 있으나, 추후 간접 배출까지 고려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러한 변화는 중국 기업의 EU 시장 내에서의 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상업적 전략의 재평가를 요구하게 될 것이다.⁸²⁾ 중국은 CBAM으로 인해 심각한 위기를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철강을 비롯한 여러 산업의 구조를 EU의 기준에 맞게 변화시키려는 중국 정부의 대책 마련과 함께, 국제 협

76) 이종형 *supra* note 74

77) 박재현, “EU탄소국경조정에 대한 중국 정부와 기업의 대응방향 및 시사점”, 중국전문가포럼 CSF, 2022.06.23

78) UN Comtrade

79) 박재현 *supra* note 77

80) Ibid.

81) Ibid.

82) Ibid.

력 강화가 절실할 것으로 보인다.

(4) 인도

인도는 2019년부터 2021년 동안, 연평균 국가 총수출의 14.64%를 EU로 보냈다. 그렇지만, 같은 기간 CBAM 부문이 인도 총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6.51%에 불과하다.⁸³⁾ 중국, 튀르키예, 러시아, 우크라이나보다 훨씬 적다. 특히, 인도의 전력, 시멘트, 비료, 철강과 알루미늄의 대 EU 수출은 총수출의 평균 1.3%이다.⁸⁴⁾ 따라서, CBAM이 이러한 다섯 가지 고탄소 제품에만 적용된다면, 총수출량의 관점에서 볼 때 인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다. 그러나 인도의 EU 수출을 고려하면 인도 수출의 50% 이상이 CBAM 제안에 포함되어 인도의 유럽 수출에 타격을 줄 것이다.⁸⁵⁾ 세부적으로 철강과 알루미늄 부문이 EU로의 인도 수출에 CBAM이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크다. 2019-2021년 EU로의 총수출에 대한 철강 수출 비율이 평균 7.4%이다. 동일 기간 EU로의 총수출에 대한 알루미늄 수출 비율은 평균 1.6%이다.

비료의 수출 비중은 0.0007%로 미미하다.

시멘트와 전력의 수출은 전혀 없었다.⁸⁶⁾

탄소강도 측면에서 인도 제품은 석탄이 전체 에너지 소비를 지배하기 때문에 EU 및 많은 다른 국가들보다 훨씬 높다. 인도 석탄부(Ministry of Coal)에 따르면 석탄 발전 비중은 75%에 가깝다. 이는 EU(15%)와 전 세계 평균(36%)보다 훨씬 높다.⁸⁷⁾ 따라서 철강과 알루미늄의 직접적 및 간접적 배출은 더 높은 배출이 더 높은 탄소 관세로 해석될 수 있어 인도로서는 주요한 우려 사항이다.⁸⁸⁾

또한, CBAM은 측정-보고-검증(Monitoring-Reporting-Verification)과 같은 증가한 규정 준수비용 측면에서 유럽 시장으로 수출하는 산업에 도전적이다. CBAM의 현재 범위는 몇 가지 부문으로 제한되어 있을 수 있지만, 앞으로 정제 석유 제품, 유기 화학 물질, 제약 제재, 섬유 등 다른 부문으로 확장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제품들은 EU가 인도로부터 수입하는 상위 20개 상품을 구성하고 있어서⁸⁹⁾ 인도 수출에 부정

83) Aishwarya Pathak, "Impact of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on India", Times of India, 2023.01.28

84) Ibid.

85) Ibid.

86) Ibid.

87) Ibid.

88) Ibid.

89) Eurostat

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더욱이 인도에는 국내 탄소 가격 책정 제도가 없어 수출 경쟁력이 더 큰 위협에 처해 있다. 이러한 시스템이 있는 다른 국가들은 더 적은 탄소세를 납부하거나 면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⁹⁰⁾

2. 국제적 분쟁 및 협력의 가능성

2015년 12월 전 세계 거의 모든 196개 국가가 동의하여 체결한 파리협정(Paris Agreement)은 글로벌 기후 변화에 따른 탄소 감축의 필요성과 의무를 강조하고 있다. 각국은 발전 단계나 동류 국가끼리의 협력을 강화하고, 양자 혹은 다자간에 협의 과정에서 개도국의 입장을 잘 담아내야 했지만,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입장 차는 더욱 심화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기후 변화 대응의 목표 설정을 높게 하고 규제적 성격의 조치를 해 놓아야 글로벌 공공재인 환경문제를 해결할 유인이 생긴다는 측면에서는 높은 규제가 불가피한 점이 있다. 그러나, 2007년 이후 개도국의 탄소 배출량이 선진국의 배출량을 앞선 통계를 볼

때, 그리고 중국, 인도의 국가적 감축 목표가 여타 선진국보다 그 변동이 미미한⁹¹⁾ 점을 고려할 때, 개도국의 참여를 규제와 협력의 조화를 통해 끌어내는 것이 탄소 감축에 관건이라고 볼 수 있다. CBAM에 대해서는 인도가 WTO 제소 의사를 표명하는 등 이미 개도국 불만이 노출된 상황이다. CBAM과 GSSA가 WTO의 비차별적 원칙에 어긋나는 점이 있어 각국의 이해관계가 갈리는 것이다. 또한, 미국은 CBAM에 대해, EU는 GSSA에 대해 각각 서로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이 아직 있다.

그런데 포스코는 2022년 8월 ‘수소환원제철 국제포럼’에서 지난 10년간 기존 탄소용광로 방식에서 탈피해 탄소 중립을 이룰 수 있는 수소환원제철기술 개발 과제를 발표했다. 2022년 7월 말에는 영국 플랜트건설사인 프라이메탈스(Primetals)와 수소환원제철 데모 플랜트 설계에 들어갔다.⁹²⁾ 또한, 이탈리아 엔지니어링 기업인 테노바와 광양제철소에 도입할 콘스틸(Consteel)⁹³⁾ 방식의 아크로 전기로 설비 공급계약을 맺었다.⁹⁴⁾ 한국은 ETS 운영의 경험 축적과

90) Pathak supra note 83

91) 이대호, “Understanding the Climate Change Regime: The Promises and Problems of the Paris Agreement”, CSDLAP, 2023.11.04

92) 이종욱, “포스코형 수소환원제철 기술 ‘2050 탄소중립’ 선도한다.”, 경북일보, 2022.08.25

93) 일반적인 전기로로서 전기로 원료인 철 스크랩을 컨베이어를 통해 연속 자동 장입시키며, 철 스크랩이 전기로 입구에서 예열되어 전기로 전력원 단위를 절감시키는 설비(스틸데일리, 2011.10.28)

94) 김세움, “포스코, 伊 테노바와 전기로 설비 공급계약 체결…2025년 말 생산 개시”, 페로타임즈, 2023.06.08

수소환원제철 등의 기술개발 투자와 협력 등 비교적 유리한 위치에 놓여있다. CBAM과 GSSA가 한국에 끼치는 영향은 부정적이지만은 않을 것이다.

V. GSSA와 EU CBAM의 비교 분석 및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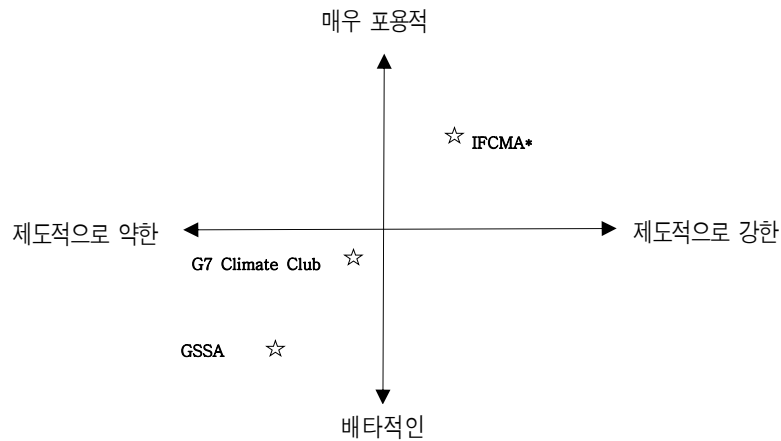
1. GSSA와 EU CBAM의 유사점 및 차이점

GSSA와 CBAM은 모두 기후 변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의 일환임을 내세운다. 각각의 목표와 접근 방식에서 유사점과 차이점이 있다. 이는 각 메커니즘의 효과성과 영향력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요소이다. 유사점으로는 두 기제 모두 환경을 보호하며, 탄소배출 감소를 겨냥하고 있다. 지구 온난화 방지와 기후 변화에 대한 글로벌 대응 강화이다. 탄소 고배출 산업, 특히 철강 산업의 탄소 강도를 줄이려는 노력을 공유한다. 이는 철강 생산 과정에서 에너지 효율성 향상과 재생 가능 에너지 원천의 활용 증가를 통해 이루어진다.

차이점이라고 하면, 구현 메커니즘이 다르다. GSSA는 철강 산업의 글로벌 참여자들 사이의 협약이다. 주로 자발적 탄소 감축 목표 설정과 기술 혁신을 통한 에너지 효율성 향상에 중점을 둔다. 반면, CBAM은 수입 제품에 대한 탄소 가격을 부과함으로써, 지역 내외의 생산자들 사이에 경쟁 조건을 평등하게 하려는 규제 방식을 취하고 있다. 또한, CBAM은 EU의 국경을 넘어 수입되는 상품에 적용되므로, 외부 생산자들에게 직접적인 경제적 영향을 미친다. 그렇지만 GSSA는 글로벌 철강 산업 내의 협력을 통해 간접적인 영향을 추구한다. 아울러 CBAM은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규제적 조치로서, 준수하지 않을 경우, 법적 책임이 발생한다. GSSA는 미-EU 간의 협정이어서 배타적이지만 상대적으로 유연한 협약이다. 참여자들에게 서로 협력하고 자발적으로 목표를 달성할 것을 촉구한다.

<도표 1>은 GSSA의 포용성 및 제도적으로 약한지, 강한지의 정도를 여타의 유사한 탄소 감축 관련 협의체와 비교한 것이다.

<도표 1> GSSA의 포용성 및 제도적 강약의 정도



출처: Harro Van Asselt, "International Cooperation on Border Carbon Adjustments: Assessing the Options", 2013.10.31

* IFCMA: Inclusive Forum on Carbon Mitigation Approaches, 2022년 6월 시작, OECD를 중심으로 한 탄소 감축 목표를 지향하는 협의체

<도표 1>은 GSSA가 포용적이지 않으며, 제도적으로 약할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러한 유사점과 차이점을 통해 GSSA와 CBAM이 상호 보완적인 방식으로 기후 변화 문제에 대응하고 있다. CBAM은 경제적 촉진제 역할을 하며, GSSA는 산업 차원에서의 협력과 기술 혁신을 통한 탄소 감소를 목표로 한다.

2. 통상법적 쟁점의 시사점

무역의 비차별성은 WTO 규정의 핵심이다. 국가들이 서로 다른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유사한 상품에 대해 차별적인 대우를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CBAM의 경우, 탄소배출 비용이 포함된 국경 조정 세금은 일부 국가의 수출 상품을 불리하게 만들

수 있다. 이는 국가 간 무역에 대한 차별로 간주된다. 따라서 CBAM이 WTO의 최혜국대우 원칙에 어긋나지 않도록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다. GSSA와 CBAM 모두 환경 보호 목적을 명확히 하고 있지만, 이러한 조치가 국제 통상 법률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GSSA의 경우, 이 협정을 통해 실행되는 각종 환경 기준이나 규제가 협정 당사국이 아닌 국가들에 불이익을 주지 않아야 한다. 국제 경쟁에서의 공정성을 유지해야 한다. 또한, CBAM이 구현됨으로써 일부 기업이나 국가가 불이익을 받는다면, 그 결과로 시장 왜곡이 초래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높은 탄소 비용으로 인해 특정 상품의 가격이 상승하면, 소비자들은 더 낮은 가격의 상품을 선택할 수 있다. 이는 국제 시장에서의 균형을 깨

뜨린다. 특히 탄소 강도가 높은 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왜곡을 최소화하는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GSSA와 CBAM의 효과적인 실행은 국제적인 협력과 이해관계자 간의 깊은 협의를 요구한다. 특히, 개발도상국들은 이러한 정책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추가적인 지원과 시간이 필요하다. 이에 대한 고려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기후 위기에 직면하여 미국과 EU가 추진 중인 환경 중심의 규제적 성격의 통상 정책은 지속 가능한 철강 제조와 교역이라는 방향 설정에서 불가피하다. 그렇지만, 중국, 인도 등 정책의 타깃이 되는 국가에 대해서도 협력과 중재자적인 활발한 의사소통을 통해 두 기제가 무역 분쟁과 선진국·개도국 간 대립으로 귀결되지 않도록 해야 지속이 가능하다. 이 두 기제는 이해관계국들의 결합한 노력이 있고 나서야 비로소 지속 가능한 철강 산업의 발전과 기후 변화의 글로벌 대응 강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것이다.

VI. 결론

선진국 중심으로 보호무역주의적 경향을 띤 조치가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글로벌

정치경제의 불안정성이 글로벌 공급망에 어떠한 파장을 불러일으킬지, 그리고 이로 인해 어떠한 경제적 기회가 열릴지가 주목된다. GSSA와 CBAM 모두 WTO의 기본 원칙에 해당하는 비차별적 조치에 위배될 수 있다. 그러나, 글로벌경제는 저성장과 기후 변화에 대응해 새로운 규칙을 협력하여 만들어 가야 하는 상황에 놓여있다. 한국은 기존의 레버리지를 충분히 활용하되 비교적 준비가 잘되어 있는 일본의 대응 전략을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미국과 EU에는 한국 산업계의 역량과 의지를 적극적으로 표명하고 주장을 해가되, 미국, EU의 입장을 추격하기보다 이들의 대척점에 있는 중국과 인도 입장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 자발적 참여를 유발하기에는 문제의 성격상 불충분하다. 규제해야 할 것은 선진국과 협의하여 조항을 만들되, 협력할 사안을 충분히 발굴하는 가교역할이 그것이다. 이를 통해 선진국과 개도국의 탄소배출의 역사적 과오차이에 대해 논리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영국은 1971년 탄소배출의 정점을 기록해 ‘넷제로(Net-Zero)’의 목표를 80년 동안에 이루는 긴 시간이 있었던 반면에 한국은 27년 만에 탄소 감축을 이루어야 한다. 출발선 자체가 다르다.⁹⁵⁾ 탄소 감축은 전

95) 이대호 *supra* note 91

세계의 동참이 필요한 공공재 관리에 해당한다. 중국과 인도 등의 준비가 덜 되어 있는 국가들과도 협력하여 갈등을 최소화하도록 WTO 분쟁 해결 기구 등 역할을 다시 재점검하는 것이 요구되는 이유이다.

미국과 EU는 중국 등 비시장경제국에 대해 공동 관세를 부과하는 안을 협의 중이다. 이는 협상 시한을 늘려 잡은 GSSA와 같은 협정 형태의 일환이다. 2023년 10월 11일 GSSA 임시 협정과 관련해 미국과 EU는 ‘친환경 철강 클럽’에 속하지 않은 국가에 10~25%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⁹⁶⁾ 한국은 이와 같은 변화 상황을 모니터

링하면서 새로운 협정을 만들고 제안하는 대열에 들어야 할 것이다. 미·중 경쟁 구도가 장기화하고 코로나19 팬데믹의 종식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등 지정학적, 지경학적 요인의 국제 통상적 여파 속에서 더디더라도 다자가 동의할 수 있는 협력 체계를 만들어나가는 것이 빠른 길이다. 강대국 간의 보호무역주의적인 냉혹한 이해 다툼을 한국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글로벌 지표(indicator)로 자리매김하는 국가적 역량을 발휘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96) 박현욱, “EU-미국 GSSA, 20일 방향성 잡힐까...국내 철강업계도 촉각”, 스틸데일리, 2023.10.17

참 고 문 헌

국내문헌

강용구, “‘그린 보호무역주의’ 본격화, 국내 철강업계 영향은”, The Bell 자본시장 미디어, 2023.05.17

고준성, “미-EU간 GSSA 논의 동향 및 전망”, 월간 철강보 10월호, 2023.10

기획재정부, 시사경제용어사전, “수퍼301조”(2024.02.14. 방문)<<https://www.moef.go.kr/sisa/dictionary/detail?idx=1564>>

김남규, “정부, ‘저탄소 철강생산 전환을 위한 철강산업 발전전략’ 발표”, 대한뉴스, 2023.02.16

김민지, “대 EU 수출 CBAM 적용 품목 비중” 연합뉴스, 무역협회, 산업통상자원부, 2023.09.26

김세음, “[무역통계] 철강 수출 3개월 연속 ‘증가세’ …유럽 북미向 실적 견인”, Ferro Times, 2023.05.11

_____, “포스코, 伊 테노바와 전기로 설비 공급계약 체결… 2025년 말 생산 개시”, Ferro Times, 2023.06.08

김세진, “9월 2주차 국내 ESG 핫클립”, Impact On, 2023.09.14

김호철, “탄소국경조정 도입의 WTO 합치성 쟁점: GATT 제2조, 제3조, 제20조”, 통상법률, 2021

라울리, 찰스 외 2인, 미국 보호무역의 정치 경제학, 대외정책연구원, 1999

무역협회, “해 넘기는 미-EU 철강협상...급한 불렸지만 내년 미대선 변수”, 2023.12.29

박재현, “EU탄소국경조정에 대한 중국 정부와 기업의 대응방향 및 시사점”, 중국전문가포럼 CSF, 2022.06.23.

박현욱, “EU-미국 GSSA, 20일 방향성 잡힐까... 국내 철강업계도 촉각”, 스틸데일리,

2023.10.17

박효민, “EU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BAM)의 WTO TBT 협정 합치성- 환경, 기술, 그리고 TBT협정 간 관계 모색”, 법제논단, 2022.02

법무법인 세종 국제통상법 센터, “US vs. India-Solar Cells 사건(DS456, 2016. 10. 14. -상소기구)”, 국제법판례·통상법 해설 포털, 2022.6.22

설송이, “미국통상법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무역협회, 2018.07.10

스틸데일리, “[철강기술 심포지엄] 동부제철, ‘콘스틸’ 분진·소음·전극 절손 적어”, 2022. 10.28

안덕근, “WTO 보조금 협정 연구”, 법무부 국제통상법률지원단 연구총서, 2003.10

외교부 다자통상국 세계무역기구과, “[최근동향] WTO 반덤핑 협정 개요”, 2007.12.13

이대호, “Understanding the Climate Change Regime: The Promises and Problems of the Paris Agreement”, CSDLAP, 2023.11.04

이명환, “근린공유평화정책 다시 되풀이 되나?”, 한국금융연구원, 2013.03.30

이정민, “미국-EU ‘지속가능한 철강 알루미늄 합의’(GASSA) 동향 및 전망”, Kotra 해외 시장 뉴스, 2023.06.23

이정아, “탄소국경조정의 국제통상법적 분석: EU의 CBAM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23

이종욱, “포스코형 수소환원제철 기술 ‘2050 탄소중립’ 선도한다.”, 경북일보, 2022.08.25

이주관·김민성, “다자적 기후클럽 확대 논의 동향과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23.07.24

이재형, “기후변화상품에 대한 특별대우와 국제통상규범”, 법학연구, 20(2). 29-58, 2010

이천기·박지현·박혜리, “EU 탄소국경조정 메커니즘에 대한 통상법적 분석 및 우리 산업에의 시사점”, KIEP, 2021.07

- 이효영, “경제안보의 개념과 최근 동향 평가”,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2022.04.14
- 인사이드트레이드, “美 빌 캐시디 상원의원, 청정무역 촉진 및 中 대응 위한 ‘해외오염 관세’ 법안 발의”, 무역협회, 2023.11.03.
- 장성길, “국가안보 측면에서의 투자분쟁 검토 및 대응 방안 모색”, 통상법률, 2021
- 포스코 뉴스룸,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한국 철강 시장”, 2020.08.26.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KBA Europe, “영국 에너지 철강업체, 영국-EU 배출권거래제 도 연계 협상 추진 촉구”, 2023.11.07
- 한국수산물무역협회, TRQ(Tariff Rate Quota, 저율관세율할당물량) 제도란?(2024.1.20. 방문)
<<http://www.kfta.net/TRQAuction/Introduce/>>

외국문헌

- Bhagwati, J., The World Trading System at Risk,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1
- Englisch, Joachim and Tatiana Falcão, “EU Carbon Border Adjustments and WTO Law, Part one”, Environmental Law Institute, 2021
- Heffner, Douglas J. et al. “U.S. and Japan Accord to Ease Section 232 Steel Tariffs”, Faegre drinker, 2022.02.10
- Hoehn, Andrew R. and Thom Shanker, “Climate security is national security”, Rand Corpration, 2023.06.30
- Internatinal Energy Agency, “Global CO₂ emissions in 2019”, 2020.02.11
- Mehling, Michael, “Adjusting Carbon at the U.S. Border & Some Legal Considerations”, MIT Center for Energy and Environment Policy Research, 2021.03.17
- Office of the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Executive office of the President, “Fact Sheet: US-EU Arrangements on Global Steel and Aluminum Excess Capacity and Carbon Intensity, 2021.10

- Pathak, Aishwarya, “Impact of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on India”, Times of India, 2023.01.28
- Pauwelyn, Joost, “Carbon Leakage Measures and Border Tax Adjustments under WTO Law”, Research Handbook on Environment, 2012
- Rowley, Charles K., Willem Thorbecke, Richard E. Wagner, Trade Protection in the United States, Edward E. Elgar, 1990
- Simon, Julia, “China is building six times more new coal plants than other countries, report finds”, NPR, 2023.03.02
- Snape, Richard H., Discrimination, regionalism and GATT, University of Chicago Press, 7, 1993
- Van Asselt, Harro, “International Cooperation on Border Carbon Adjustments: Assessing the Options”, Climate Strategies, 2013.10.31
- Van der Vorst, Camille, Sandra Rousseau, “Japan’s reaction to the EU’s carbon pricing policy-an economic-environmental analysis”, Leuven Centre for Global Governance Studies, 32-34, 2022.12
- Vreeland, James raymond, “Corrupting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nual Review of Political Science, 2019.05
- White House, Fact Sheet: The United States and European Union to negotiate world’s first carbon-based sectoral arrangement on steel and aluminum trade”, 2021.10.31.

GATT/WTO 케이스

- GATT Panel Report, “United States-Taxes on Petroleum and Certain Imported Substances” (L/6175 - 34S/136)
- WTO Panel Report, “United States—Measures Concerning the Importation, Marketing and Sale of Tuna and Tuna Products”, (WT/DS381/R)

- WTO Appellate Body Report, “Japan-Taxes on Alcoholic Beverages”, DS8 (WT/DS8/AB/R)
- WTO Appellate Body Report, “European Communities—Measures Affecting Asbestos and Products Containing Asbestos”(WT/DS135/AB/R)
- WTO Appellate Body Report, “United States-Standards for Reformulated and Conventional Gasoline”(WT/DS2/1)
- WTO Panel Report, “Brazil—Measures Affecting Imports of Retreaded Tyres” (WT/DS332/R)
- WTO Panel Report, “India—Certain Measures Relating to Solar Cells and Solar Modules” (WT/DS456/R)
- WTO Panel Report, “Brazil—Certain Measures Concerning Taxation and Charges”(WT/DS472/R)
- WTO Panel Report, “Russia—Measures Concerning Traffic in Transit” (WT/DS512/R)
- WTO, “European Union—Certain measures concerning palm oil and oil palm crop-based biofuels” (WT/DS593/1)
- WTO, “European Union and certain Member states—Certain measures concerning palm oil and oil palm crop-based biofuels”(WT/DS600/1)

[국문초록]

글로벌지속가능철강협정(GSSA)과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의 국제통상법적 영향과 대응:

글로벌 철강 시장과 탄소배출 규제를 중심으로

조문영·정서용

미국은 EU와의 글로벌지속가능철강협정(US-EU GSSA), EU는 탄소국경조정제(CBAM)를 각각 진전시켜 탄소 고배출 제품에 대한 통상규제에 나서고 있다. 이 두 기제는 기후 변화에 직면하여 철강 산업 등의 탄소배출을 줄이는 환경 보호가 공통의 목적이지만, 개발도상국 입장에서는 보호 무역주의로 인식된다. WTO의 비차별 원칙을 위배하는 조치여서 국제통상법적인 관점에서 논란의 여지가 많다. 본 연구는 GSSA와 CBAM의 배경과 주요 내용을 분석하고, 1980-2021년 GATT/WTO의 양허관세, 환경 예외 조항과 안보상의 예외에 원용된 판례와 법리를 정리한다. 그리하여 국제통상법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는 것인지를 분석한다. 또한, WTO 보조금과 반덤핑 협정과 관련된 주요 이슈도 다룬다.

한국은 수출 주력인 철강 산업이 그 환경 규제에 직면해 있다. 이 연구는 한국 철강 산업은 물론 중국, 일본과 인도의 그것에 미치는 영향, 그 국가들의 대응 전략을 살펴본다. 그리고 국제 통상 분쟁과 협력의 가능성을 탐색한다. GSSA와 CBAM의 유사성과 차이점 비교를 통해 한국이 글로벌 환경 규제의 새로운 흐름 속에서 전략적으로 어떻게 위치를 잡아야 할지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해 본다. 나아가 국제 사회에서 한국이 어떻게 더 포용적인 통상 파트너로서, 글로벌 통상의 지표 국가(indicator)로 자리매김할지를 제안한다.

주제어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US-EU 글로벌지속가능철강협정(GSSA), 철강 산업, 환경 예외, 안보상의 예외, 보호무역주의

[Abstract]

The Implications in the International Trade Law and Responses of the Global Arrangement on Sustainable Steel and Aluminum (GSSA) and the EU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CBAM):

Focusing on Global Steel Market and Carbon Emissions Regulation

Moon Yung Cho·Suh-Yong Chung

This study analyzes the progression of the US-EU Global Arrangement on Sustainable Steel and Aluminum(GSSA) and the EU's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 which are pivotal in regulating trade of high carbon-emitting products like steel amid climate change. While these initiatives aim to reduce carbon emissions in industries such as steel for environmental protection, they are perceived as protectionist measures by developing countries, raising potential conflicts with the WTO's non-discrimination principle. This research delves into the background and key elements of GSSA and CBAM, and evaluates their alignment with international trade law by examining GATT/WTO Schedules of Concessions, environmental and security exceptions cases during the period from 1980 to 2021, to assess their compatibility. The study also covers major issues related to WTO subsidies and anti-dumping provisions.

Furthermore it delves into the impact of these environmental regulations on the steel industries of key exporting countries, not only South Korea but China, Japan, and India also and explores their response strategies. The potential for international trade disputes and cooperation in light of these developments is also touched upon. By comparing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between GSSA and CBAM, the study draws implications for South Korea's strategic positioning in the evolving global environmental regulatory landscape. Additionally it proposes how South Korea can establish itself as a more inclusive trading partner and an indicating state in global trade standards.

Keywords: EU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US-EU Global Arrangement on Sustainable Steel and Aluminum, Steel Industry, Environmental Exceptions, Security Exceptions, Protectionism

제66차 UN 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제4실무작업반 논의 동향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검사 최 형 규

1. 회의 개요

UN 국제상거래법위원회(이하 ‘UNCITRAL’) 제4실무작업반(이하 ‘제4작업반’)의 제66차 회의가 2023. 10. 16.부터 10. 20.까지 비엔나 UN 본부에서 개최되었다.

회의에는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미국, 독일, 스페인, 캐나다, 프랑스, 일본, 중국, 러시아 등 42개 회원국과 이집트, 파라과이, 필리핀, 포르투갈 등 13개 옵저버 국가의 정부대표단들이 참석하였다.

또한 IMF(International Monetary Fund), HCCH(Hague Conference on Private International Law), ALI(American Law Institute), ELI(European Law Institute), ICC(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등 다양한 국제기구 및 비정부기관도 참석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계약에서의 자동화와 AI의 사용(the use of artificial intelligence and automation in contracting)’ 및 ‘데이터

제공 계약(data provision contracts)’이라는 두 가지 주제에 대해 전반적인 논의를 진행하였고, ‘계약에서의 자동화와 AI의 사용’에 대해서는 사무국이 제시한 원칙 규정을 토대로, ‘데이터 제공 계약’에 대해서는 사무국이 제시한 조문안을 토대로 논의가 진행되었다.

2. 주요 논의 사항

가. 계약에서의 자동화와 AI의 사용

1) 제1원칙 계약에서 자동화 시스템의 사용

자동화된 시스템과 그 사용 형태 등 기본적인 내용을 제시하는 제1원칙의 규정에 대해 여러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 원칙은 계약에 자동화를 사용하는 것에 관한 내용으로 계약 조건 생성을 위해 AI 시스템을 사용하는 등 계약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자동화된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에 대

한 것이 아니며, 자동화 시스템이 계약의 여러 단계에 걸쳐 사용될 수 있으므로 인간의 다양한 개입이 필요하다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또한, 계약 해지와 관련하여 자동화된 시스템이 사용되는 경우도 명시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그 외 정의와 용어에 대한 다양한 방향의 의견이 제시되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회의에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 제2원칙 법적 효력

제2원칙은 계약의 형성 및 이행 등에 자동화된 시스템을 사용하더라도 효력이나 집행가능성이 부정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주기적 또는 지속적으로 생성 및 처리되는 동적 정보가 자동화된 시스템을 적용하여 계약 체결 후 계약 조건에 포함되는 경우를 위한 세부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제2원칙에 대해 다양한 논의가 있었으나 결국 사무국이 제안한 원칙 규정에 대체로 동의하는 입장이었다.

3) 제3원칙 기술중립성

제3원칙은 자동화된 시스템에서 특정한 방법을 사용할 필요가 없다는 기술중립성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제4작업반은 자동화 시스템은 신뢰할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는 요건이 추가적으로 필요하

다는 다수 의견에 따라 “해당 방법이 신뢰할 수 있는 경우에”라는 표현을 추가하는 것을 제안하기로 하였다.

4) 제4원칙 귀속

사무국이 마련한 제4원칙은 자동화된 시스템에 의해 생성되거나 전송되는 데이터 메시지가 원칙적으로 운영자에게 귀속되고 예외적으로 당사자들의 합의 또는 운영규칙에 따라 귀속된다는 내용이다. 실제 법상 효력과 관련한 데이터 귀속 개념 정립의 중요성과 제4원칙과 같이 귀속에 대한 규정을 두는 것에 대해서는 다수 지지가 있었으나, 제4원칙의 구성과 표현에 대해서는 다양한 수정 의견이 있었다.

자동화된 시스템의 다양한 사용 사례와 계약 당사자, 서비스 제공업체, 시스템 설계자, 시스템 담당관, 시스템 운영자 등 다양한 역할별 고려를 통해 제4원칙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제4작업반은 MLEC(UNCITRAL Model Law on Electronic Commerce) 제13조에 따른 당사자 간의 귀속에 초점을 맞추어 제4원칙을 재구성하기로 합의하였다. 당사자들의 합의 또는 운영규칙에 따른 귀속을 제4원칙의 첫 번째 항으로 하고, 합의가 없는 경우 원칙적으로 운영자에게 귀속된다는 내용은 계약 전 과정에서의 자동화된

시스템 사용과 관련하여 적용되도록 구성하며, 귀속되는 데이터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결과에 대해서는 제4원칙이 다루지 않는다는 내용은 유지하기로 하는데 다수의 지지가 있었다.

5) 제5원칙 당사자의 의사, 인식

법에서 당사자의 주관적 요소를 요구하는 경우, 시스템의 설계 및 운영과 관련한 적절성 여부에 따라 요건 충족 여부가 판단된다는 내용의 제5원칙에 대해서는,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원칙인지 의문이 있고, 어떻게 적용될지 그 목적을 명확히 하기 위해 재구성해야 한다는 등의 의견이 있었으나, 논의 끝에 문구를 일부만 수정하여 유지하는 것으로 합의되었다.

6) 제6원칙 데이터 오류의 법적 효과

데이터가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생성되는 등 계약 당사자가 데이터에 의존할 수 없는 경우를 규정하는 제6원칙은 실제 운영 방식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삭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고, 예상치 못한 결과에 대처하기 위한 다른 가능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 MLEC (UNCITRAL Model Law on Electronic Commerce) 제13조 제5항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사무국이 제시한 제6원칙에 대해서는 대체로 재검토가 필요하

는 의견이었다.

7) 제7조 적용법의 준수

사무국이 제시한 제7원칙은 ‘자동화 시스템을 운영하는 사람은 자동화 시스템의 설계, 운영 및 사용이 해당 법을 모두 준수함을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으나, 이에 대하여 시스템 운영자 대신 계약 당사자의 의무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의견, 관련 법을 준수하도록 보장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과중하다는 의견, 계약 당사자가 관련 법 준수를 회피하기 위해 자동화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재작성해야 한다는 의견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제시된 의견들을 토대로 제7원칙은 ‘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동화된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이 관련 법률 또는 계약을 준수하지 않거나 그러한 불이행으로 인한 법적 결과를 부담하지 않기 위한 유일한 근거로 사용될 수 없다’는 내용으로 수정하기로 논의되었다.

나. 데이터 제공 계약

1) 제1조 정의, 제2조 적용범위

사무국이 제시한 제2조 중 적용 대상을 포괄적으로 데이터 제공 계약으로 규정한 부분에 대하여 데이터 계약이 지속적으로

진화하고 있으므로 포괄적이지 않은 계약 유형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2) 제5조 제공방식

사무국이 마련한 제5조는 일반적 데이터 제공방식으로 ‘데이터 수신자가 지정한 데이터 시스템에 자료를 전달하거나, 데이터 공급자의 통제하에 있는 데이터 시스템에서 데이터 수신자 또는 데이터 수신자가 지정한 사람이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매우 다양한 문구 재구성 의견이 제시되었다. 데이터 제공자에게 제공방식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하는 사무국 제시안은 당사자의 예측가능성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었고, 데이터에 ‘접근 가능’한 정도만을 요구하는 것은 불충분하다는 우려도 제기되었다.

논의 결과 데이터의 능동적(예: 전송) 및 수동적(예: 접근 권한 부여) 제공을 모두 포함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문구를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의 지지를 받았다.

3) 제7조 데이터의 적합성

제7조 중 데이터 제공계약 준수의 요건으로 ‘1. 계약 체결 당시 데이터 수신자에게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알린 특정 목

적에 적합한 경우(데이터 수신자가 데이터 제공자의 기술과 판단에 의존하지 않았거나 그 의존이 불합리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 2. 데이터 공급자가 샘플 또는 모델로 제공한 데이터의 특성을 갖춘 경우, 3. 데이터 공급자가 데이터와 관련하여 제시한 모든 설명에 부합하는 데이터의 품질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4. 합법적으로 제공된 경우’를 병렬적으로 규정하는 점에 대해서는 요건들이 선택적으로 적용되어야 하고 중첩적으로 적용될 필요는 없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또한, 합법적으로 데이터를 제공한 경우는 다른 항목들과 병렬적으로 규정할 것이 아니라 별도 독립 조항으로 구성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사무국 제시안 제7조 중 ‘데이터 수신자는 데이터를 발견한 후 합리적인 시간 내에 데이터 제공자에게 이를 통지해야 한다’는 부분과 ‘데이터 제공자와 데이터 수신자는 데이터의 적합성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는 부분은 구제방법과 관련된 내용이므로 제10조로 옮겨야 한다는 점에 대해 대체적인 동의가 있었다.

4) 제9조 파생 데이터

사무국이 제시한 제9조는 ‘데이터 수신자는 데이터를 이용하여 생성하는 파생 데

이터의 이용목적 및 수단을 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데이터 제공자는 당사자가 합의한 대로 파생 데이터를 사용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데이터 제공자가 원칙적으로 파생 데이터를 사용할 권한이 없음을 명확히 하도록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에 다수가 동의하였다. 파생 데이터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는 경우 지식재산권 또는 저작권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파생 데이터의 경제적 중요성이 상당하므로 파생 데이터의 정의를 추가하자는 제안도 있었다.

5) 제10조 구제방법

사무국이 제시한 제10조에는 원상회복이나 가격 일부 할인 등과 같은 계약 해지와 관련한 내용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데이터 제공자의 데이터 제공 의무는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불공정한 경우 제외될 수 있다는 점도 언급되었고, 제10조 내용 중 제공자의 미이행 시 데이터 수신자의 제공 요구권 규정은 일부 법제와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국내법에 따른 구제책에 의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3. 평가 및 시사점

제4작업반은 다음 회의에서도 위 두 가지 주제를 계속 검토하되, '계약에서의 자동화와 AI의 사용' 주제를 우선적으로 논의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계약에서의 자동화와 AI의 사용' 주제에 대해 제4작업반이 검토한 원칙을 입법 조항으로 재구성하고 이를 전자상거래에 관한 기존 UNCITRAL 규정에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하였다.

사무국은 이번 회의 논의를 반영하여 차회 회의를 위한 조항과 설명자료를 준비하고, 제4작업반은 차회 회의에서 이를 계속 검토하고 문서 통합 방안에도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논의하여 필요시 본회의에 진행 방향을 권고할 예정이다.

제4작업반의 회의 주제인 '계약에서의 자동화와 AI의 사용' 및 '데이터 제공 계약'은 디지털 시대의 생활형태의 본질적인 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로 국내에서도 계약 분야 법제의 개정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에도 제4작업반에서 논의 중인 규범이 우리 현행 법제 및 발전 방향에 부합하는지 등 논의 동향을 파악하고, 국내법제 정비에 참고가 될만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통상법률」 연구윤리규정

2009년 6월 30일 제정

2024년 1월 1일 개정

제1장 전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법무부 국제법무정책과가 발간하는 「통상법률」에 게재할 논문과 관련하여 논문의 저자, 편집위원, 심사위원 등이 지켜야 할 연구윤리의 원칙과 기준을 정함으로써 「통상법률」의 연구윤리를 제고하고 건전한 연구문화의 정착에 기여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장 저자 등의 연구윤리

제1절 저자의 연구윤리

제2조(연구부정행위의 금지) 저자는 연구과제의 제안, 연구과제의 수행, 연구결과
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위조·변조·표절 등 연구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를 하
여서는 안된다. 부정행위는 구체적으로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허구의 자료를 이용하는 등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2. “변조”는 연구과정 또는 연구자료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임의로 변형하거나 삭제함으로써 연구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표절”은 타인의 연구생각, 연구내용 또는 연구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이나 인용표시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타인의 연구결과를 그 출처와 함께 인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라 함은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정도에 따라 저자(역자)(단독연구의 경우)나 저자(역자)의 순서(공동연구의 경우)를 정확하게 표시하지 않는 행위를 말한다. 연구에 공헌이나 기여한 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역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는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역자) 자격을 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연구나 저술에 대한 작은 기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각주, 서문, 상의 등에서 감사를 적절하게 표한다.

5.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의 의혹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제3조(연구결과에 대한 책임) 저자는 자신의 연구결과에 대하여 스스로 책임을 진다.

제4조(연구결과물의 중복게재 또는 이중출판의 금지) ① 저자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이전에 출판된 자신의 연구결과(출판예정이거나 출판심사 중인 연구결과 포함)를 새로운 연구결과인 것처럼 본 학술지에 투고하여서는 아니된다.

- ② 저자는 본 학술지에 투고한 연구결과를 그 심사가 끝나기 전에 여타 학술지에 중복해서 투고하여서는 아니된다.

- ③ 투고 이전에 출판된 연구물(박사학위 논문 포함)의 일부를 사용하여 출판하고자 할 경우에는 학술지의 편집자에게 이전 출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편집자는 이에 대하여 중복게재나 이중출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④ 저자가 연구물을 투고하는 경우에는 (별지1)의 연구윤리규정준수확인서 및 논문사용권 등 위임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본 연구윤리규정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기존의 투고 및 게재된 논문 등에 대하여는 본 연구윤리규정준수확인서 및 논문사용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5조(검증을 위한 연구 자료의 공유) ① 연구결과가 본 학술지에 게재된 이후 그 연구결과와 재분석을 통한 검증을 목적으로 연구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연구 참여자에 대한 기밀이 보호되는 범위 내에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연구 자료를 제공받은 자는 오로지 당해 목적으로만 연구 자료를 사용할 수 있으며, 다른 목적으로 연구 자료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본 학술지의 편집위원장 및 그 저자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6조(인용 표시방법) ① 저자가 타인의 연구생각, 연구내용 또는 연구결과 등을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 학술지가 정한 원고 투고 규정에 따라 정확하게 표시하여야 하며, 상식에 속하는 자료가 아닌 한 반드시 그 출처를 명백히 밝혀야 한다.

- ② 개인적인 접촉을 통해 얻은 비공개 학술자료의 경우에는 이를 제공한 연구자의 동의를 받은 후에 인용할 수 있다.

제2절 편집위원의 연구윤리

제7조(편집위원의 편집방법) ① 편집위원은 본 학술지에 투고된 논문 저자의 인격과 학자로서의 독립성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게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편집위원은 본 학술지에 투고된 논문을, 저자의 성별·나이·소속기관은 물론이고 어떠한 선입견이나 사적 친분과 무관하게, 오직 논문의 수준과 논문심사규정에 의거해서 공정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③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심사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능력을 지닌 심사위원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제8조(비공개 의무)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출판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는 저자에 대한 사항이나 논문의 내용을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조(통지 의무) 편집위원은 심사위원이 심사와 관련하여 문제를 제기하는 등 편집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할 사항이 발생하면 편집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3절 심사위원의 연구윤리

제10조(심사위원의 심사방법) ① 심사위원은 저자의 전문지식인으로서의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하며, 심사의견서에는 논문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히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② 심사위원은 본 편집위원회가 의뢰하는 논문을 심사규정에서 정한 기간 내에 성실하게 심사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본 편집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신이 해당 논문을 심사하기에 책임자가 아니라고 판단될 때에는 본 편집위원회에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심사위원은 심사를 의뢰받은 논문에 대하여 이 규정의 제4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중복투고 등의 문제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본 편집위원회에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11조(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의 의무) 심사위원은 심사를 의뢰받은 논문에 대하여 개인적 학술신념과 저자와의 사적친분을 떠나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의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심사자가 충분한 근거를 명시하지 않거나 심사자 본인의

관점이나 해석과 상충된다는 이유로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해서는 아니된다.

제12조(비밀유지의무) ① 심사위원은 심사를 의뢰받은 논문에 대한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심사위원은 논문의 심사를 위해 특별히 조언을 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논문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거나 그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논의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심사위원은 자신이 심사한 논문이 게재된 본 학술지가 출판되기 이전에 해당 논문의 내용을 인용 또는 참조해서는 아니된다.

제3장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처리절차 등

제13조(서약) ① 본 학술지의 편집위원장, 편집위원, 심사위원, 논문연구자는 본 연구윤리규정을 준수할 것을 서약해야 한다. 다만 본 연구윤리규정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기존의 편집위원장 및 편집위원, 심사위원, 논문연구자는 본 연구윤리규정에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② 편집위원장, 편집위원, 심사위원은 각각 (별지2)와 (별지3)의 연구윤리규정 준수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4조(연구윤리규정 위반의 보고) ① 본 학술지의 편집위원장, 편집위원, 심사위원, 논문연구자는 편집위원장, 편집위원, 심사위원, 논문연구자가 본 연구윤리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안 경우 연구윤리규정을 환기시킴으로써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한다.

② 본 학술지의 편집위원장, 편집위원, 심사위원, 논문연구자는 제1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편집위원장, 편집위원, 심사위원, 논문연구자가 이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제15조에 의한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연구윤리위원회’라고 한다)에서 위반사항에 대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③ 연구윤리위원회는 제2항의 사실을 알린 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5조(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원칙) ① 제14조 제2항에 따른 심의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편집위원장은 연구윤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 ② 이 경우의 편집위원장은 제1항의 연구윤리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며, 5인 이상의 위원을 임명한다. 다만, 연구윤리위원회 각 위원은 자신이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대해서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 ③ 편집위원장이 본 연구윤리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편집위원장을 제외한 편집위원의 합의에 따라 연구윤리위원회를 구성한다.

제16조(연구윤리위원회의 조사)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부정행위의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하여 조사를 실시한다.

- ② 연구윤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 ③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조사결과를 확정하기 이전에 이의제기 및 변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당사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 ④ 연구윤리규정 위반으로 제보된 자는 연구윤리위원회에서 행하는 조사에 협조해야 한다. 만약 정당한 조사에 협조하지 않거나 방해하는 경우에는 연구윤리규정의 위반으로 간주한다.

제17조(조사결과보고)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조사의 결과와 내용을 조사의 종료 및 판정 후 각각 10일 이내에 편집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조사의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의 내용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3. 조사위원회의 조사위원 명단
 4. 당해 연구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부정행위의 사실 여부
 5. 관련 증거 및 증인
 6.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결과
- ② 조사결과보고서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한다.

제18조(연구윤리위원회의 제재조치 건의권) 연구윤리위원회는 조사 결과 연구윤리규정에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부정행위자에 대하여 편집위원회에 징계 등 적절한 제재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제19조(징계의 절차 및 내용) ① 연구윤리위원회의 징계 건의가 있을 경우,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를 소집하여 징계 여부 및 징계내용을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② 편집위원회는 이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경고, 투고제한 등의 징계를 할 수 있고, 그 조치를 위반한 자의 소속기관에 알리거나 대외적으로 공표할 수 있다.

제20조(조사 대상자에 대한 비밀 보호) 연구윤리위원회 위원 등은 부정행위 의혹에 대하여 본 학술지의 최종적 조치가 취해질 때까지 조사 대상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아니된다.

제21조(연구윤리규정의 개정) 이 규정의 개정 절차는 본 편집위원회의 권한사항으로 한다.

부 칙(2009년 6월 30일)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09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년 1월 1일)

제1조(시행일) 본 개정안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1) 연구윤리규정준수확인서 및 논문사용권 등 위임동의서
(「통상법률」 제00호)

「통상법률」 편집위원회 귀중

논문제목 :

연구윤리규정준수 확인서

저자(들)은 「통상법률」의 연구윤리규정을 준수하여 논문을 작성하였으며 특히 아래의 사항에 대하여 확인합니다.

1. 저자의 지적 창작이며,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한 바 없음
2. 저자는 투고논문의 작성에 실질적인 지적 공헌을 하였으며, 투고논문의 내용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함
3. 투고논문은 타인의 명예 등 권리를 침해한 바 없음
4. 투고논문은 과거에 출판된 적이 없으며, 다른 학술지에 중복 게재를 위하여 투고하지 않았고, 투고할 계획이 없음
5. 「통상법률」 발행인은 투고논문에 대한 저작권 침해에 대하여 이의제기, 고소 기타 저작권 보호를 위한 제반 권리를 보유함

논문 사용권 및 복제·전송권 위임서

저자(들)은 본 논문이 「통상법률」에 게재될 경우, 논문사용권 및 복제·전송권을 「통상법률」에 위임합니다.

20 년 월 일

저 자	성 명	소 속	이메일(연락처)	위임여부(O,X)	서 명
제 1 저 자					
교 신 저 자					
공동저자1					
공동저자2					

(별지2) 연구윤리규정 준수 서약서(편집위원용)

「통상법률」 귀중

본인은 「통상법률」의 편집위원으로서 「통상법률」의 연구윤리규정을 준수하며, 특히 아래의 사항에 대하여 서약합니다.

1. 투고논문에 대하여 저자의 인격과 학자로서의 독립성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게재 여부를 결정함
2. 투고논문에 대하여 저자의 성별·나이·소속기관은 물론이고 어떠한 선입견이나 사적 친분과 무관하게, 오직 논문의 수준과 논문심사규정에 의거해서 공정하게 취급함
3. 투고된 논문의 심사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 능력을 지닌 심사위원에게 의뢰함
4. 투고논문의 출판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저자에 대한 사항이나 논문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음
5. 심사위원이 심사와 관련하여 문제를 제기하는 등 편집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할 사항이 발생하면 편집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지함

20 년 월 일

편집위원 ○ ○ ○ ㉠

(별지3) 연구윤리규정준수 서약서(심사위원용) (2009. 6. 30. 신설)

「통상법률」 귀중

본인은 「통상법률」의 심사위원으로서 「통상법률」의 연구윤리규정을 준수하며,
특히 아래의 사항에 대하여 서약합니다.

1. 본인은 당해 심사논문을 심사함에 있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심사할 수 있음
2. 심사논문을 심사규정에서 정한 기간 내에 성실하게 심사하여 그 결과를 본회
편집위원회에 통지하도록 함
3. 심사논문에 대하여 개인적 학술신념이나 저자와의 사적 친분을 떠나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의하여 심사함
4. 심사를 함에 있어 충분한 근거를 명시하도록 하고, 본인의 관점이나 해석과
상충된다는 이유로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하지 않음
5. 심사논문의 중복투고 등 부정행위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본 편집위원회에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알림
6. 심사를 의뢰받은 논문에 대한 비밀을 준수함, 부정인용 및 참조를 하지 않음

20 년 월 일

심사위원 ○ ○ ○ ㉠

「통상법률」 원고 심사 및 편집 규정

제정 2003년 11월 1일

개정 2018년 1월 1일

개정 2020년 1월 1일

개정 2024년 1월 1일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법무부 국제법무정책과가 발간하는 「통상법률」誌에 게재할 원고의 심사 및 편집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 심사대상 원고는 다른 학술지나 기타 간행물에 발표되지 않은 것이어야 하며, 원고의 체제와 분량은 「통상법률」 원고 작성방법에 따라야 한다.

제 2 장 통상법률 편집위원회

제3조(편집위원회의 설치) 「통상법률」誌의 학문적 수준을 제고하고 전문논문집으로서의 성격을 유지·발전시키기 위하여 「통상법률」誌에 게재될 원고의 심사와 편집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는 ‘통상법률 편집위원회’(이하 “편집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편집위원회의 구성)

- ①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 및 10인 이내의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편집위원장은 법무부 국제법무정책과장으로 한다.
- ③ 편집위원은 해당분야 연구 성과가 뛰어난 국내외 법학교수, 법학박사 학위를 소지한 연구자, 해당분야의 법조실무경력 5년 이상의 판사, 검사, 변호사 및 관련분야 전문가 중 편집위원장이 위촉한다.
- ④ 편집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편집위원 중 1인을 간사로 지명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편집위원 중 1인을 편집자문위원으로 둘 수 있다.

제5조(편집위원회의 임무)

- ① 편집위원회는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을 결정한다.
 1. 「통상법률」誌에 투고된 원고의 심사 및 「통상법률」誌의 편집
 2. 원고 심사를 위한 심사위원 및 전문심사위원의 지정 및 위촉
 3. 게재된 논문의 사후 수정 또는 게재 취소 여부 결정
 4. 기타 편집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 ② 편집위원회는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편집위원장의 자문에 응한다.
 1. 「통상법률」誌 발간을 위한 기본 방침과 편집방향
 2. 기획논단 주제 선정
 3. 기타 편집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편집위원장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제4조 제3항에 따른 편집위원의 위촉
 2. 제4조 제4항에 따른 간사 및 편집자문위원의 지명
 3. 제6조 제1항의 편집회의 주재
 4. 제6조 제1항에 따른 임시회의 소집
 5. 제8조 제4항에 따른 심사위원의 교체
 6. 제11조 제4항에 따른 원고 게재 여부의 결정
 7. 기타 「통상법률」誌 발간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의 결정

제6조(편집위원회의 운영)

- ① 편집위원회는 매년 1회 이상의 편집회의를 소집하며 편집위원장의 판단에 따라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 ② 편집위원회는 재직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편집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서면, 이메일 등을 통해 이를 진행할 수 있다.

제7조(편집위원의 임기)

- ①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편집자문위원으로서의 임기는 편집위원 임기 만료시 함께 종료된다.
- ② 편집위원이 임기의 개시에 앞서 타 학술지의 편집위원으로 재직 중인 경우 또는 임기 중 타 학술지의 편집위원으로 재직하게 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편집위원

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 ③ 편집위원은 임기가 완료된 이후에도 후임자 충원 시까지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하며 이미 착수한 업무는 충원 후에도 완결한다.
- ④ 특별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편집위원장은 임기가 종료되지 아니한 편집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새로 임명된 편집위원은 전임자의 잔여 임기 동안만 편집위원의 직무를 수행한다.

제8조(편집위원의 임무)

- ① 편집위원은 「통상법률」誌의 발간과 관련하여 원고의 심사 및 「통상법률」誌의 편집에 대해 필요한 사항의 결정을 그 직무로 하고, 이를 위해 편집위원장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제6조 제1항에 따른 정기회의와 임시회의에 참석하여야 한다.
- ② 편집자문위원은 편집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며, 편집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통상법률」誌의 발간과 관련한 추가적 자문을 제공할 수 있다.

제 3 장 원고의 심사

- 제9조(심사 대상) ① 「통상법률」誌에 게재될 모든 논문(판례평석 포함)은 심사의 대상이 된다. 다만 시론, 자료 및 기록물, 연구노트, 서평, 동향 등은 별도의 심사없이 편집위원회에서 게재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 ② 「통상법률」誌에 게재하기 위해 제출되는 논문은 독창적인 것으로서 기존 간행물에 게재된 것이 아니어야 한다.
 - ③ 논문은 「통상법률」誌의 원고작성방법을 준수하여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
 - ④ 편집위원회는 연구윤리규정준수확인서 및 논문사용권 등 위임동의서가 제출되지 않은 논문에 대해서는 심사를 거절할 수 있다.

- 제10조(심사위원 선정 및 심사 의뢰) ① 편집위원회는 「통상법률」誌에 투고된 원고의 게재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논문당 3인의 심사위원을 선정해야 한다.
- ② 심사위원은 대학에 재직 중이거나 재직하였던 국내외 법학교수, 법학박사 학위를 소지한 연구자, 법조실무 경력 5년 이상의 판사·검사·변호사 중에서 위촉하되, 필요한 경우 편집위원회는 기타 국제통상 및 국제거래 분야의 전문가를 전문심사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 편집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심사위원을 위촉한다.

1. 해당 논문에서 다루는 주제와의 관련도
2. 해당 분야에서의 연구실적
3. 학계 또는 실무계에서의 인지도
4. 공정한 심사를 수행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지 여부

④ 심사 의뢰를 받은 심사위원은 지체없이 심사에 착수하여 심사 결과를 신속히 편집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논문을 투고한 편집위원은 자신의 논문에 관한 심사위원의 선정이나 논문 게재 여부의 결정에 참여할 수 없으며, 해당 논문은 편집위원회 외부에 심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제11조(심사 기준) 원고의 심사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한다.

1. 「통상법률」 원고작성방법 준수 등 형식적 적합성
2. 연구목적의 타당성과 그 목적 실현방법의 적합성
3. 연구의 구성과 내용의 독창성 및 논리성
4. 필요한 참고문헌 활용의 적정성 및 충실성
5. 연구결과의 학문적 기여 또는 사회적 활용 가능성
6. 연구윤리준수
7. 국문초록 및 외국어초록의 질적 수준과 분량
8. 기타 편집위원회에서 「통상법률」誌의 심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제12조(심사 절차) ①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에게 투고된 논문의 원고와 심사결과서 양식, 연구윤리규정준수 서약서 양식을 송부한다.

② 투고된 원고는 투고자를 익명으로 하여 심사 과정을 거쳐야 하며, 심사 논문의 내용 중 투고자의 신원을 알 수 있을 만한 부분은 삭제하여 심사를 의뢰한다.

③ 논문의 심사는 제9조의 심사 기준에 따라 행하되 원고를 송부한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단, 편집위원장의 허가에 따라 심사 기간은 1주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심사 의뢰 후 3주일 이내에 심사 결과가 제출되지 아니할 경우, 편집위원장은 그 심사위원을 해당분야의 전문가 또는 편집위원 중의 한 사람으로 교체할 수 있다.

⑤ 심사위원은 게재여부의 결정과 관계없이 심사 의견을 반드시 작성하여야 하며,

심사결과서 원본 파일은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⑥ 법무부는 심사위원에게 소정의 심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심사 판정) ① 심사위원은 원고의 심사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고, 편집위원회는 보고된 원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정한다.

1. 수정·보완 없이 게재가 가능한 때: 게재 가능
 2. 수정·보완 후 게재가 가능한 때: 수정 후 게재
 3. 수정·보완 후 재심사가 필요한 때: 게재 유보
 4. 전면적 수정·보완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게재가 불가능한 때: 게재 불가
- ② 심사 결과는 <별표>에 따라 점수를 합산하여 총점에 따라 게재 여부를 결정하되, 심사위원 중 2인 이상이 ‘게재 유보’ 의견을 내거나, 1인 이상이 ‘게재 불가’ 의견을 낸 경우 편집위원회의 결정으로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③ 편집위원회의 판정은 편집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한다.
- ④ ‘수정 후 게재’로 판정된 원고에 대해서는 투고자로부터 수정본을 제출받아 편집위원장이 검토 후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 ⑤ ‘게재 유보’로 판정된 원고는 투고자가 수정하여 다시 제출하면 편집위원회가 재심사를 통하여 게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14조(심사 결과의 통보) ① 편집위원회는 심사 결과를 투고자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투고된 논문의 내용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수정 또는 보완의 심사 결과 내용을 통보받은 투고자는 논문을 수정 또는 보완하여 7일 이내에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 ③ 게재가 결정된 논문은 특별한 이유 없이 투고 철회할 수 없으며, 편집위원장의 승인 없이 무단 철회할 경우 투고자는 향후 투고 제한 등 일정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제15조(수정 후 게재 또는 게재 유보에 대한 이의제기)

- ① 투고자는 수정 후 게재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사유를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기재한 수정거부사유서를 심사 결과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편집위원회에서 타당성 여부를 판정하여 수정·보완 요구 또는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 ② 투고자는 게재 유보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사유를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기재한 수정거부사유서를 심사 결과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편집위원회에서 타당성 여부를 판정하여 게재 유보 여부를 결정한다.

제16조(게재 불가에 대한 이의제기) ① 투고논문에 대하여 게재 불가 결정이 있을 경우 투고자는 심사 결과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사유를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기재한 이의서를 편집위원회에 제출함으로써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편집위원회는 투고자가 전항의 이의를 제기하면 3일 이내에 이의 내용의 당부를 협의한 다음 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해당 논문을 재심사에 회부한다.

③ 편집위원회는 전항의 재심사에 대해서는 당해 논문심사에 관여하지 않은 새로운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심사를 의뢰하고, 해당 심사 결과에 대해서는 본 학술지의 심사 및 게재규정을 준용하되, 편집위원회가 게재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제 4 장 원고의 게재 등

제17조(원고의 게재) ① 위원회에서 ‘게재’로 판정한 원고는 「통상법률」誌에 게재한다.

② 「통상법률」誌의 내용은 법무부 및 관련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다.

③ 법무부는 투고자에게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④ 「통상법률」誌는 매년 2, 5, 8, 11월 20일에 발행한다. 단, 발행예정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익일에 발행한다.

제18조(자료의 전송) ① 편집위원회는 「통상법률」誌를 법률문화 발전, 학술진흥 기여 기타 필요한 경우 데이터화하여 각종 도서관 등에 전송 및 제공할 수 있다.

② 편집위원회는 게재 결정 즉시 투고자에게 자료 전송 및 제공에 대한 의사를 물어야 하며 7일 이내에 반대의 의사표시가 없으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 5 장 보 칙

제19조(규정의 개정) 본 규정은 위원회의 과반수 찬성에 의하여 개정할 수 있다.

부 칙(2003년 11월 1일)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03년 1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년 1월 1일)

제1조(시행일) 본 개정안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년 1월 1일)

제1조(시행일) 본 개정안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현재 재직 중인 편집위원들은 재위촉되어 본 개정안이 시행되는 2020년 1월 1일부터 그 임기가 개시되는 것으로 본다.

부 칙(2024년 1월 1일)

제1조(시행일) 본 개정안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통상법률」 원고 작성 방법

제1조(원고의 양식) ① 원고는 본 요령에 따라 한글 또는 영어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원고는 ‘한글’ 또는 ‘Microsoft Word’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조(원고의 요건) 원고는 독창성을 갖는 것으로서 다른 학술지에 게재되지 아니한 것이어야 한다.

제3조(원고 작성 요령) ① 원고는 연구논문, 사례연구, 연구자료, 해외동향 등으로 구별하여 작성한다.

② 원고는 원고지 150매 내외 (A4 용지 20~25매) 분량으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원고는 표지, 본문, 참고문헌 목록, 국문 초록, 영문 초록으로 구성한다.

④ 원고의 표지에는 원고의 종류, 논문 제목(국문 및 영문 제목 모두 표기), 필자의 성명(괄호 안에 영문 표기), 소속, 직책, 학위,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등의 인적사항, 은행계좌,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다.

⑤ 공동으로 집필한 논문의 경우는 주 저자(책임 연구자)와 공동 저자를 구분하여, 주 저자·공동 저자의 순서로 표시한다.

⑥ 원고는 다음의 규격에 따라 작성한다.

1. 용지 여백 : 위쪽 20, 아래쪽 15, 왼쪽 30, 오른쪽 30, 머리말 15, 꼬리말 15

2. 본 문 : 왼쪽 여백 0, 오른쪽 여백 0, 들여쓰기 2, 줄간격 160, 글꼴 신명조, 글자 크기 10

3. 각 주 : 왼쪽 여백 3, 오른쪽 여백 0, 들여쓰기 -3, 줄간격 150, 글꼴 신명조, 글자크기 9

⑦ 목차는 I, 1., 가., (1), (가)의 순으로 표기한다.

⑧ 직접 인용할 때에는 “ ”(큰 따옴표)를 사용하고 강조할 때에는 ‘ ’(작은 따옴표)를 사용한다.

⑨ 각주는 다음과 같이 기재한다.

1. 단행본 : 저자명, 서명, 면수, 출판연도

2. 정기간행물 : 저자명, “논문제목”, 학술지명, 권·호수, 면수, 간행연월
3. 판 례 : 대법원 1900. 00. 00. 선고 00다0000판결(법원공보 1900년, 000면) 또는
대판 1900. 00. 00, 00다0000
4. 외국 출전 및 판결은 그 나라의 표준적인 표시방법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단, 일본 판결의 경우 선고 일에 평성, 소화 등 연호를 쓸 경우 괄호 안에
서기를 표시한다.
5. 영문성명, 논문명, 서명 등은 각 단어의 첫 자 외에는 반드시 소문자로 표기
한다.
- ⑩ 국문 또는 한자로 표시되는 저서나 논문을 인용할 때는 ‘면’으로 표기하고,
로마자자로 표시되는 저서나 논문을 인용할 때는 별도의 ‘p.’와 같은 표시를
생략하고 숫자만을 표기하며, 면수나 연도 등에서 ‘부터, 까지’를 나타내는
부호로 ‘-’을 사용한다.
- ⑪ 외국 법률이나 제도 등은 우리말로 표기하고 ()안에 원어를 표시한다. [예:
가석방제도(parole system)]
- ⑫ 참고 문헌은 각주의 기재 방식에 따름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하여 기재한다.
 1. 저자명, 서명, 출판관련사항은 각 쉽표.로 구분한다.
 2. 출판관련사항의 경우, ‘출판지: 출판사, 출판연도’의 형식으로 표기한다.
 3. 서양인 저자의 이름을 적을 때에는 성을 먼저 쓰고, 공저의 경우에는 처음
나오는 저자만 성을 먼저 쓴다.
 4. 동일 저자가 작성한 문헌이 복수인 경우, 문헌이 출판된 연도순에 의하여 나
열한다.
- ⑬ 원고 뒷부분에 국문 및 영문 초록과 주제어(keywords, 국문 및 영문)를 10개
내외로 기재한다.
- ⑭ 기타 논문작성방법에 관하여는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에서 제정한 “논문작
성 및 문헌인용에 관한 표준”에 따른다.

제4조(원고의 제출) 작성 완료한 논문은 발행일 1개월 전까지 편집위원회 간사가
지정한 전자우편(e-mail)주소로 송부하거나, 온라인투고시스템에 제출한다.

[편집위원장]

조아라 (국제법무정책과장)

[편집위원]

강병근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강준하 (홍익대 법과대학 교수)

김인호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재성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 법률담당관)

조성준 (일리노이공과대 시카고 켄트로스쿨 교수)

채형복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계 간 지 통 상 법 률

2024년 2월 20일 발행(통권 제162호)

1994년 5월 20일 등록(97-10-5-11)

발간등록번호 : 11-1270000-000225-07

ISSN : 1598-4915

eISSN : 2765-5962

발행인 : 법무부장관 직무대리 법무부차관 심 우 정

편집인 : 법 무 실 장 구 상 엽

발행처 : 법무부 / 편집실 : 국제법무정책과 / 전화 : 02-2110-4243 / FAX : 02-2110-0416

주 소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801호

인 쇄 : 성 진 사 : 031-388-4485

[비매품]

INTERNATIONAL TRADE LAW

Vol. 162

February 20, 2024

Publisher Shim, Woo Jung / Vice Minister, Acting Minister of Justice

Editor Koo, Sang Yeop / Deputy Minister for Legal Affairs

Edited in

International Legal Policy Division

Published quarterly by

Ministry of Justice

※ “통상법률”에 게재된 내용은 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법무부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